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583-01

201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모델(안) 및 주요기능 연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모델(안) 및 주요기능 연구

201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5. 8.

연구기관 : 서울사이버대학교

연구책임자 : 박태정 (서울사이버대학교)

공동연구자 : 권금주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서영 (서울사이버대학교)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요약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노인인권 인식 부족과 제도의 부재
- 2) 저개발국가 대상 노인인권보장 로드맵 및 정책 개발 지원의 요구
- 3) 노인인권 정책 연구 전문기관의 필요성 대두
- 4) ASEM 회원국 노인인권 의제 개발 및 이행방안 모색의 필요성 강화

2. 연구내용 및 범위

- 본 연구는 문헌연구, 델파이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설립을 위해서는 ① ASEM 노인인권 의제(아젠다) 설정 ② 공동선언문 초안 마련 등이 선결되어야 하는 바, 본 연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연구하였다.

○ 문헌연구 주요 내용 및 범위

- ASEM의 기능과 역할 분석
- 노인인권 관련 주요 기구 동향 분석
- 노인인권 관련 주요 국제 학계 동향 분석
- ASEM 국가별 노인인권 이슈 및 주요 정책 현황 연구
- ASEM 노인인권 아젠다 및 의제(안) 도출
- ASEM 노인인권 국제컨퍼런스 공동선언문(안) 작성
- ASEM 노인인권정책연구센터 설립 목적 및 주요 기능(안) 개발

○ 질적 연구 범위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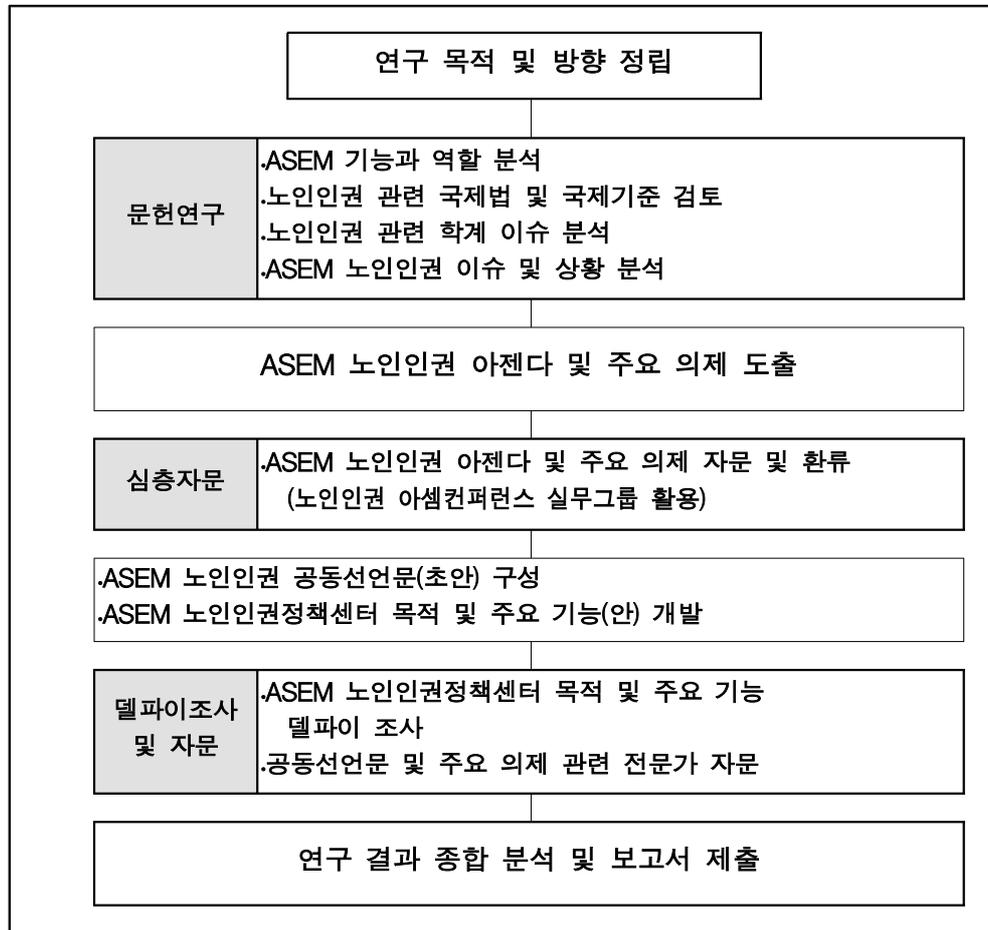
노인인권정책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될 ASEM 노인인권 아젠다 및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목적과 사업(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결과에 반영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및 연구체계

○ 연구방법

연구방법	주요 내용
문헌조사연구	이론 연구, 2차 데이터분석 국내외 연구 및 관련 정책 비교 분석
질적조사연구	델파이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
전문가 회의	노인인권 아셈컨퍼런스 실무그룹(ASEM Conference Working Group) 연구책임자 참여 및 논의

○ 연구 체계



제2장 ASEM 이해

1. ASEM 운영체계

1) ASEM 개요

- ASEM(Asia-Europe Meeting)의 창설배경은 세계화와 연결되어 있다. 1990년대 냉전 질서가 붕괴하고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아시아, 북미, 유럽 3개 지역이 국제 무역과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협력관계가 미약하였던 유럽과 아시아 간 협력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6년, ASEM 정상회의가 태국에서 개최되면서 출범하였다.

2) ASEM 회원국

- 2014년 현재, ASEM의 총 회원국 수는 51개국이며, 2개의 지역협의체인 EU 집행위원회, 그리고 ASEAN 사무국이 포함되어 있다.
- 1996년 출범 당시 아시아 10개국과 유럽 15개국 및 EU 집행위원회가 구성원이었으나, 2004년 5차 정상회의에서 신규가입이 성사되어 39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고, 2006년 제6차 ASEM 정상회의를 계기로 ASEAN 사무국과 아시아 3개국(인도, 파키스탄, 몽골), EU 신규가입국인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신규 가입하여 추가되었다. ASEM 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63%, 총생산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큰 규모의 기구에 속한다.

3) ASEM의 특징

- ASEM의 협력방식은 ① 동등한 동반자적 관계에 입각한 상호존중 ② 합의의 원칙 ③ 비공식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양 지역 간 정치적 대화 증진, 경제적 관계 강화, 문화교류 발전을 목적으로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확립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4) ASEM 주관 주요 협력 사업

- 아시아-유럽 재단(Asia-Europe Foundation: ASEF)
-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TFAP)
-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TEIN: 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 ASEM 아동복지사업(ASEM Action on Child Welfare)
- ASEM DUO 장학사업(ASEM DUO Fellowship Programme)
- ASEM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M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Eco-Innovation Center: ASEIC)

5)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제안

- 2014년 제10차 ASEM 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보를 위한 책임 있는 협력’ 을 주제로 특히 아시아와 유럽 간의 연계(connectivity) 강화가 강조되었다. 특히 한국이 제안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관련 사업은 ASEM 협력사업으로서 유의미한 시도로 평가되었다.

2. ASEM 인권관련활동: ASEM 비공식 인권세미나

- ASEM의 협력사업 중 ‘인권’ 관련 협력은 1997년부터 2014년까지 14차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비공식 인권 세미나(The Informal ASEM Seminar on Human Rights)’ 이다. 비공식 인권 세미나의 참석 대상은 정부관계에서 NGO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세미나를 통해 언론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인도적 지원 등 인권 문제에 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되었고, 인권 상황이 열악한 일부 회원국들에게 인권 개선 필요성에 대한 ASEM 차원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압력을 주는 등 인권 선도 사업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제3장 노인인권 관련 국제법 및 국제기준 분석

1. 국제법과 노인인권

- 노인인권을 다루는 국제법 내지 국제조약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다만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이 내용면에서 관련되어 있다.

2. 노인인권 관련 국제기준 비교 분석 결과

1) UN 주요 논의 및 활동

- UN에서 전개된 주요 노인인권 관련 활동과 각종 사업은 다음과 같다.
 -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UDHR)
 - 1982년 UN의 비엔나국제행동강령(UN 고령화에 관한 국제행동계획)
 - 1991년 노인을 위한 UN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 1992년 UN ‘고령화에 관한 선언’ 채택 및 노인의 해 선포
 - 2002년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 공개실무그룹(UN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회의

2) UN 산하 기구 주요 활동

- UN-ECE (1차: 2003~2007년, 2차: 2008~2012년, 3차: 2013~2017년)에서는 2007년 1차 점검회의 이후 정부간조직체(Intergovernmental Body)인 ‘노년연구그룹(Working Group on Ageing)’ 을 조직·운영 중이다.
 - UN-ECE회원국에게 MIPAA 이행전략에 따른 10대 이행과제는 총 10개 영역, ① 모든 정책 내 고령화의 주류화 (C.1), ② 노인의 사회적 통합과 참여 보장 (C.2), ③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추구 (C.3), ④ 인구구조 변화와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응하는 사회보호 체계 (C.4), ⑤ 인구고령화로 인한 경제·사회적 결과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구축 (C.5), ⑥ 평생교육 증진과 교육제도 개선 (C.6), ⑦ 건강과 웰빙에 따른 모든 노인의 독립적인 삶의 질 유지 (C.7), ⑧ 고령사회에서 성주류화 (C.8), ⑨

노인 돌봄 제공과 세대 내·세대 간 연대 강화 (C.9), ⑩ 지역이행전략 성취를 위한 지역 협력 (C.10)으로 구성하여 MIPAA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 UN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에서는 1999년 ‘아·태 마카오 인구고령화 행동계획(Macao Plan of Action Aging in Asia and the Pacific: 이하 아·태 마카오 인구고령화 행동계획)’을 채택하였고, 계획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 ESCAP은 1999년 아·태 마카오 인구고령화 행동계획 채택과 더불어, 2000년에는 행동계획의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2000년과 2002년에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국가별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2년 채택된 MIPAA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세미나를 2002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하여 고령인구의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는 ‘상하이 이행 전략(Shanghai implementation Strategy)’을 채택하도록 지원하였다. 한편 2007년, 10월 중국 마카오에서 ‘MIPAA의 지역적 검토를 위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아·태지역의 고령화 분야의 발전상황을 점검하고 국가별 검토를 통한 MIPAA이행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행동계획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등 활동을 실시하였다
- GlobalAge Watch Index(GAI) 개발 및 국가별 실태 분석
 - HelpAge International은 UNFPA(유엔인구기금)의 지원에 의해 GlobalAge Watch Index(GAI)를 개발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3년부터 매년 노인인권의 주요 영역에 속하는 건강, 역량, 소득, 환경을 중심으로 각 국가별 실태를 평가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3) MIPAA 실행전략에 따른 이행과제 2차주기 평가 결과

- UN-ECE 회원국은 2002년 이후 5년 주기에 의해 MIPAA 지역별 실행전략(MIPAA/RIS)에 의한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평가에 해당하는 2차 주기 평가 결과, 사회보호(C.4), 건강과 웰빙(C.7), 노동시장(C.5), 고령사회의 주류화(C.1)부문에서는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평생교육(C.6), 성주류화(C.8), 세대간 통합(C.9), 지역별 협력(C.10)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속한 UN-ESCAP회원국에서도 MIPAA 이행 수준을 점점 하고 있는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먼저 노인과 발전 영역에서는 일부 중국, 미얀마 같은 국가들에서는 국가정책과 예산에 노인을 위한 내용들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전개되었고, 호주,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몽골, 필리핀, 한국, 베트남 등에서는 노인의 고용의 권리와 사회보호를 위한 법체계 및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년의 건강과 안녕에 대해서는 약 80%의 회원국이 전 생애에 걸친 건강증진과 안녕과 관련된 정책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의 수준에 있어서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의 확보와 관련해서 일본, 한국, 호주 등은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시도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4) OECD의 주요 논의 및 활동

- OECD 에서 전개된 주요 노인인권 관련 논의들은 고령화의제 채택 및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7대 개혁 원칙을 중심으로 다뤄졌다.
- 고령화의제 채택
 - 교육·노동·사회문제위원회(ELSAC)가 중심이 되어 고용, 노인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관한 각국 동향의 비교분석과 정책대안을 통해 인권 관련 활동이 전개되었는데, 1980년대 이후 인구고령화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고령화의제(Ageing in OECD)가 1998년에 채택되었다.
- 1998년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7대 개혁원칙
 - 1998년의 정책보고서(Maintaining Prosperity in an Ageing Society)에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7대 개혁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① 조기퇴직제도 개혁을 통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대, ② 고령근로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및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③ 재정안정화, ④ 퇴직소득원 다원화, ⑤ 보건의료와 장기보호, ⑥ 사전기여형 연금체계 발전과 병행하여 효과적 감독체계 등 금융시장 인프라 강화 추진, ⑦ 각 조치간 조화와 효과적인 집행 등이었다.

5) EU 논의 및 활동

- EU에서 전개된 주요 노인인권 관련 활동은 2012년 ‘활기찬 노후와 세대 간 연대를 위한 유럽의 해’ 제정 및 유럽평의회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 EU에서는 2012년 ‘활기찬 노후와 세대 간 연대를 위한 유럽의 해’ (European Year for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 EY 2012) 로 제정하게 되는데, 이는 EY 2012를 통해 우수한 정책을 확인하고 확산시키며, 활기찬 노후의 증진 및 세대 간 협력과 결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유망한 정책입안자와 이해당사자들의 의식을 고취하는 체계의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유럽평의회는 2014년 2월 19일 노인의 권리를 높이기 위한 회원국들의 권고안(Recommendation)으로 ‘무차별’, ‘자율성과 참여’,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사회보장 및 고용’, ‘돌봄’, ‘사법행정(Administration of justice)’ 등의 과제를 채택하였다. 권고 안에는 반차별(Non-discrimination), 자율성과 참여 (Autonomy and participation),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Protection from violence and abuse), 사회보호 및 고용(Social protection and employment), 돌봄(Care), 사법행정(Administration of justice) 등이 과제를 중심으로 총 54 개의 권고안이 제시되었다.

6)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LO) 논의 및 활동

-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채택
 - ILO는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에서 제시한 9가지의 사회적 위험에 노령보장을 포함시켜, 사회보장에 관한 보편적 기준으로서 1952년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1967년 ‘장애·노령·유족연금에 관한 128호 협약’ 에서 노령연금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에서도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사망, 노령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결핍의 경우에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에서도 노령이 생계결핍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는 점이 규정된 바, 위 ILO의 협약은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보장에서의 노인인권증진과 연결된 활동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3. 노인인권 국제 연구 동향

1) 세계노년학대회에서의 노인인권 국제 동향

- 최근 5차 년도에 걸친 세계노년학대회에서 다루어진 노인인권 국제 동향을 살펴본 바, 세계노년학대회에서는 노인인권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주로 세부주제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세부주제로는 주로 노인학대 및 방임 관련해서 각 나라별 현황, 대응방안,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활동 등이 다뤄졌다.

2) 노인인권 관련 국제 연구 동향

- 최근 5년간의 국제학술지에서 노인인권을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노인인권의 개념 규명, 노인인권보호에서의 국제기준의 기능 및 역할, 개별 국가의 상황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국제기준에서의 노인권리, 인권보호 관점에서의 노인의 국제적 지위, 개별 국가들에서의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 노인학대 및 연령차별, 노인학대 및 노인차별, 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 인권관점에서의 노인완화치료, 인권관점에서의 건강보호, 인권관점에서의 노인요양보호, 고용상 연령차별, 노인수감자의 인권에 대한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3) 소결

- 국제학계에서 노인인권이 구체적인 쟁점으로 다뤄졌다고 보긴 어렵다. 한편 연구동향의 경우, 노인인권의 개념, 노인인권보호 관련 국제기준, 그리고 개별국가에서 노인의 사회적 보호 외 인권관점에서 노인관련 서비스 유형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인권에 대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는 다소 미흡한 편이다.

제4장 ASEM 노인인권 이슈 및 쟁점

I. ASEM 국가의 고령화 및 노인인권 상황

1) 고령화 전개 양상

- 2015년을 기준으로 노령화 지수(ageing index)를 살펴보면 30을 넘지 않은 국가는 아시아 국가들은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해당되었을 뿐, 그 외 대부분의 국가들의 노령화 지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가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 회원국 중에서는 2015년 수치를 기준으로 그리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이 매우 높은 노령화 지수를 보이고 있다.

〈ASEM 65세 이상 인구비중 및 노령화 지수 변화 추이〉

국가별	2000		2005		2010		2015		2020	
	65세 이상	노령화 지수								
그리스	16.9	110.9	18.6	129.0	19.0	130.8	20.2	137.8	21.5	147.1
네덜란드	13.6	73.1	14.0	76.1	15.4	88.2	18.1	107.5	20.1	125.2
뉴질랜드	11.8	51.8	12.0	55.8	13.0	63.5	14.7	73.0	16.2	81.8
대한민국	7.2	34.3	9.1	47.3	11.0	68.4	13.1	94.1	15.7	119.1
덴마크	14.9	80.5	15.2	80.9	16.7	92.8	18.6	107.7	19.9	116.5
독일	16.3	104.6	18.9	132.2	20.8	155.2	21.5	165.7	23.1	178.6
라트비아	15.0	84.2	17.2	116.1	18.4	129.8	18.6	119.9	18.9	113.5
러시아	12.4	68.2	13.8	91.0	13.1	87.8	13.2	80.2	14.8	85.0
루마니아	13.4	71.7	14.8	95.3	14.8	98.8	15.5	102.0	17.0	111.4
룩셈부르크	14.1	74.3	14.4	77.4	14.0	79.3	14.4	83.3	15.3	88.7
리투아니아	13.9	69.5	15.1	90.5	15.5	101.8	15.7	101.8	16.3	97.6
말레이시아	3.8	11.5	4.4	14.5	4.8	17.5	5.8	22.8	6.9	28.8
몰타	10.7	51.6	13.3	77.2	14.5	92.7	17.7	125.1	20.6	149.2
몽골	3.7	10.6	3.7	12.9	3.8	14.2	3.8	13.9	4.4	15.3

국가별	2000		2005		2010		2015		2020	
	65세 이상	노령화 지수								
미얀마	4.7	15.4	4.9	17.5	5.1	19.5	5.4	22.4	6.5	28.6
베트남	6.4	20.3	6.6	24.2	6.5	27.8	6.8	30.3	8.2	38.5
벨기에	16.9	96.4	17.3	101.0	17.2	102.3	18.6	108.5	19.8	114.1
불가리아	16.6	105.8	17.4	127.5	18.3	137.7	19.9	142.0	21.1	144.8
브루나이	2.8	9.2	3.2	11.0	3.7	13.8	4.9	20.0	7.0	32.3
스페인	16.9	114.1	16.8	115.5	17.1	114.6	18.3	117.7	19.5	127.7
슬로바키아	11.4	57.7	11.7	69.7	12.3	81.4	13.6	89.6	16.2	103.1
싱가포르	7.3	34.2	8.2	42.9	9.0	52.0	11.2	72.9	13.9	95.6
아일랜드	11.2	51.5	11.1	53.7	11.3	53.0	12.6	58.4	14.1	66.1
에스토니아	15.2	84.5	16.9	110.2	17.5	113.5	18.4	114.1	19.4	116.2
영국	15.8	83.2	16.0	89.1	16.6	94.5	18.1	102.6	18.9	105.5
오스트레일리아	12.4	59.7	12.9	65.4	13.5	71.0	15.0	78.1	16.4	84.2
오스트리아	15.5	90.9	16.1	100.2	17.8	120.9	18.7	129.2	19.6	134.2
이탈리아	18.3	127.5	19.6	139.3	20.3	144.5	21.7	155.0	22.8	164.9
인도	4.4	12.8	4.7	14.6	5.1	16.8	5.5	19.3	6.3	23.7
인도네시아	4.7	15.2	4.9	16.2	5.0	16.8	5.4	19.3	6.3	24.4
일본	17.2	117.5	19.9	143.8	23.0	172.8	26.4	205.2	28.6	226.5
중국	6.9	26.8	7.7	37.4	8.4	46.0	9.5	52.0	11.7	64.2
태국	6.6	27.2	7.7	34.5	8.9	45.9	10.4	59.8	13.0	82.6
포르투갈	16.2	100.3	17.1	109.8	18.0	118.9	19.4	134.1	21.0	158.1
폴란드	12.3	63.4	13.3	80.7	13.5	90.1	15.3	101.3	18.1	114.7
프랑스	16.0	84.6	16.4	88.8	16.8	91.6	18.7	103.5	20.4	113.7
핀란드	14.9	82.2	15.9	91.8	17.1	103.8	20.4	123.5	22.5	134.4
필리핀	3.2	8.4	3.4	9.2	3.7	10.5	4.1	12.2	4.9	15.4
헝가리	15.2	90.1	15.7	101.3	16.7	114.2	17.7	119.2	19.5	129.9

2) ASEM 회원국 노인인권 상황

- 현재 국가별로 노인 인권상황을 공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는 개발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ASEM 회원국의 노인인권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건강, 우호적 환경, 역량, 노후 소득보장 영역을 기준으로 평가한 HelpAge International의 Global AgeWatch Index(GAI)와 국내에서 개발된 고령화대응지수를 통한 국가간 비교결과를 활용하여 아시아와 유럽 국가의 인권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보고자 하였다.
- Global AgeWatch Index(GAI) 2014 평가결과로 보는 노인인권 상황
 - Global AgeWatch Index 2014 보고서를 기준으로 ASEM 회원국 노인인권 상황을 가늠하기 위해 2014 GAI 순위 (전 세계96개국) 중 ASEM 회원국만 별도로 추출하여 재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ASEM GAI 종합순위가 도출되었다.
 - GAI 지수 기준 중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는 30위권 이하의 경우 폴란드를 비롯한 13개 유럽회원국가와 대한민국을 비롯한 13개 국가가 속해 있다. 비록 해당 국가들의 GDP, 고령화, 국가경쟁력 등은 상이하지만, 하위권을 차지하는 26개 아시아·유럽 회원 국가들은 대체로 GAI 지표에 포함된 소득, 건강, 환경, 역량 등과 관련하여 열악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 상위권 국가 집단그룹과 비교하여 아시아·유럽국가 회원국간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신흥경제개발국가(한국, 러시아, 중국, 인도)라고 할지라도 노인인권 분야만큼은 노인인권 여명기 내지 태동기 수준에 고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밖의 내전(內戰) 및 저개발과 같은 정치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노인뿐만 아닌 보편적 인권보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낙후된 것으로 보았다.
- 고령화 대응지수의 국가간 비교(2012)를 통한 노인인권 상황
 - 고령화 대응지수의 국가간 비교에서는 22개국의 OECD국가 간 5개 영역, 각 10개씩의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를 결과로 각 영역별로 국가간 비교 순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각 영역세도 정책대응지표와 정책결과지표로 구분하여 각 지수의 국가간 비교 순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고령화 대응지수의 하위 영역간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후 각 영역별 값들을 합산한 총괄지수 산출 결과 1위는 아일랜드이고, 최하위가 한국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는 의료 영역과 지속가능성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고용

영역과 사회적 지원 영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 또한 중위권 국가들로는 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 영국, 미국, 벨기에 등으로 주로 동유럽 국가들이 소득과 의료영역이 비교적 높고, 하위권에 속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남부 유럽 국가들과 일본의 경우 소득, 의료 및 사회적 지원 영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의 경우는 고용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에서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음이 제시되었다.

2. ASEM 회원국 주요 노인인권 이슈

- 아시아와 유럽의 노인인권 관련 이슈와 정책동향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 첫째, 아시아 및 유럽 지역 국가 모두 노인빈곤문제는 해결을 바라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 둘째, 농촌에 비해 도시지역이 주거환경 및 기본적인 서비스로의 접근성 면에서 좀 더 우월한 바, 도-농간 지역간 격차가 나타났다.
 - 셋째, 특히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에는 국가의 경제상황, 은퇴 관련 정책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넷째, 주거형태와 지역사회 환경에서의 인권적 쟁점이 등장하고 있다.
 - 다섯째,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의 증가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국가에 대해 노인의 건강권 보장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 마지막으로 아시아, 유럽에서 모두 노인폭력과 학대라는 최악의 권리침해를 경험한 노인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 아울러 논의된 인권이슈에 대한 접근양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EU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은 ‘고령화는 위기이기도 하면서 기회이기도 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특징이 드러났다. 더불어 국가 및 유럽연합 차원에서 MIPAA의 제안을 기반으로 노인인권 향상을 위한 적극적 대응 및 성과를 세워 사회·경제발전의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개별 국가만이 아니라 유럽지역 전체가 노인인권에 기반한 사회경제, 정치적 환경 대응과 향후과제를 연대, 공유하려는 노력이 특징적이다.
 - 아시아 국가들은 개별 국가단위로 나타나고 있는 노인인권의 쟁점을 해결하는데 좀 더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가별 양상을 보면 사회적 안전망 부족으로 고령자들이 소득의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국가(태국, 캄보디아,

중국 등)들에서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 구축을 가시화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리고 동북아국가들(중국, 한국, 일본, 몽골)에서는 장기요양보호를 제공하는 인력이 가족에서 지역으로 변화함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안전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즉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사안’ 중심으로 접근하는 양상이며, 최근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장기요양, 빈곤 등에서의 인권이슈가 제기되면서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과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000년대 이후 노인을 보는 관점은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 긍정적 노화(positive aging),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등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며 길어진 노후를 생산적, 긍정적으로 보내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유럽연합(EU)에서 2012년을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액티브 에이징)의 해로 선포한 것을 계기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접근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로 이어지는 추세이다.
 - ‘액티브에이징’은 노인인권의 보장을 주요 구성요소로 하고 있어 유럽과 아시아국가에서 노인과 노화를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액티브에이징은 노인인권의 관점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노인인권의 주된 관점이 취약한 노인을 위한 보호 등에 주목하여 노인을 객체화하였다면, 액티브에이징은 모든 노인의 인권적인 삶이 무엇인지, 노인의 입장에서 주체화하여 재형성하려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제5장 ASEM 노인인권 아젠다 및 주요 의제

1. 제안 배경

1) ASEM 회원국의 노인인권 상황

-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당면한 노인인권상황과 핵심과제를 요약하면 먼저 아시아의 공동 이슈인 고령(화)사회에 대응을 위해서는 노인을 권리주체로서 인식하는 권리기반적 접근이 정책과 제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법과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노인권리에 대한 관심을 우선시 하고, 국가 정책과 프로그램에 고령화 이슈

를 주류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능력과 자원을 확보하고, 여성노인 및 취약한 노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포괄적 사회보호체계가 요청되고 있다.

- 유럽은 국가차원을 넘어 국가 간의 연대를 통해 노인권리에 입각한 적극적 대응과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경제불황, 노동인구 급감과 같은 사회변화 요인에 의해 지금까지 다룬 주요 주제였던 건강권, 노동권, 경제권에 속하는 이슈들이 여전히 미해결되었고, 예측하지 못한 노인인권 사각지대가 대두되는 등 노인인권 이슈는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 노인인권 전개과정과 시사점

- 195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이르는 노인인권 논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인권의 발달 과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각 시기에서 나타나는 노인인권 이슈와 주제들은 그 이전 및 이후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
 - 먼저 1950년대의 경우,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 시기이긴 하지만 그 진정한 중요성을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 1952년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1957년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이 만들어졌을 뿐, 노인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나타나지 못하였다.
 -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 까지 유엔을 중심으로 인권문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1966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만들어 짐으로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의 항목들이 구체화되었다.
 - 1980년대 이후부터는 구체적인 대상에 초점을 둔 인권 논의가 시작되었다. 1989년 아동권리협약, 1990년 이주노동자 및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만들어 진 바, 노인인권에 대한 관심이 나타난 것도 이 시기부터이다.
 -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국가의무의 성격 또한 과거 소극적 의무에서 적극적 의무를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인권논의는 한걸음 더 나아가는 전환기적 계기를 맞은 것으로 보여 진다.
- ASEM 회원국의 노인인권 이슈 역시 고령화내지 노인인권 논의가 선행된 국가에서 발생했던 인권이슈가 후발 혹은 타 국가에서도 유사·동일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ASEM 회원국 노인인권 논의의 특징으로서 국가간 노인인권이슈의 발

- 현될 뿐만 아니라 다시 동일한 이슈가 재현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말하자면 노인 기본권 및 자유권 논의가 생략된 채 사회권 보장으로의 주제 이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달리 설명하자면, 국가의 소극적 의무와 관련된 조치와 논의를 생략한 채 적극적 의무보장의 단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 노인인권 전개과정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노인인권의 국제적 흐름은 시대별로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진행되고 있어 “노인인권의 상호연계적 전개과정” 이라고 할 수 있고, 노인인권 논의의 특징은 “국가 간 노인인권이슈의 발현과 재현”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노인인권 영역의 공통적 이슈들이 있고, 여전히 해결을 바라는 과제들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노인인권이 전개되어 온 과정이 ASEM 회원국에게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비록 1980년대 이후 노인인권의 논의가 확대되었지만 인권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UN장애인권리협약 혹은 아동동권리협약과 같은 노인인권 국제협약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가·지역·세계적 차원을 아우를 수 있는 보편타당한 인권관점에 대한 충분한 합의와 논의 역시 부족하다.
 - 둘째, 노인차별, 학대, 배제, 빈곤과 같은 이슈들은 지난 50여년에 걸친 노인인권 논의에서 단 한 번도 강조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는 고령자에 대한 차별, 사회참여로부터의 배제와 소외, 존엄적 생존권 박탈을 둘러싼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 요컨대 노인 인권 개념과 국제논의의 수준은 확장·진화되어 왔지만, 국가적·지역적·지구적 실행 수준은 이에 못 미치고 있으며, 심지어 전 세계적 경제 불황 속에서 퇴보하는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ASEM 회원국들은 노인인권 권리의 확인(인식), 존중, 보호, 충족, 증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인권보장 의무 이행을 요구받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의 적극적 의무로서 노인인권보장을 인식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노인인권침해와 권리박탈의 문제는 더 이상 복지중심 접근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즉, 적극적 의무로서 노인인권을 인식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 이러한 면에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가 지향하여야 할 노인인권의 주제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로서 노인인권을 보장’ 하기 위한 이슈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아시아·유럽에서 유사·동일하게 나타나는 노인인권의 쟁점을 반영하고 회원국간 노인인권수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접근이 되어야 한다.

3. ASEM 노인인권 아젠다 및 주요 의제

1) ASEM 노인인권 아젠다 및 주요의제 구상

ASEM 노인인권 아젠다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아시아와 유럽의 연대와 협력”

- 본 아젠다는 왜 ASEM에서 노인인권이 다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시아·유럽 국가에서 발현·재현되고 있는 노인인권과 관련된 문제는 일국 차원의 접근보다는 회원국가간 노인인권정책 운영 경험의 공조와 노인인권 가이드라인 개발과 같은 새로운 접근과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제시할 수 있다.
 - 특히 ‘아시아와 유럽의 연대와 협력’은 기존 개별 국가 단위 혹은 문제로서 노인인권을 바라보았던 관점에서 탈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는 ASEM이 지향하는 네트워킹과 협력과도 조화될 수 있을 것이다.
 - 나아가 노인 인권 증진에서 국제협약체로서 ASEM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여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음이 대내·외적으로 강조될 수 있다.

2) ASEM 노인인권 아젠다에 의한 주요 의제 구성

- 위에서 제시된 아젠다를 기초로 제안하는 주요 의제는 크게 4가지이다.

가. 노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의무 강화 나. 노인의 적절한 생활환경 보장 다. 노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과 참여의 보장 라.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4. ASEM 노인인권 증진 공동 선언(안) 마련(부록 공동선언문 초안 참고)

제6장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기본 계획(안)

1.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의 필요성

- ASEM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포괄적인 주제에 걸쳐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협의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ASEM 주관 협력사업에서는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전개는 미진한 상황이다.
- 그나마 ASEM의 ‘인권’ 관련 협력은 아시아·유럽재단(ASEF)에 의해 진행된 ASEM 비공식 인권세미나를 공동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 대표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즉 ASEF의 주요 사업은 문화, 교육, 지속가능한 개발, 경제, 거버넌스, 공중보건 등의 6개를 주요 주제로만 구분되어 있을 뿐이고, ‘인권’은 거버넌스에서 일부 프로그램으로만 제시되고 있다.
- ASEF의 인권 활동은 전술한 ASEM 비공식 인권세미나를 통해 실시된 바, 언론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인도적 지원 등 인권 문제들이 다뤄져 왔다. 물론 이는 인권 상황이 열악한 일부 회원국들에게 인권 개선 필요성에 대한 ASEM 차원의 직·간접적인 권고를 하는 등의 기능이 있지만, 고령(화)사회에서의 권리 기반을 기초로 한 노인인권 이슈들을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아시아 및 유럽 대륙 국가들의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야기되는 주요한 노인인권의 문제들, 특히 전 세계 노인들이 적절한 신체적 및 경제적 수준을 유지할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방안에 대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책개발 및 연구 기능을 할 수 있는 노인인권정책개발 관련 전문 기관 설치가 필요하다.

2.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기본 계획(안) 개발

-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목적과 주요 사업(초안) 개발과정
 - 연구진이 개발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목적과 주요사업(초안)은 ASEM의 특징 및 주요 협력 사업, 인권관련 활동, ASEM 회원국 노인 인권 이슈 및 쟁점, 국제기구 등의 노인인권 논의와 활동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나타난 ASEM 노인인권 아젠다와 주요 의제를 기초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진이 제시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목적과 주요사업(초안)은 다음과 같다.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목적과 주요사업 1차 개발(안)〉

운영 목적	주요 사업
ASEM 회원국 노인인권의식 고취(계몽)	ASEM 노인인권 교육 자료 개발 ASEM 노인인권교육 노인당사자 인권역량강화사업 지원 ASEM 회원국 노인인권증진 캠페인 ASEM 노인인권정보포털 구축
ASEM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DB구축	ASEM 노인인권지표 개발 ASEM 노인인권상황 실태 패널 조사 ASEM 노인인권 브리프 및 백서 발간 ASEM 노인인권상황 정례 평가 DB기반 ASEM 회원국 노인인권실태 연구
ASEM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우수 사례 발굴·상시 학습 회원국 노인인권보장체계 비교 연구 ASEM 노인인권보호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ASEM 노인인권 중점연구과제 개발 및 추진 노인인권 정책품질관례체계 개발 노인인권 국제협약 제정
ASEM 회원국 노인인권 협력네트워크 구축	ASEM 노인인권 정상회의 운영 전문가 및 실무그룹 조직·운영 ASEM 노인인권세미나 개최 회원국 노인인권 유관단체 연계 회원국 노인인권 정책개발 컨설팅
ASEM 회원국 노인인권 대응력 향상	회원국 노인인권 취약 상황 견제·대응 회원국 노인폭력·학대 보호법제 제정 촉구 노인사법권 관련 특별 보호 노인인권침해 예방

3.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목적 및 주요사업 관련 델파이 조사

- 본 연구에서 진행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인권관련 기관 종사자, 관련 연구자, 교수(총19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1차 조사에서는 19명의 조사 대상 중 기간 내에 18명이 응답한 바, 기간 내 회신된 18명의 응답을 1차 조사 결과 집계에 적용하였다.
 - 2차 조사에서는 19명의 조사 대상 중 학계 무응답 1명의 전문가의 설문지를 제외한 18명의 전문가의 설문지를 조사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4.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목적 및 주요사업 최종(안)

-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목적과 주요사업 최종(안)
 - 연구진이 개발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목적과 주요사업(초안)에 대한 1,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전문가들은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목적과 목적별 사업이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 델파이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진은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목적과 주요사업 최종(안)을 중요도 순으로 제시하였다.
 -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목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최종(안)은 다음과 같다.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목적 및 주요사업 최종개발(안)〉

운영 목적	주요 사업
ASEM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	노인인권 국제협약 제정(연구) 회원국 노인인권보장체계 비교 연구 ASEM 노인인권 중점연구과제 개발 및 추진 ASEM 노인인권보호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우수 사례 발굴·상시 학습 노인인권 정책품질관리체계 개발
ASEM 회원국 노인인권 협력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및 실무그룹 조직·운영 ASEM 노인인권 정상회의 운영 회원국 노인인권 유관단체 연계 ASEM 노인인권세미나 개최 회원국 노인인권 정책개발 컨설팅
ASEM 회원국 노인인권의식 고취(계몽)	ASEM 노인인권 교육 자료 개발 ASEM 노인인권교육 노인당사자 인권역량강화사업 지원 ASEM 회원국 노인인권증진 캠페인 ASEM 노인인권정보포털 구축
ASEM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DB구축	ASEM 노인인권지표 개발 ASEM 노인인권상황 정례 평가 ASEM 노인인권 브리프 및 백서 발간 DB기반 ASEM 회원국 노인인권실태 연구 ASEM 노인인권상황 실태 패널 조사
ASEM 회원국 노인인권 대응력 향상	회원국 노인폭력·학대 보호법제 제정 촉구 회원국 노인인권 취약 상황 견제·대응 노인인권침해 예방 노인사법권 관련 특별 보호

5.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기능 및 역할

-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사업 수행을 통한 목적 성취를 위해서는 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앞서 도출한 25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는 기능을 어떻게 구조화하여 주요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진은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25개의 사업을 기능 중심으로 범주화하였고, 이를 4대 공통 기능으로 정리하였다.
 - ‘정책개발·지원 기능’에 해당되는 주요사업은 ① 노인인권 정책품질관리체계 개발, ② 회원국 노인인권 정책개발 컨설팅, ③ ASEM 노인인권보호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④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우수 사례 발굴·상시 학습, ⑤ 노인인권 국제협약 제정 관련 연구, ⑥ 노인인권침해 예방, ⑦ ASEM 노인인권 중점연구과제 개발 및 추진 등으로 구성하여 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제안하였다.
 - ‘네트워크·협력 기능’에 해당되는 주요 사업은 ① ASEM 노인인권 정상회의 운영, ② 전문가 및 실무그룹 조직·운영, ③ 회원국 노인인권 유관단체 연계, ④ ASEM 노인인권세미나 개최, ⑤ ASEM 노인인권정보포털 구축 등으로 구성하여 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제안하였다.
 - ‘노인인권교육·증진 기능’에 해당되는 주요 사업은 ① ASEM 노인인권 교육자료 개발, ② ASEM 노인인권교육, ③ 노인당사자 인권역량강화사업 지원, ④ ASEM 회원국 노인인권증진 캠페인, ⑤ 회원국 노인폭력·학대 보호법제 제정 촉구, ⑥ 회원국 노인인권 취약 상황 견제·대응, ⑦ 노인사법권 관련 특별보호 등으로 구성하여 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제안하였다.
 - ‘연구·평가 기능’에 해당되는 주요 사업은 ① ASEM 노인인권지표 개발, ② ASEM 노인인권상황 정례 평가, ③ ASEM 노인인권 브리프 및 백서 발간, ④ DB기반 ASEM 회원국 노인인권실태 연구, ⑤ ASEM 노인인권상황 실태 패널 조사, ⑥ 회원국 노인인권보장체계 비교 연구 등으로 구성하여 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제안하였다.
- 본 연구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 ASEM은 아시아와 유럽의 양 지역이 과거의 비대칭적이고 불평등한 관계에서 벗어나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의존과 지역협력을 바

- 탕으로 하는 특징을 가지는 만큼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시아와 유럽 양 지역의 보충성의 원칙을 통해 상호 보완적이고 촉진적인 시너지 효과를 지향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개해야 하며, 추진하는 협력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개방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전문가 조사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UN과 같은 국제기구들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이념이나 조항들이 주요 사업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정부 간 협의 뿐 아니라 민간 영역의 참여와 연대로 중요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협력하여 사업을 전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ASEM 내 유사기관(ASEF) 운영사례에도 살펴보았지만, 기존 ASEM 내에서 제공되는 사업들과는 차별된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아시아와 유럽의 연대와 협력을 꾀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가 인권에 대한 인식과 기준이 국가 간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정책개발 및 연구들이 각 회원국에 효력을 발휘할지 불확실한 가운데,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갖출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제7장 결론

- 우리나라가 제 10차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은 ASEM 노인인권 증진의 실제적 기구가 될 것이기에 그 선결조건으로 본 연구에서는 ASEM 회원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노인인권 아젠다 및 의제를 구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ASEM 노인인권 공동선언(안) 및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기본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따라서 ASEM 노인인권 아젠다 및 의제, ASEM 노인인권 공동선언(안) 및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사업(안)은 가깝게는 ‘2015 ASEM 노인인권 컨퍼런스’의 주요 주제와 내용을 구성하는데 활용될 것이고, 나아가 ASEM 정상회의를 통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합의, 중장기적으로 ASEM 회원국 노인인권정책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실천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할 것이다.
- 본 연구결과를 통한 기대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ASEM 회원국의 노인인권 공동 대응에 대한 관심과 참여 증진

- '2015 ASEM 노인인권 컨퍼런스' 및 공동선언(안)의 기초 자료 활용
 -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승인 과정의 기여
 - ASEM 노인인권 공동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의 활성화
- 나아가 '2015 ASEM 노인인권 컨퍼런스' 개최, '서울 2015 ASEM 노인인권 공동 선언',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및 운영의 주도국 등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 등은 사회·문화·교육 부문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목 차

I. 연구개요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범위	6
3. 연구방법	8
II. ASEM 이해	11
1. ASEM 운영체계	13
2. ASEM 인권관련활동: ASEM 비공식 인권세미나	19
III. 노인인권 관련 국제법 및 국제기준 분석	23
1. 국제법과 노인인권	25
2. 노인인권 관련 국제기준	26
3. 노인인권 국제 연구 동향	44
IV. ASEM 노인인권 이슈 및 쟁점	49
1. ASEM 국가의 고령화 및 노인인권 상황	51
2. ASEM 회원국 주요 노인인권 이슈	57
3. ASEM 노인인권이슈의 특징	73
V. ASEM 노인인권 아젠다 및 주요 의제	77
1. 제안 배경	79
2. ASEM 회원국 노인인권 전개과정과 시사점	83
3. ASEM 노인인권 아젠다 및 주요 의제	88
4. ASEM 노인인권 증진 공동 선언(안) 마련	92



VI.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기본 계획(안)	95
1.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의 필요성	97
2.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기본 계획(안) 개발	99
3.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목적 및 주요사업 관련 델파이 조사	101
4.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목적 및 주요사업 최종(안)	112
5.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기능 및 역할	113
VII. 결 론	127
■ 참고문헌	133
■ 부 록	139
부록 1. 2015 ASEM 노인인권 증진 컨퍼런스 공동 선언(안)	141
부록 2. ASEM 노인인권 아젠다·주요의제, 공동선언문 관련 전문가 조사지 (의견서양식포함)	147
부록 3. 1차 델파이 조사지	149
부록 4. 2차 델파이 조사지	156

표 목 차

<표 1>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8
<표 2> 연구 추진 체계	9
<표 3> ASEM의 회원국가 현황	14
<표 4> ASEF 운영구조	16
<표 5> 한국정부 제안사업 및 주요내용	19
<표 6> ASEM 비공식 인권세미나 운영 상황	20
<표 7> 각 회차별 OEWGA 주요내용 및 국제노인인권협약 논의 특징	33
<표 8> MIPAA실행전략에 따른 10대 이행과제	34
<표 9> 유럽평의회 권고안	42
<표 10> ASEM 65세 이상 인구비중 및 노령화 지수 변화 추이	52
<표 11> 2008년 노인 노동시장 참여율 (지역, 성별, 연령별 비교)	60
<표 12> 노인빈곤율 유럽국가 비교	65
<표 13> 공동선언(안) 검토 전문가 현황	92
<표 14> 아시아-유럽재단(ASEF)의 운영 목적 및 사업	97
<표 15>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목적 및 주요사업 1차 개발(안)	101
<표 16> 1차 조사 응답자 개요	103
<표 17> 2차 조사 응답자 개요	103
<표 18>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목적에 대한 타당성과 중요도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104
<표 19> ASEM 회원국 노인인권의식 고취(계몽)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중요도 1차 조사 결과	105
<표 20> ASEM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DB구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중요도 1차 조사 결과	105
<표 21> ASEM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중요도 1차 조사 결과	106



<표 22> ASEM 회원국 노인인권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중요도 1차 조사 결과	106
<표 23> ASEM 회원국 노인인권 대응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중요도 1차 조사 결과	107
<표 24>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목적에 대한 타당성과 중요도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108
<표 25> ASEM 회원국 노인인권의식 고취(계몽)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중요도 2차 조사 결과	109
<표 26> ASEM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DB구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중요도 2차 조사 결과	109
<표 27> ASEM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중요도 2차 조사 결과	110
<표 28> ASEM 회원국 노인인권 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중요도 2차 조사 결과	111
<표 29> ASEM 회원국 노인인권 대응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중요도 2차 조사 결과	111
<표 30>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목적 및 주요사업 최종(안)	112
<표 31>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기능에 따른 주요사업내용(안)	114



그림 목 차

[그림 1] ASEM의 구조	15
[그림 2] 소득계층 및 BOP 인구 분포	57
[그림 3] 국가별 빈곤율	58
[그림 4]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목적, 기능 및 주요 사업 구조	125

I

연구개요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범위	6
3. 연구방법	8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노인인권 인식 부족과 제도의 부재

-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모든 사회정책과 제도는 인권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이는 노인 역시 예외가 아닌 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과 프로그램 또한 인권보장과 증진의 목적 아래 실시되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인 정책이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우며, 이는 ASEM의 다수 회원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령화라는 사회변화는 노인을 무능하고 병약하며 의존적인 존재라는 편견¹⁾과 맞물려 부정적인 노인 상(image)을 만들기도 한다. 심지어 복지예산 낭비의 원인이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등, 노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또 다른 인권침해로 연결되는 상황이다.
 - 한국을 비롯한 ASEM 회원국들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인권에 대한 문제인식 내지 경각심은 그다지 높지 않다.²⁾ 이는 노인 정책과 제도들이 인권인식을 바탕으로 계획되었다기보다는 사안 중심으로 상황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만들어 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 국제기구 차원의 연구들도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데, 2011년 UN의 ‘제2차 고령화에 관한 후속 보고서’ 와 2012년 ‘유엔인권최고대표에 의한 노인의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 에서는 그동안 여러 국제적 인권 규범 및 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권과 관련하여 국제적 법령 등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도구가 부재하다는 점이 강조한 바 있다.³⁾
- 즉, 많은 국가들이 노인인권에 대한 적절한 법률과 정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기존 제도들은 문제해결 접근인 나머지, 본격적인 노인인권 기반 제도들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1) 우국희(2010). ‘인권관점에서 바라본 노인학대와 사회적 책임’ . 『노인인권논문집』. 국가인권위원회, pp.130-131.

2) 권혁남(2014). ‘노인 고독사 연구 및 접근의 관점: 인권’ . 『생명윤리』. 15(1). pp. 77-79.

3) 신영전·김보경(2013). ‘인권의 관점에서 본 한국 고령화 정책 계획: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정책』, 20(1). pp. 155-157.

2) 저개발국가 대상 노인인권보장 로드맵 및 정책 개발 지원의 요구

- ASEM 회원국가간 정치·경제·문화적 여건, 정책 상황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동일한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동북아시아 국가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사회적 여건과 사회안전망에서 서로 다른 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국가별 인권보장 실태와 관련 정책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과도 연결될 것으로 보여진다.
- 따라서 ASEM 회원국가 가운데 노인 인권 보장 관련 정책이 선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들의 축적된 노하우와 정책 개발 및 운영경험은 해당 제도의 디자인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후발 국가들에게 유용한 도움이 될 것이다.

3) 노인인권 정책 연구 전문기관의 필요성

- 노인인권 관련 정책의 양과 질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고령사회로 진입해 있으면서 사회안전망이 잘 확충되어 있고 소득수준이 높은 스웨덴⁴⁾, 핀란드⁵⁾ 등의 북유럽 국가의 경우 국가의 적극적 의무에 기반한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후보장과 노인복지제도의 개편을 계기로 정책 대상으로서 노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비해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일부 저개발 국가들은 노인복지 및 노인인권에 대한 제도적 관심과 접근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 비록 노인 관련 정책의 내용과 우선순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인구 고령화는 이미 일국적 차원이 아닌 범세계적 이슈로 대두되었고 그에 따른 고령(화)사회로의 변환은 모든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런 만큼 아시아 및 유럽 대륙 국가들의 고령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주요한 노인 인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특히 전 세계 노인들의 적절한 신체적 및 경제적 수준을 유지할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는 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노인인권정책개발 관련 전문기관이 요구된다.

4) 백석인(2006). ‘스웨덴의 노인복지제도와 정책’. 『스칸디나비아연구』. 7. pp. 55-65. 등을 비롯한 다양한 논의를 참고할 것

5) 주핀란드대한민국대사관(2014). 『핀란드복지제도 종합보고서』. pp. 4-13.

4) ASEM 회원국 노인인권 의제 개발 및 이행방안 모색의 필요성

- ASEM은 아시아·유럽 지역 국가 간 포괄적 협력을 위한 장으로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공통의 목표의식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활동을 전개한다는 점은 우수하지만, 회원국 공통의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내지 정책 선도 기능은 약하다는 점 역시 동시에 존재한다.⁶⁾ 그동안, 환경, 안보, 교육, 문화 등 여러 주제를 두고 ASEM 회원국에서 연구와 교류가 있어 왔지만 회원국 간의 역사·정치, 문화적 이질성은 심도 깊은 협력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지난 제10차 ASEM 정상회의를 계기로 ASEM의 이와 같은 기능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공조 및 개발 역량 방안의 일환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대응과 노인인권보장 강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인권 보장은 ASEM 회원국 모두가 당면한 과제이자 범세계적 관심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이에 노인인권에 대한 회원국의 구체적인 개별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노인인권정책의 방향과 고령사회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공동의 협력 방안을 연구·발전시킬 지역간 연결성(connectivity)의 실체적 내용 구축이 요구된다.
 -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제10차 ASEM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은 좋은 교두보가 될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ASEM 회원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노인인권 아젠다 발굴을 그 선결조건으로 하며 나아가 ASEM 노인 인권 공동 선언 등의 구체적인 행동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아시아·유럽 지역 국가의 노인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ASEM 노인인권 아젠다를 찾고 주요 내용을 도출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ASEM 노인인권 공동 선언문의 초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관련 목적과 사업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검토하여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기본 계획(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6) 이상균(1999). ‘아시아·유럽간 지역협력의 동인과 가능성 - ASEM의 국제 정치경제적 함의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8(2). pp. 45-48.

2. 연구내용 및 범위

1) 개요

- 본 연구는 문헌연구, 델파이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을 적용한다. 단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설립을 위해서는 ① ASEM 노인인권 의제(아젠다) 설정 ② 공동선언문 초안 마련 등이 선결되어야 하는 바, 본 연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문헌연구 주요 내용 및 범위

- ASEM의 기능과 역할 분석
 - 본 연구는 ASEM 회원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을 위한 목적을 가지는 만큼, ASEM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ASEM의 설립배경과 목적을 이해하는 한편, 그동안 ASEM이 추진해온 노인인권 관련 활동의 특징과 성과를 집약적으로 분석한다.
- 노인인권 관련 주요 기구 동향 분석
 - 주요 기구별로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논의 내용과 활동 현황 검토를 통해 노인인권보장 관련 각종 활동 실태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공통적인 노인인권 의제를 발굴·제시하여 ASEM 노인인권 국제컨퍼런스에서 주요 의제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 노인인권 관련 주요 국제 학계 동향 분석
 - ASEM 회원국을 포함, 범지구적 차원에서 강조되는 노인 인권 이슈와 주제를 확인하기 위해 세계노년학회를 중심으로 노인 인권 관련 이슈를 확인하고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검색을 통해 노인 인권 연구와 관련된 주요 국제 학계 동향을 파악한다.
 - 이를 바탕으로 국제 학계 주요 이슈와 ASEM 회원국가의 쟁점을 비교분석하여 ASEM 회원국 노인인권 관련 의제를 도출하는데 적용할 것이다.

○ ASEM 국가별 노인인권 이슈 및 주요 정책 현황 연구

- 최근 인구 고령화 추이를 볼 때,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인인구의 고령화는 지속될 것인 만큼, 자칫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노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보호체계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및 유럽 국가별 노인인권 이슈와 노인인권 상황을 살펴보고, 관련된 주요 정책 현황에 대해 집중·분석하여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 관련 정책 자료뿐만 아니라 국내·외 논문DB를 활용하여 집약적으로 조사·연구하며, 국내·외 유관기관(예: UN,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각국 인권 및 노인 정책 관련 부처·기구)등에서 발간된 통계·조사 분석 자료를 확보하여 이론적 근거를 구축한다.

○ ASEM 노인인권 아젠다 및 의제(안) 도출

- 전술한 문헌연구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ASEM 노인인권 국제컨퍼런스’에서 적용 가능한 노인인권 아젠다 및 주요의제를 제시한다.

○ ASEM 노인인권 국제컨퍼런스 공동선언문(안) 작성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노인인권 아젠다 및 주요의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ASEM 노인인권 공동선언문’ 초안(draft)을 작성한다.

○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기본계획(안) 마련

- ASEM 회원국의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과업을 수행할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기본 계획(안)을 제언한다.

3) 질적 연구 범위 및 내용

노인인권정책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될 ASEM 노인인권 아젠다 및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목적과 사업(안)이 타당성과 중요성에 대한 종합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결과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때 국가인권위원회 ‘ASEM 노인인권 실무그룹’⁷⁾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 연구와 ASEM 관련 정책추진기구간 협력성을 확보하며, 이 외에도 인권 및 노인관련 전문가도 활용한다.

7) 2015 ASEM노인인권컨퍼런스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구성한 전문가그룹임.

3. 연구방법

1)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전술한 연구 내용 및 범위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채택할 것인 바 문헌조사, 질적 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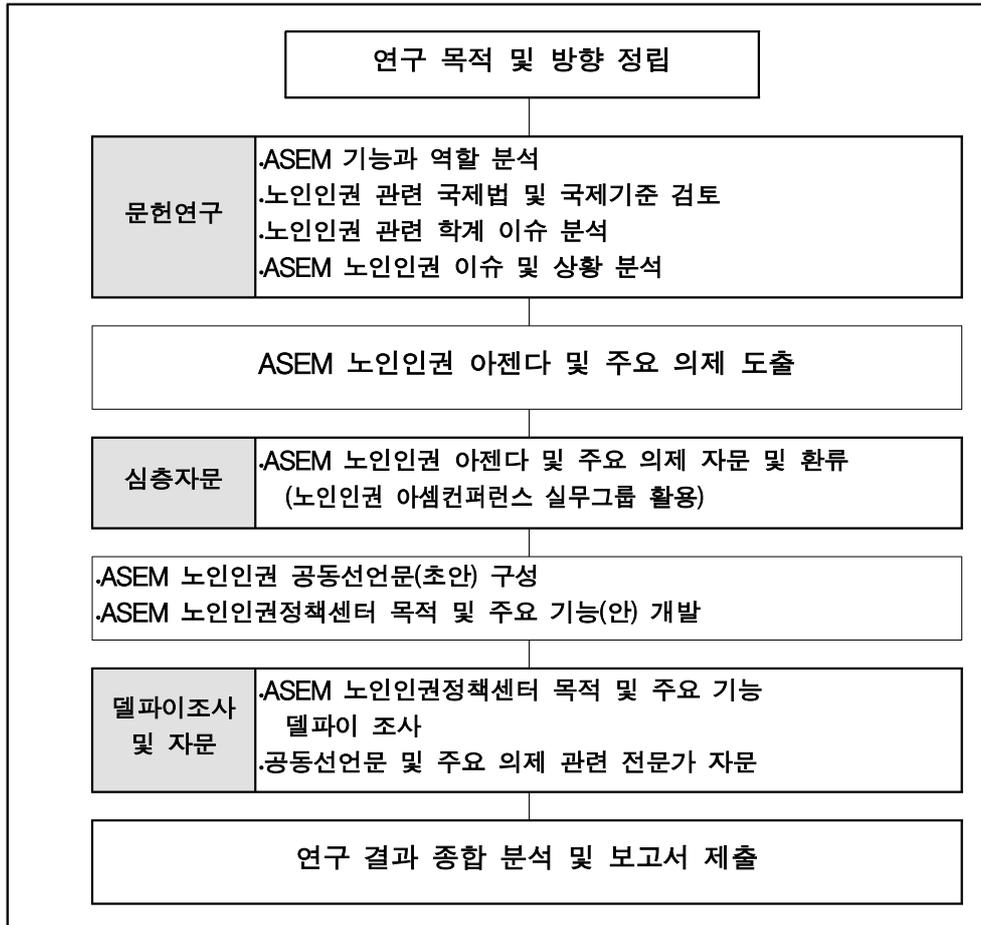
〈표 1〉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연구방법	주요 내용
문헌조사연구	이론 연구, 2차 데이터분석 국내외 연구 및 관련 정책 비교 분석
질적조사연구	델파이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
전문가 회의	노인인권 아셈컨퍼런스 실무그룹(ASEM Conference Working Group) 연구책임자 참여 및 논의

2) 연구 체계

- 연구진은 노인인권 보장의 아시아·유럽적 가치와 중요성에 기반하여,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모델과 기능을 도출하는데 요구되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체계적으로 적용, 분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유지·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연구체계를 준수하고자 한다.

〈표 2〉 연구 추진 체계



II

ASEM 이해

- 1. ASEM 운영체계 13
- 2. ASEM 인권관련 활동: ASEM 비공식 인권세미나 19

I. ASEM 운영체계

1) ASEM 개요

- ASEM 회원국은 전 세계 인구의 63%, 총생산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큰 규모의 기구에 속한다. ASEM의 창설배경은 세계화와 연결되어 있다. 1990년대 냉전 질서가 붕괴하고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아시아, 북미, 유럽 3개 지역이 국제 무역과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협력관계가 미약하였던 유럽과 아시아 간 협력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⁸⁾ 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는 유럽과 거대 단일시장인 유럽 진출을 원하는 아시아가 협력 채널 구축 필요성을 공감함에 따라, 양 지역은 1994년 싱가포르의 ASEM 창설 제의에 동의하였고 1996년, ASEM 정상회의가 태국에서 개최되면서 출범하였다.

2) ASEM 회원국

- 2014년 현재, ASEM의 총 회원국 수는 51개국이며, 2개의 지역협의체인 EU 집행위원회, 그리고 ASEAN 사무국이 포함되어 있다.
- 1996년 출범 당시 아시아 10개국과 유럽 15개국 및 EU 집행위원회로 시작되었지만, 2004년 5차 정상회의에서 신규가입이 성사되어 39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고, 2006년 제6차 ASEM 정상회의를 계기로 ASEAN 사무국과 아시아 3개국(인도, 파키스탄, 몽골), EU 신규가입국인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신규 가입하여 추가되었다. 지역별 국가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8) 외교부(2014). 「2014 ASEM개황」. pp.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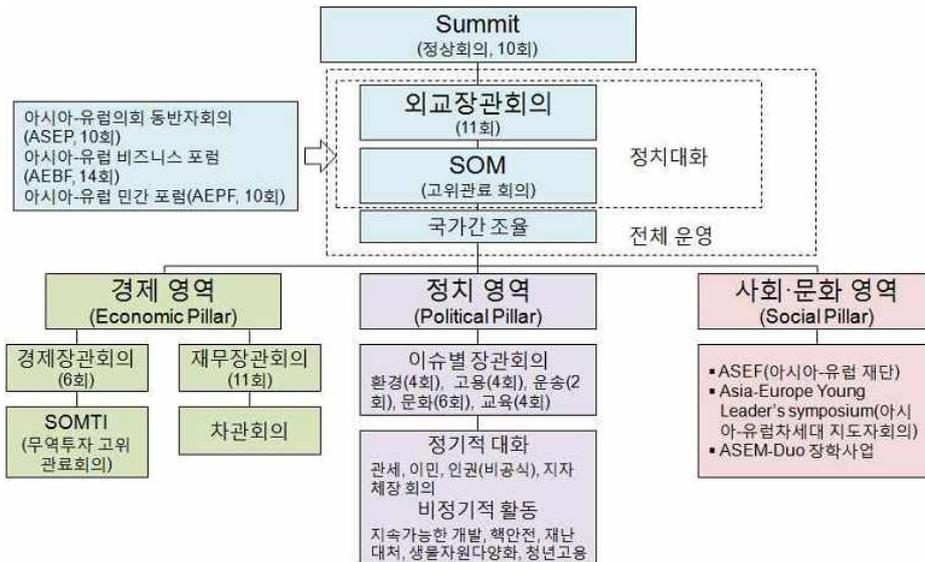
〈표 3〉 ASEM의 회원국가 현황

지역	회원국
아시아 (16개국 +1)	ASEAN 회원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동북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서남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ASEAN 사무국
대양주 (2)	호주, 뉴질랜드
유라시아 (3)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유럽 (30개국 +1)	EU 회원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영국,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기타 유럽 : 노르웨이, 스위스 EU 집행위원회

3) ASEM의 특징

- ASEM의 협력방식은 ① 동등한 동반자적 관계에 입각한 상호존중 ② 합의의 원칙 ③ 비공식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양 지역 간 정치적 대화 증진, 경제적 관계 강화, 문화교류 발전을 목적으로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확립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상호존중과 합의의 원칙으로 운영되므로 국가 간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수립되기는 어려우나 양 지역 간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독자적인 리더 국가의 등장이 어려운 UN형(vs. IMF형)국제협의체로 볼 수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는 특징이 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포괄적인 주제에 걸쳐 협력방안이 모색된다는 점은 경제(APEC) 또는 정치적 영역(과거 ASEAN)에 국한하여 협력하는 여타의 다자협의체와는 성격이 다르다.⁹⁾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 '제10차 ASEM 정상회의의 의미와 평가' . 「지역경제포커스」. 8(53). pp. 6-7.



주: 1) 괄호 안의 횟수는 2014 년 10 월까지 개최된 총 회의 횟수를 의미함.
 2) ASEP: 아시아·유럽의회 동반자회의(Asia-Europe Parliamentary Partnership), AEBF: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Asia-Europe Business Forum), AEPF: 아시아·유럽 민간 포럼(Asia-Europe People's Forum), SOM: 고위관료 회의 (Senior Officials' Meeting), SOMTI(Senior Officials' Meeting on Trade and Investment), ASEF(아시아-유럽 재단, Asia-Europe Foundation)
 자료: Eurpean Union External Action(EUEA), 재인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 p. 7.

[그림 1] ASEM의 구조

○ 다만 ASEM은 회원국 간의 경제수준 및 정치적 이해의 차이로 인해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동안 합의의 내용이 규범적 차원에 그쳤다는 점은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협력사업의 경우도 일관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4) ASEM 주관 주요 협력 사업¹⁰⁾

○ 아시아-유럽 재단(Asia-Europe Foundation:ASEF)
 - ASEF은 ASEM 관련 기구 중 유일한 상설 기관으로 양 지역 간의 학술교류(intellectual exchange), 문화교류(cultural exchange) 및 인적교류(people-

10) 외교부(2014). 「2014 ASEM개황」. pp. 28-73.

to-people exchange)를 통해 상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회원국들이 번갈아가면서 소집 개최한다. 이사회와 싱가포르에 위치한 상설 사무국에 의해 운영 중이다.

〈표 4〉 ASEF 운영구조



출처: 외교부(2014). 「2014 ASEM개황」. p. 29.

- ASEF의 사업은 ASEM 회원국내 연구기관과의 ASEM 관련 공동 프로젝트, ASEM 정상 및 장관회의에서 위임받은 프로젝트, 재단 자체의 고유 프로젝트, 정보센터(clearing house), 조정자(coordinator) 및 촉매제(catalyst and facilitator) 역할 수행, ASEM 회의, 세미나 등의 홍보 및 지원 등이다. 그 외 문화, 교육, 지속가능한 개발, 경제, 거버넌스, 공중보건의 6개 주제로 교류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그리고 ASEM에서 유일하게 ASEF의 주도로 ‘비공식인권세미나’가 실시되고 있다.

○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 TFAP)

- 제2차 정상회의(1998. 4월, 런던)에서 아시아-유럽간 경제협력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채택된 사업이다. 통관절차, 표준적합평가, 공공조달, 지적재산권, 검역 및 위생, 기업인 이동, 전자상거래(2000년 5월 서울 SOMTI에서 추가), 여타 무역활동 등이 우선 추진 분야에 해당한다.
- 무역·투자 고위관리회의(SOMTI)가 간사국 및 TFAP 분야별 주도국의 협조 하에 TFAP 이행을 감독하며, 간사국은 EU측에서 EU 집행위원회 및 의장국, 아시아 측에서 한국, 필리핀¹¹⁾이고, 8개 분야별에 아시아와 유럽별로 1개국씩 담당하고 있다.

11) 간사국 역할의 모호성 및 조정국(Coordinator)과의 중복으로 활동이 없는 상태임

○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TEIN: 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 TEIN은 2000년 3월 김대중 대통령 유럽 순방 중 아시아와 유럽간 정보통신망 구축을 제안하였고, 같은 해 10월 ASEM에서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ASEM 협력사업으로 「TEIN 1」(2000. 10월~2006. 1월), 「TEIN 2」(2004. 1월~2008. 12월) 및 「TEIN 3」(2008. 1월~2011. 12월)를 거쳐 현재 「TEIN 4」(2012. 1월~2015. 12월)로 확대 운영 중이다.
- TEIN은 아시아 20개국과 유럽 34개국을 연결하는 연구교육용(Research & Education) 초고속 통신망을 의미한다. 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정보통신·생명공학 등 첨단 분야 국제공동연구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 이 사업을 운영 관리하는 기구는 테인협력센터(TEIN*CC)인데, ASEM 산하 준국제 기구 성격을 갖는 TEIN 구축 및 운영관리 등의 전담기관이다. 이전까지는 유럽의 관리기관인 DANTE(www.dante.net)에서 TEIN 사업을 운영하여 왔지만, 2010년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8차 ASEM 정상회의(The ASEM8 Summit in Brussels)에서 참여국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한국 설립 승인을 얻어 제4차 TEIN 사업(2012년 개시)부터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운영사업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 테인협력센터(TEIN*CC)의 조직은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최상위 의결기구인 총회와 TEIN의 사업 운영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그리고 집행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집행사무국에서는 사무총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사업관리팀 기술관리팀 및 운영관리팀이 있다.

○ ASEM 아동복지사업(ASEM Action on Child Welfare)

- 아동의 상업적 성 착취 근절 등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 협력 증대를 목적으로 영국과 필리핀이 공동으로 제안하여 1998년 4월 제2차 ASEM 정상회의에서 ASEM 사업으로 승인되었다.
- 1998년 10월 런던 ASEM 아동복지 전문가 회의 시 ‘ASEM 아동복지 정보센터’ 웹사이트 구축을 결정하고 2000년 1월 영국정부가 동 정보센터를 공식 개설하였다. 이에 아동복지 관련 ASEM 회원국 정부 비정부기관 간 협력 증진 및 ASEM 회원국의 아동복지 법제 및 아동보호 모범사례 관련 정보 수록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ASEM 아동복지 법집행기

관간 1차 회의를 2000년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2003년 마닐라에서는 3차 회의를 실시하였다.

○ ASEM DUO 장학사업(ASEM DUO Fellowship Programme)

- 제3차 ASEM 정상회의(2000. 10월, 서울)시 우리나라가 프랑스, 싱가포르와 공동제안하여 신규 사업으로 채택되었다. 대학생·교수·교원들에게 선진교육 및 연구기회를 제공하여 인적자원개발 및 학문발전에 기여하고, 아시아와 유럽간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금을 조성하며, ASEM 회원국 내 아시아와 유럽의 교육기관 간 1:1 교류를 기본으로 하여 인적교류의 파급효과가 큰 대학생·교수·교원을 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사업 총괄·조정 및 행정업무 처리 사무국은 서울에 설치되어 있다.

○ ASEM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M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Eco-Innovation Center: ASEIC)

- ASEIC은 2011년 제 8차 ASEM 정상회의에서 중소기업의 환경 관련 사안 및 기후변화 대응, 녹색 성장 증진을 위한 기구 설립의 필요성에 따라, 회원국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ASEIC은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들이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서 녹색 경영을 실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환경 정책 및 친환경혁신 기술에 대한 자문 지원 및 지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단을 출범시키고 있다.

5)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제안

- 2014년 제10차 ASEM 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보를 위한 책임 있는 협력’을 주제로 특히 아시아와 유럽 간의 연계(connectivity) 강화가 강조되었다. 당시 한국은 자유토론 세션에서 북핵문제와 인권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조성을 소개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주도해오던 협력 사업 외에 ① 유라시아 복합 교통물류 네트워크 국제 심포지엄 및 전문가 그룹 구성, ② ASEM 협력사업 평가기준 제안, 그리고 ③ 노인인권에 대한 선언 창출 및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을 제안하였다(표 5 참조).

〈표 5〉 한국정부 제안사업 및 주요내용

제안사업	주요내용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 네트워크 국제 심포지엄 및 전문가 그룹 구성	- 국제기구, 러시아, 중국 등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유라시아 연계 협력 증진 방안 및 우선추진 과제 논의 - 국경통관, 교통 및 인프라 개선, 국가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
ASEM 협력사업 평가기준 제안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ASEM 협력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지표 수립 - ASEM 협력사업의 실효성 강화에 기여
노인인권에 대한 선언 창출 및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ASEM 회원국 간 협력 강화

자료: <http://www.aseminfoboard.org/events/10th-asem-summit-asem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p. 9

- 특히 한국이 제안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관련 사업은 ASEM 협력 사업으로서 유의미한 시도로 평가된 바,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같이 지역 간 연결성(connectivity)의 실체적 내용이 될 수 있으며, 세계적 이슈인 ‘고령화’의 문제를 ASEM이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ASEM 인권관련활동: ASEM 비공식 인권세미나

- ASEM의 협력사업 중 ‘인권’ 관련 협력을 살펴보면, 1997년부터 2014년까지 14차례 걸쳐 실시되고 있는 ‘비공식 인권 세미나(The Informal ASEM Seminar on Human Rights: 이하 비공식 인권 세미나)’가 유일하다. 비공식 인권 세미나는 1997년 2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ASEM 해외 각료 모임 때, 스웨덴과 프랑스가 인권에 관한 비공식적 세미나를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다. ASEM 정신에 따른 신뢰와 상호이해를 기초로, 운영위원회에서 두 지역을 위한 공동 관심사 중 이슈에 초점을 두어 주제를 정하여 세미나를 진행하여 온 바, 그동안 나타난 회원국들의 높은 참여 수준은 각국이 지닌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점이기도 하다. 비공식 인권 세미나의 참석 대상은 정부관계에서 NGO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로 구성

되어 있다. 비공식인권 세미나에서는 언론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인도적 지원 등 인권 문제에 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인권 상황이 열악한 일부 회원국들에게 인권 개선 필요성에 대한 ASEM 차원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압력을 주는 등 인권 선도 사업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12년 6월에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정보통신기술과 인권’을 주제로 비공식 인권 세미나가 개최된 바 있다.

- 진행방식을 보면 주요국 외무부처, 라울 웰린베리 연구소, 2000년 이래로 세미나의 사무국으로 역할 해 온 아시아-유럽 재단(ASEF)에 의해 공동으로 추진되었다. 회기별 인권세미나의 개최국과 아젠다는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표 6〉 ASEM 비공식 인권세미나 운영 상황

회기	기간	국가(지역)	아젠다
1	1997. 12. 11. ~1997. 12. 13.	스웨덴(룬)	사법권 사법에 있어서 지역적, 국가적 독자성 사법 모니터링
2	1999. 6. 28. ~1999. 6. 29.	중국(베이징)	아시아인과 유럽인의 가치 기준 교육에 대한 권리 소수자 인권
3	2000. 6. 19. ~2000. 6. 20.	프랑스(파리)	표현의 자유와 정보 인권(정보권, 알권리) 인도주의적 개입과 국가의 자주권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4	2001. 7. 2. ~ 2001. 7. 13.	인도네시아 (발리)	양심과 도덕의 자유 민주화, 갈등 해결과 인권 사회복지 증진에서 권리와 의무
5	2003. 5. 6. ~2003. 5. 17.	스웨덴(룬)	인권과 경제 관계 WG I: 인권과 다국적 기업 WG II: 외국인 직접투자
6	2004. 9. 16. ~2004. 9. 17.	중국(쑤저우)	국제 이민: 이민자 보호, 이민 통제와 조정
7	2006. 2. 22. ~2006. 2. 25.	헝가리 (부다페스트)	소수민족, 언어와 종교적 소수자와 인권
8	2007. 9. 26. ~2007. 9. 28.	캄보디아 (시엠리아프)	표현의 자유 WG1-정치권 WG2-문화권 WG3-국가시민사회, 국제기구의 역할과 교류 WG4-ICT의 영향

회기	기간	국가(지역)	아젠다
9	2009. 2. 18. ~2009. 2. 20.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형사사법체계 속 인권
10	2010. 7. 7. ~2010. 7. 9.	필리핀 (마닐라)	인권과 성평등 WG1-참정권과 정치적 역량강화 WG2-호적과 경제적 역량강화 WG3-문화적 실천과 사회적 역량강화 WG4-성관련 폭행
11	2011. 11. 23. ~2011. 11. 25.	체코(프라하)	국가적, 지역적 인권체계 WG1-국가인권체계 WG2-지역인권체계 WG3-지역인권체계의 소송유효성 WG4-인권체계의 다각적 구성
12	2012. 6. 27. ~2012. 6. 29.	대한민국 (서울)	정보통신과 인권 WG1-표현의 자유 WG2-프라이버시권 WG3-정보 격차 WG4-인터넷상의 문화 향유권
13	2013. 10. 21. ~2013. 10. 23.	덴마크 (코펜하겐)	인권과 환경 WG1-환경친화적 개발, 환경과 인권의 상호작용 WG2-정보 접근, 참여권과 사법권 WG3-관계자, 기관들과 정부 WG4-환경 변화와 인권 영향
14	2014. 11. 8. ~2014. 11. 20.	베트남 (하노이)	인권과 산업 WG1. 산업에 의한 위반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WG2. 인권 이행을 위한 공동 책임과 기여 WG3. 모니터링, 보고와 배상에 대한 접근 WG4. 여러 관계자 협력

Ⅲ

노인인권 관련 국제법 및 국제기준 분석

1. 국제법과 노인인권	25
2. 노인인권 관련 국제기준	26
3. 노인인권 국제 연구 동향	44

1. 국제법과 노인인권

- 노인인권을 다루는 국제법 내지 국제조약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다만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ICCPR)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ICESCR)¹²⁾이 내용면에서 관련된다. 특히 ICCPR 제2-(1)조 및 ICESCR 제2-(2)조(차별금지), 제9조(사회보장과 사회보호의 권리)는 노인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ICESCR에 따라 만들어진 ‘규약인권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CESCR)’는 일반논평(GENERAL COMMENT) 제6호에서 동 규약의 조항들이 사회의 전 구성원에 완전히 적용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노인 역시 동 규약에서 인정된 제반 권리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제시하였다.¹³⁾ CESCR는 규약 당사국들이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증진 및 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당사국들은 규약에 의해 허용 가능한 자국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¹⁴⁾ 그 외 CESCR는 ICESCR의 남녀동등권(Equal rights of men and women, 규약 제4조), 근로권(Rights relating to work, 규약 제6조-제8조), 사회보장권(Right to social security, 규약 제9조), 가족 보호(Protection of the famil, 규약 제10조),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 규약 제11조),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Right to physical and mental health, 규약 제12조), 교육 및 문화에 대한 권리(Right to education and culture, 규약 제13조-15조) 등에서 노인인권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이행조치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¹⁵⁾

12) <http://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ESCR.aspx>참고.

13) GENERAL COMMENT NO. 6 (1995).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older persons.

(http://tbinternet.ohchr.org/Treaties/CESCR/Shared%20Documents/1_Global/INT_CESCR_GEC_6429_E.pdf).

14) Ibid. p.110.

15) Ibid. pp. 111-115.

2. 노인인권 관련 국제기준¹⁶⁾

1) UN 주요 논의 및 활동

-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 전문과 30조의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법 내지 협약의 준거로 간주된다.
- 1982년 UN의 비엔나국제행동강령(UN 고령화에 관한 국제행동계획)
 - 고령화를 노인인권에서 접근한 첫 번째 국제문서이다. 1982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고령화대회(World Assembly on Aging)에서 ‘고령화관련비엔나행동계획(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ing)’이 채택되었고, 국제인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의 맥락에서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이 취해야 할 조치가 기술되어 있는데, 이 문서에서는 62개 권고를 포함하고 있다.
 - 이 강령은 1982년 결의 37/51로서 UN 총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인구 고령화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노인의 잠재적 능력과 자립요구를 충족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적·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마련하는데 있어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권고내용¹⁷⁾은 보건과 영양에 관한 권고(1-17), 노인소비자 보호에 관한 권고(18), 주거와 환경에 관한 권고(19-24), 가족에 관한 권고(25-29), 사회복지에 관한 권고(30-35), 소득안정과 고용에 관한 권고(36-43), 교육에 관한 권고(44-51), 자료수집과 분석 권고사항(52-53), 훈련과 교육 권고(54-59), 연구 권고(60-62)로 이루어져 있다.
- 1991년 노인을 위한 UN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 국제행동계획 중 인도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립·참여·보호·자아실

16) 노인인권 관련 국제기준은 부재한 만큼, UN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논의 및 진척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함.

17) 장복희(2003). ‘고령사회와 관련한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와 실천과제’. 『가톨릭법학』 1. pp. 221-222.

현·존엄 등 5개 주제에 관한 18개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각 사항별 주요 내용¹⁸⁾은 다음과 같다.

- 독립(Independence)에서는 ① 노인은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② 노인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③ 노인은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④ 노인은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⑤ 노인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 참여(Participation)에서는 ① 노인은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하고, ② 노인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하며, ③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 돌봄(Care)에서는 ① 노인은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하며, ②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③ 노인은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④ 노인은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⑤ 노인은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18)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RES/46/91 74th plenary meeting 16 December 1991(<http://www.un.org/documents/ga/res/46/a46r091.htm>)을 기초로 작성됨

- 자아실현(Self-fulfillment)에서는 ① 노인은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하고, ② 노인은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 존엄성(Dignity)에서는 ① 노인은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②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 1992년 UN ‘고령화에 관한 선언’ 채택 및 노인의 해 선포

- 1992년 UN총회에서는 ‘고령화에 관한 선언(Proclamation on Aging)’을 채택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여성노인이 사회기여에 비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지원하고, 남성노인은 퇴직 이후에도 계속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을 지원하고 전 세계적인 목표에 부응하면서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또한 본 총회에서 1999년을 ‘노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Older Persons)’로 선포하였다.
- 또한, UN은 ‘고령화에 관한 국제행동계획의 시행: 노인과 개발의 통합(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Plan of the Action on Aging: integration of older persons in development)’을 채택하여 2001년까지 달성할 여러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 2002년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 2002년 고령화에 관한 제2차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고령화에 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이하 MIPAA)’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나이가 들고, 완전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자신의 공동체에 참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고, 각 정부를 향하여 노인인구의 잠재력을 장래 발전의 기초로 삼는 ‘노인과 개발(Older persons and development)’에 관한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¹⁹⁾.
- 국제행동계획에 제시된 핵심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노인들의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
 - ② 노년기의 빈곤해소 및 노후 안정성 확보

19) 김주현 외(2011). ‘국제법상에 나타난 보편적 인권규정과 노인인권’. 「법과사회」 p. 255.

- ③ 노인들의 소득활동과 봉사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정치·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의 역량 강화
 - ④ 평생에 걸친 자아개발, 자아실현, 복지의 기회 제공
 - ⑤ 개인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향유와 노인 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의 철폐
 - ⑥ 성차별 철폐를 통한 노년기의 젠더 평등 달성
 - ⑦ 사회개발에 있어서 가족, 세대 간 상호의존성, 연대와 호혜주의의 중요성 인식
 - ⑧ 예방 및 재활관련 보건의료를 포함한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 사회적 보호의 제공
 - ⑨ 본 행동계획을 이행으로 전환함에 있어 정부, 시민사회, 민간영역, 노인 간의 협력관계(파트너십) 강화
 - ⑩ 개도국의 과학적 연구와 전문적 지식을 강화하고 고령화가 개인, 사회, 건강 분야에 갖는 영향력에 초점을 둔 기술적 잠재력 구현
 - ⑪ 노화과정에 있는 노인 고위상향과 노인들의 특수한 환경, 노인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노인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의 모색 필요성에 대한 인식²⁰⁾
- UN에서는 MIPAA를 통해 노인과 발전, 노년기까지의 건강과 안녕 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 확보 등의 세 가지 주요 방향을 채택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들을 권고하고 있다.

○ **공개실무그룹(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회의**

- 공개실무그룹(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이하 OEWGA)에서는 국제적 틀의 반영 및 기타 협약과 조치의 반영 가능성, 그리고 간극해소 등 고령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무엇보다 많은 나라들이 노인인권과 관련한 적절한 법률과 정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기존 정책들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고, 관련 계

20) UN(2002). Political Declaration and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pp. 17-18.

회의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²¹⁾

- OEWGA는 정례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노인인권 강화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MIPAA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채택된 행동계획의 효과적 이행 및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고령자의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의 임명, 인지도 개선, 지역 간 경험 공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의 동반자 관계강화 등을 강조하는 논의를 실시했다. 또한 국제노인인권협약 체결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병행해 온 바, 지금까지 개최된 OEWGA의 주요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²⁾
- 1차 회의²³⁾에서는 68개국이 참여하였다. 주요 내용은 고령화 사회에서 연령 차별, 방임과 폭력이 노인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노인인권협약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적절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노인이 당면한 인권 위기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던 점이 주요 특징이다. 나아가 기존 노인인권보호 기제 간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 역시 확인된 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토의와 제안이 이뤄졌다. 이와 더불어 보다 효과적인 2차 마드리드 이행평가 모니터링 방안을 논의하고, 기존 국제조약 활용하여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 기존 인권기구, 위원회 등에서 고령화 이슈의 주류화 유도 방안을 토의하면서 실무그룹에 노인당사자 및 이해관계단체 참여를 독려하기로 하였다.
- 2차 회의²⁴⁾에서는 제 1차 실무그룹 회의에 이어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중남미 국가 등이 중심이 되어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노인인권협약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반면, EU, 네덜란드, 스위스 등 유럽 국가 및 일본, 중국 등은 기존 제시된 MIPAA의 적극적인 실행 등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협약제정을 둘러싼 의견차이가 나타났다. 이외에 NGO를 중심으로 장애인권리협약 제정과정의 갖는 의미, 국제노인인

21) Kalache, A. (2012). Human rights in older age. Global population ageing peril or promise?. the Harvard Initiatives for Global Health. p. 90.

22) <http://social.un.org/ageing-working-group/index.shtml>

23) Report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A/AC.278/2011/4),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First working session, New York, April 2011.

24) Report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A/AC.278/2011/5),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Second working session, New York, August 2011.

- 권협약에서의 건강권 쟁점, 폭력과 학대, 권리기반 담론의 중요성에 대한 주제들이 다뤄졌다. 1차 회의에 비해 50개 국가만이 참가하여 참여국가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논의 관련 결정 또한 이뤄지지 못하였다.
- 2012년 3차 회의²⁵⁾에서는 2차에 비해 좀 더 많은 회원국가가 참여하여 총 63개국이었으나 상대적으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 회원국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회의에서는 ① 노인인권현황 및 문제점, ② 나이로 인한 차별, ③ 자치, 자립 및 보건 서비스, ④ 존엄성을 누리는 삶, 사회보장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 ⑤ 노인학대와 노인폭행, ⑥ 노인의 재판받을 권리에 관한 이슈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3차 회의에서는 노인인권 관련 각 국의 법제와 정책 내에서 불평등과 격차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포괄적 측면에서의 노인인권 보장의 미흡함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회의 역시 국제노인인권협약을 비롯한 새로운 노인인권보장 기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 4차 회의²⁶⁾의 주요안건은 ① 고령자의 인권과 관련된 회원국들의 기존 정책 및 사례, 법제, ② 나이에 따른 차별, ③ 사회적 소외, ④ 독립적 생활 및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 ⑤ 사회적 보호 및 사회보장, ⑥ 폭력 및 남용, ⑦ 사법접근법에 관한 이슈였다. 이 외에도 ‘고령자 지지자(친구) 개방그룹’을 개설하자는 의견 역시 개진된 바 있다. 1차 및 2차 회의에서 국제노인인권협약을 둘러싼 국가 내지 지역간 입장 차이가 나타났던 양상은 4차 회의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하였다. 중남미 및 일부 아프리카 국가 등에서는 고령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강력한 국제적 수준의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국제노인인권협약 체결을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MIPAA를 비롯하여 이미 국제적으로 채택된 행동계획 내지 기존 협약의 효과적인 이해를 통해 강력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주장 역시 함께 대두되었다. 즉, 노인인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가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국제 노인인권협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가간 견해차가 뚜렷한 셈이다. 그런 만큼 4차 회의에서도 국제노인인권협약은 의결되지 못하였다. 그

25) Report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A/AC.278/2012/1),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Third working session, New York, 21-24 August 2012.

26) Report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A/AC.278/2013/2),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Fourth working session, New York, August 2013.

결과 후속회의부터는 국제노인인권협약 안건뿐만 아니라, 노인인권보장과 관련된 긴급한 이슈와 사안을 위주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면서 협약을 비롯한 노인인권보장 기제를 다루는 것으로 수렴되었다.

- 2014년 5차 회의²⁷⁾는 인권과 고령자 케어, 노인에 대한 폭력과 학대, 종말기 케어에 관한 법적, 재정적 이슈, 특히, 전인적 완화케어와 고령자의 권리, 충분한 통증관리와 치매케어와 지원, 인권관점에서의 고령자 케어의 모니터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정리하면, UN의 OEWGA는 정례회의를 통해 노인인권보장 관련 논의를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지만, 국제노인인권협약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 및 호주는 국제노인인권협약 체결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²⁸⁾, 새로운 협약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 만큼 5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협약체결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4차 회의 이후로는 OEWGA에서도 국제노인인권협약 안건은 쉽게 동의·체결되긴 어려운 만큼, 국제수준의 현행 노인인권보장기제 및 격차진단 등 노인인권보장을 위한 본질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환되어 전개되고 있다. 다만 국제노인인권협약 체결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각 회차별 회의에 참가한 회원국들이 노인인권보장을 위한 논의와 점검은 지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은 의미 있는 결과로 보여 진다.
- UN을 지금까지 살펴본 각 회차별 OEWGA 주요내용 및 국제노인인권협약 논의 특징은 다음 표 7과 같다.

27) Report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A/AC.278/2014/2), 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Fifth working session, New York, July 2014.

28) 미국은 국제노인인권협약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감을 표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는 4차회의에 제출된 ‘The United States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http://social.un.org/ageing-working-group/documents/fourth/US.pdf>를 참고할 것)

〈표 7〉 각 회차별 OEWGA 주요내용 및 국제노인인권협약 논의 특징

회차	연도	주제	특징
1회	2011. 4.	· 전 세계 노인의 인권 상황 이해	- 국제노인인권협약의 필요성 대두 - 국제수준의 현행 노인인권보장기제 및 격차문제 강조
2회	2011. 8.	· 국제수준의 현행 노인인권보장기제 및 격차진단 : 차별, 노인의 건강권, 폭력 및 학대 예방, 사회적 보호, 사회적 배제	- 안건의 구체화: 노인 인권 영역(주제)별 논의구조 정착 - 국제노인인권협약 관련 찬·반 이견(異見) 대두 - 회원국 참가율 저조
3회	2012. 8.	· 국제수준의 현행 노인인권보장기제 및 격차진단 : 연령차별, 자치, 자립 생활 및 돌봄, 존엄한 삶과 사회보장, 자원에 대한 접근, 폭력 및 학대, 정의(正義)로의 접근 분야	- 현행 인권보장 기제 검토 - 통합인권기구 필요성 제언 - 국제노인인권협약에 대한 이견(異見)에 따른 합의도출 실패 - AGE Platform Europe를 비롯 다양한 NGO의 참여
4회	2013. 8.	· 국제수준의 현행 노인인권보장기제 및 격차진단(전문가 패널중심 토의) : 노인인권증진 및 보호와 존엄성에 대한 MIPAA의 기여, 주요 지역(대륙)별 인권제도현황, 사회보장과 건강권, 차별과 노동 접근성 분야	- 노인인권보장 기존 기제 흡결 및 부적절성 문제 지속 양상 강조 - 노인인권침해(차별, 소외 등) 및 기본적 욕구 미충족 만연 - 고령자지지지(친구)개방그룹 개설 제안 - 국제노인인권협약 미의결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등 NGO 참여
5회	2014.8.	· 국제수준의 현행 노인인권보장기제 및 격차진단 인권과 노인돌봄, 폭력과 학대, 중말기 돌봄 관련이슈 관련 분야 · MIPAA이행을 통한 노인인권 강화 방안 발표 · 노인과 POST-2015 아젠다 발표	- 인권증진장치에 대한 이견 재확인 (국제노인인권협약 찬반양론) -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인식 공유 - 급여수혜자에서 활발한 권리주체당사자

○ 2012년 ‘노인의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인권최고대표 보고서’ 발표

- 2011년 UN의 ‘제2차 고령화에 관한 세계총회’ 후속보고서는 빈곤과 부적절한 생활 조건, 나이와 관련된 차별, 폭력과 학대, 특별한 조치·장치 및 서비스의 부족 등이 노인을 가장 압박하는 인권문제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2년 발간된 ‘노인의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인권최고대표 보고서’에서는 다수의 국제적 인권 규범 및 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권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법령 등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도구가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노인이 당면한 인권문제를 차별, 빈곤, 폭력과 학대, 사회서비스의 부족 등의 차원에서 세부분야별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인권보호의 틀에서 규범과 실천 간의 공백과 격차의 현황이 적시되었다.²⁹⁾

29)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E/2012/51), 2012.

2) UN 산하 기구 주요 활동

- UN-ECE 에서는 2007년 1차 점검회의 이후 정부간조직체인 ‘노년연구그룹 (Working Group on Ageing)’ 을 조직·운영 중이다.
 - 한편 UN-ECE는 회원국에게 MIPAA 이행전략에 따른 10대 이행과제를 제시한 바, 이는 아래 표 8과 같이 총 10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8〉 MIPAA실행전략에 따른 10대 이행과제³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모든 정책 내 고령화의 주류화 (C.1) ② 노인의 사회적 통합과 참여 보장 (C.2) ③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추구 (C.3) ④ 인구구조 변화와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응하는 사회보호체계 (C.4) ⑤ 인구고령화로 인한 경제·사회적 결과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구축 (C.5) ⑥ 평생교육 증진과 교육제도 개선 (C.6) ⑦ 건강과 웰빙에 따른 모든 노인의 독립적인 삶의 질 유지 (C.7) ⑧ 고령사회에서 성주류화 (C.8) ⑨ 노인 돌봄 제공과 세대 내·세대 간 연대 강화 (C.9) ⑩ 지역이행전략 성취를 위한 지역 협력 (C.10)

- UN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이하 ESCAP)에서는 1999년 ‘아·태 마카오 인구노령화 행동계획(Macao Plan of Action Aging in Asia and the Pacific: 이하 아·태 마카오 인구고령화 행동계획)’ 을 채택하였다.
 - ESCAP은 1999년 아·태 마카오 인구고령화 행동계획 채택과 더불어, 2000년에는 행동계획의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2000년과 2002년에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국가별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2년 채택된 MIPAA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세미나를 2002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하여 고령인구의 사회보장 서비스에

30) UN(2012). ‘Synthesis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in the UNECE region’ . p.4.

대한 접근을 확보하는 ‘상하이 이행 전략(Shanghai implementation Strategy)’을 채택하도록 지원하였다. 한편 2007년, 10월 중국 마카오에서 ‘MIPAA의 지역적 검토를 위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아·태지역의 고령화 분야의 발전상황을 점검하고 국가별 검토를 통한 MIPAA이행을 살펴보았으며, 향후 행동계획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등의 활동을 실시하였다.³¹⁾

- ESCAP 산하 Subregional Office(East and North-East Asia)에서는 2012년 방콕에서 개최한 ‘지속가능한 고령사회구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국가별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과 2014년에 개최되는 제20차 국제인구개발회의(ICPD+20)에서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아시아 국가 간 정책입안자들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다루었다.³²⁾

○ GlobalAge Watch Index(GAI) 개발 및 국가별 실태 분석

-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은 UNFPA(유엔인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GlobalAge Watch Index(GAI)를 개발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3년부터 매년 노인인권 주요 영역과 관련 있는 건강, 역량, 소득, 환경을 중심으로 각 국가별 실태를 평가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3) MIPAA 실행전략에 따른 이행과제 2차주기 평가 결과

- MIPAA 발표 이후 세계 각국은 고령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UN의 사회개발위원회(2004.2.13.)에서는 각 국가별 이행실태를 5년마다 점검하기로 하였고, 유럽지역이 속한 UN-ECE에서는 보다 정교화된 지역별 실행전략(Regional Implementation Strategy,RIS)을 2002년 고안하여 채택하였다. 이 전략에는 MIPAA를 실행함에 있어 회원국들이 초점을 맞추기로 동의한 10대 영역이 제시됨에 따라 UN-ECE 회원국은 2002년 이후 5년 주기에 의해 MIPAA 지역별 실행전략(MIPAA/RIS)에 의한 점검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³³⁾ 가장 최근 평가에 해당하는 2차주기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³⁴⁾

31) <http://www.unescap.org/>참고

32) <http://www.unescap.org/publications/detail.asp?id=1530>

33) 평가 주기는 1차: 2003년~2007년, 2차: 2008년~2012년, 3차: 2013년~2017년

34) 실행전략 이행평가의 10대 영역은 전술한 표 8을 참고할 것

- 먼저 사회보호(C.4), 건강과 웰빙(C.7), 노동시장(C.5), 고령사회의 주류화(C.1)부문에서는 대부분의 UN-ECE 회원국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평생교육(C.6), 성주류화(C.8), 세대간 통합(C.9), 지역별 협력(C.10)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³⁵⁾
- 국가별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기반 정책과 법제 구축 면에서는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이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에 주력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많은 국가에서 노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시민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시민사회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수단은 다소 미약한 문제가 있는데 슬로베니아가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였다. 경제위기는 노인과 관련된 정책개발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사회보호와 연금정책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 등의 정책들은 우선순위로 고려하면서 유지하고자 애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아르메니아, 벨기에, 캐나다, 사이프러스,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몰도바공화국,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세르비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에서는 위기상황을 안정화하는데 목적을 둔 경제정책들이 지속가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빈곤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다. 한편 벨라루스, 캐나다, 핀란드, 몰도바공화국, 폴란드, 세르비아에서는 보건과 돌봄의 민영화 현상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난바, 국가차원의 대응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몰타에서는 비공식 돌봄제공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³⁶⁾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UN-ESCAP회원국에서도 MIPAA 이행 수준을 점검한 바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³⁷⁾
 - 먼저 노인과 발전 영역에서는 중국, 미얀마 같은 국가들에서 국가정책과 예산에 노인을 위한 내용들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전개되었고, 호주,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몽골,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는 노인의 고용의 권리와 사회보호를 위한 법체계 및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한

35) UN(2012). 'Synthesis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in the UNECE region' . p.8.

36) Ibid. pp.24~26.

37) Report of the Asia-Pacific intergovernmental meeting on the second review and appraisal of the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2012). pp.10-24.

노력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비한 국가는 호주, 방글라데시, 인도, 필리핀, 일본, 한국, 태국이 있었다. 또한 일본, 한국, 중국, 호주에서는 활동적이고 생산적 노화의 한 부분으로 노인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접근이 이뤄졌다.
 - 노년의 건강과 안녕에 대해서는 약 80%의 회원국이 전 생애에 걸친 건강 증진과 안녕과 관련된 정책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의 수준에 있어서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의 확보와 관련해서 일본, 한국, 호주 등은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시도된 것으로 평가되었다.³⁸⁾
- 한편 MIPAA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한 아시아 지역 국가는 소수에 그치고 있는 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가 이뤄진 4개 국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일본³⁹⁾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시스템 마련, 노인들의 능력 활용, 지역 대응력 강화, 안전한 생활 환경 제공, 90년의 수명 준비 정책개발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특히 MIPAA에서 제시한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첫째, 노인과 발전을 위해서는 ① 나이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조치 마련, ②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환경 개선 및 기회 제공, ③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및 세금의 포괄적 개혁, ④ 생애학습 환경 조성, ⑤ 재해 대응책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고, 둘째, 노년기의 건강과 안녕증진을 위해서는 ① 노인의 건강생활 장려를 위한 건강증진계획(Health Japan 21) 수립, ②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서비스 기준 마련, ③ 지속가능한 포괄적인 재택의료 및 재택간호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등의 정책들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조성을 위해 ① 안전한 주거 환경 보장 및 고령친화적 주거정책 마련, ② 지역사회 내 생활 지속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

38)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and HelpAge International. 2012. “Ageing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Celebration and A Challenge” . p.76.

39) The Second Review and Appraisal of the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Japan’ s report(2012). pp. 1-10.
(<http://www.unescapsdd.org/events/asia-pacific-intergovernmental-meeting-second-review-and-appraisal-madrid-international-plan>)

한 상호지원 관련 정책 등을 주요하게 전개한다고 보고하였다,

- 베트남⁴⁰⁾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MIPAA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첫째, 노인과 발전을 위해 ① 노인은 사회활동과 발전에 긍정적이라는 인식전환을 도모 하였으며, ② 일하는 노인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였으며, ③ 노인교육 및 훈련 접근성 확보, ④ 세대 간의 연대, ⑤ 빈곤 감소 및 소득 보장을 강조해 왔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노인의 건강과 안녕 증진을 위해서는 ① 전생애 건강과 복지 증진, ② 헬스케어 서비스의 포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접근성 보장, ③ 헬스케어 및 케어제공자 교육 등을 전개하였으며, 셋째, 능력지원 및 지원환경조성을 위해서는 ① 노인을 위한 주거와 생활환경 정비, ② 재가서비스 추진, ③ 노인협회를 통한 케어네트워크 확보, ④ 다양한 분야 간 연계를 통한 지원, ⑤ 생활의 질을 향상 위한 다양한 노인클럽 지원, ⑥ 노인기금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베트남에서는 빈곤선 이하의 노인들이 17.2% 존재한다. 이들은 주로 농촌에 거주하거나 산촌, 섬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일을 찾는 데에도 많은 제약이 있고, 헬스케어서비스 이용에도 어려움이 크다. 특히 노인이 고립되어 살고 있는 경우 수치상으로는 적지만 언어에 의한 학대가 11%, 위협 등 1.6%, 대화하기를 거절하는 등이 3.4%로 자녀들에 의한 부적절한 행동 및 학대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⁴¹⁾.
- 한국의 경우 MIPAA 이행상황 실태와 평가 연구(2012)에서⁴²⁾ 관련 법령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지방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MIPAA에서 제시된 35개의 권고행동과 관련하여 일부(4개 정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고령화의 주류화는 구현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노인과 발전이라는 방향에서는

40) Report Vietnamese 10 Years of Implementation of the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IPAA, 2002-2012). pp. 1-16.
(<http://www.unescapsdd.org/events/asia-pacific-intergovernmental-meeting-second-review-and-appraisal-madrid-international-plan>)

41) Report Vietnamese 10 Years of Implementation of the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IPAA, 2002-2012). p. 12.

4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pp. 182-185.

14개의 권고행동 중 12개와 관련된 법이 마련되어 있고, 노년기까지의 건강과 안녕증진의 경우 13개의 권고행동 중 7개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확보를 위한 권고행동 8개 중에서는 7개의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전문가 조사를 통해 각 권고행동의 구현 정도와 충실성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보고하고 있다⁴³⁾.

- 중국⁴⁴⁾에서는 MIPAA의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 위해 농촌과 도시를 커버하는 사회보장네트워크 구축, 노인들의 사회참여, 의료보장 정책 마련, 고령화 시설과 주거환경의 표준화, 접근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 왔고 고령친화적 도시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으며 노인에 대해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 및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 마련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도래하는 고령화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은 미약한 편이며, 빈곤노인에 대한 사회보장, 건강보장, 건강지원 시스템, 의료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노인의 능력을 지원하고 지원하는 환경 조성 등 사회전반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4) OECD의 주요 논의 및 활동

○ 고령화의제 채택

- OECD는 교육·노동·사회문제위원회(ELSAC)가 중심이 되어 고용, 노인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관한 각국 동향의 비교분석과 정책대안을 통해 인권 관련 활동이 전개되었는데, 1980년대 이후 인구고령화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고령화의제(Ageing in OECD)가 채택되었다. 1996년에는 A Critical Policy Challenge, 1998년 Maintaining Prosperity in an Ageing Society, 2000년 Reforms for an Ageing Society 보고서가 제출되어 고령화가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 연금수급의 심각성 등을 예견하며 사회보장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43) Ibid. p. 228.

44) Summary of the Report on the Ten-year' s Review of China' s Implementation of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http://www.unescapsdd.org/events/asia-pacific-intergovernmental-meeting-second-review-and-appraisal-madrid-international-plan>

- 1998년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7대 개혁원칙 제시
 - 1998년의 정책보고서(Maintaining Prosperity in an Ageing Society)에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7대 개혁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 제시된 핵심은 정부의 공공지출을 줄이되, 개인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및 경제의 지속발전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7대 개혁 원칙은 다음과 같다.⁴⁵⁾
 - ① 조기퇴직제도 개혁(공공연금, 세금, 사회보장 제도 등의 개혁을 통해 조기퇴직 유인을 철폐)을 통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대
 - ② 고령근로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및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③ 재정안정화 : 연금급여액 감축, 기여율 인상 등을 통해 재정안정 및 공공부채(public debt) 감축 도모
 - ④ 퇴직소득원 다원화 : 공적연금 비중 축소, 사적저축 강화를 통해 위험분산 및 세대간 균형 부담 도모
 - ⑤ 보건의료와 장기보호 : 비용효과성 제고
 - ⑥ 사전기여형 연금체계 발전과 병행하여 효과적 감독체계 등 금융시장 인프라 강화 추진
 - ⑦ 각 조치간 조화와 효과적인 집행 : 국민의 이해와 지지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

5) EU 논의 및 활동

- 2012년 ‘활기찬 노후와 세대 간 연대를 위한 유럽의 해’ 제정
 - EU에서는 2012년 ‘활기찬 노후와 세대 간 연대를 위한 유럽의 해’ (European Year for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 EY 2012)’ 를 제정하게 되는데, 이는 EY 2012를 통해 우수한 정책을 확인하고 확산시키며, 활기찬 노후의 증진 및 세대 간 협력과 결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유망한 정책입안자와 이해당사자들의 의식을 고취하는 체계의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EY 2012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주제는 첫째, 고용부분에서의 활기찬 노후, 둘째, 적극적 시민권, 자원봉사, 돌봄을 통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활기찬 노

45) OECD(1998), ‘Maintaining Prosperity In An Ageing Society’ . 『Policy Brief』 June. p.2.

후, 셋째, 건강한 노화와 독립적인 삶을 통한 가정 내에서의 활기찬 노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대 간 협력과 결속의 강조이다.

- EY 2012는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대간 결속은 모든 정책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매년 4월 29일을 세대 간 결속을 위한 유럽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고, 매년 지향하는 목표의 진행을 조사하여 활기찬 노후의 개념과 정책방향을 적극 홍보함은 물론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수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활기찬 노후의 패러다임은 유럽에서 고령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발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해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이다.⁴⁶⁾

○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⁴⁷⁾ : 노인 권리 향상을 위한 권고안 채택

- 유럽평의회는 2014년 2월 19일 노인의 권리를 높이기 위한 회원국들의 권고안(Recommendation)으로 ‘무차별’, ‘자율성과 참여’,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사회보장 및 고용’, ‘돌봄’, ‘사법행정(Administration of justice)’ 등의 과제를 채택하였다.
- 권고 안에는 반차별(Non-discrimination), 자율성과 참여(Autonomy and participation),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Protection from violence and abuse), 사회보호 및 고용(Social protection and employment), 돌봄(Care), 사법행정(Administration of justice) 등이 과제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권고안이 제시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9. 참조).

46)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 유럽의 활기찬 노후정책을 중심으로」. pp. 18-40.

47) 유럽회의’ 또는 ‘유럽심의회’ 라고도 한다. 범유럽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해 체결 등의 제창으로 창설된 국제기구. 유럽평의회는 유럽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정치적 기구로써 1949년 1월, 브뤼셀 조약기구 외무장관 회의에서 유럽평의회 설립규정이 채택되어 동년 5월에 서유럽 10개국으로 설립되었다. 유럽평의회는 설립목적은 인권보호,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수호, 유럽지역 국가의 사회적 법적 사례들의 표준화, 유럽주체성의 확립이었으나 1989년 이후 정치적 보호 장치 및 인권 파수역할, 중동구 유럽국가에 대한 지원 및 인권, 지역 민주주의, 교육, 문화, 환경에 대한 전문성 공유로 변경되었다. 유럽평의회는 회원국들은 상호 협력하여 테러리즘, 집단범죄, 사이버 범죄, 생명윤리와 생명 복제에 관한 문제, 여성 및 아동 폭력등 기타 인권과 관련된 부정한 범죄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논의한다. 현재는 유럽대륙의 47개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평의회는 각료회의, 의원총회, 지역·지방자치단체협의회,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 독립기구로서 유럽인권재판소와 인권대표가 있다. 보다 자세한 것은 <http://www.coe.int/aboutCoe/index.asp?page=quisommesnous&l=en>을 참조.

〈표 9〉 유럽평의회 권고안

- (1) 반차별: 노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 없는 권리와 자유를 향유해야 하며, 연령차별이 없는 정책 입안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 (2) 자율성과 참여: 독립적인 삶과 자기결정권, 자율성 아래 노인과 관련된 모든 사항의 독립적인 결정, 사회, 문화, 교육, 훈련, 공공부문의 참여와 교류, 동등한 법적지위와 이를 행사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 및 노인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입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 (3)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폭력, 학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방임으로부터 노인을 보호, 경제적 학대에 대해 인식 제고와 보호, 학대를 감지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 및 학대발생 보고 장려와 신고의무자 보호, 학대조사 등을 실시한다.
- (4) 사회보호 및 고용: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고, 공공·경제·사회·문화생활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제공, 노인의 이동성을 고취시키고 사회적 반시설에 대한 접근성 확보, 적합한 주거상황, 기본적인 서비스 지원, 고용에서의 반차별 조치, 노동시장 참여 촉진 방안을 마련한다.
- (5) 돌봄: 노인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 유지, 증진할 수 있는 수단을 가능한 지역사회(재가)에서 이뤄지도록 하며, 보건과 사회적 돌봄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실시, 의료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고지를 받아야 하며 자유의지에 의해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기타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다.
- (6) 사법재판: 노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합리적인 시간과 장소 등의 고려, 무료법률 지원, 나이와 건강을 고려한 재판,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처우 개선, 노인 구금을 대체할 방안 고려 등이다.

자료: Council of Europe. 2014. ‘Recommendation CM/Rec(2014)2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요약 및 재정리⁴⁸⁾.

48) <https://wcd.coe.int/ViewDoc.jsp?id=2162283&Site=COE&BackColorInternet=C3C3C3&BackColorIntranet=EDB021&BackColorLogged=F5D383>.

6)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LO) 논의 및 활동

-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채택
 - ILO는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에서 제시한 9가지의 사회적 위험에 노령보장을 포함시켜, 사회보장에 관한 보편적 기준으로서 1952년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⁴⁹⁾’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1967년 ‘장애·노령·유족연금에 관한 128호 협약⁵⁰⁾’에서 노령연금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에서도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결핍의 경우에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에서도 노령이 생계결핍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는 점이 규정된 바, 위 ILO의 협약은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보장에서의 노인인권증진과 연결된 활동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 노인인권 보호활동 관련 주요 협약 내용
 - ILO는 차별금지 협약(111호, C111)에서 모든 회원국은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 단체와 협의하여 연령으로 인하여 보호받거나 지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라면 차별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ILO는 권고 제122호(1964)에서 노인을 포함한 취약집단에 관한 고용정책에 대해 언급하면서, 노인근로자들이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이들을 특별히 배려하도록 하였다.
 - 또한 권고 제142호(1975)에서 취업 지도 및 훈련과 관련해서 노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들이 평등하고 차별 없이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고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노동능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권고 제162호(1980)에서 노인근로자를 고령화로 인해 취업 장애를 겪는 자로 정의하면서 노인근로자들이 직장 내에서 그리고 사회보장, 퇴직 면에서 차별받지 않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 1998-1999 ILO세계고용보고서에서는 노동생활을 통한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고령노동자의 조기 배제를 예방하기 위한

49) 노동부(2002). 『ILO주요협약집』. p.164.

50) Ibid. p.262.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훈련과 지속적인 교육은 변화하는 요구와 기회에 적응하도록 하고 이들의 강제적 퇴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며, 연령차별(고령자 능력에 대한 편견)은 고령노동자가 직면한 많은 어려움의 근거가 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 요컨대 ILO는 정부, 사용자, 노동자의 세 가지 부문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UN의 전문기구이지만, ILO가 만든 각종 조약과 권고들은 궁극적인 인권보장을 꾀하고 있는바, 노동자로서의 ‘노인’에게 가해질 수 있는 배제와 차별이라는 인권침해 상황을 예방하는 한편, 노인노동자의 역량개발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이행하고 있다.

3. 노인인권 국제 연구 동향

1) 세계노년학대회에서의 노인인권 국제 동향

- 최근 5차 년도에 걸친 세계노년학대회⁵¹⁾에서 다루어진 노인인권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13년 20차 서울 IAGG대회⁵²⁾는 ‘디지털고령화: 노인의료와 활동적 노화의 새로운 지평(Digital Ageing: A New Horizon for Health Care and Active Ageing)’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20차 대회에서 노인과 관련된 이슈는 노인의 소득보장, 의료보장, 장기요양보호, 노년기질환, 치매예방 및 의학적 치료, 항노화, 고령자고용, 고령친화도시환경, 사회참여 및 여가, 노인과 가족, 노인과 인권 등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보고가 이루어졌다. 노인인권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노인들의 권리강화를 위한 몇몇 국가들의 시도 및 활동에 대한 소개,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학대의 개념, 측정, 모니터링, 학대예방 관련 활동 등의 연구발표가 이루어졌다.
 - 2009년 19차 프랑스 IAGG대회는 ‘장수, 건강, 부(Longevity, Health and Wealth)’라는 주제로, 2005년 18차 브라질 IAGG대회는 ‘액티브에이징(active aging)’이라는 주제로서 각각 개최되었다. 노인인권과 관련된 구체

51) http://www.iagg.info/sub02_04_Past_World_Congresses.php

52) <http://www.iagg.info/data/IAGG%20대회논문분석및정책제안보고서.pdf>

적 이슈로는 노인학대에 관련된 보고가 주를 이루었는데,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여러 국가들의 대처 등이 소개되고 노인학대와 방치 등에 관한 국내외 아젠다 및 노인학대 예방 관련 국제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 2001년 17차 캐나다 IAGG대회는 ‘글로벌 에이징(Global Aging: Working Together in a Changing World)’ 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1997년 16차 호주 IAGG 대회는 ‘Aging Beyond 2000-one world one future’ 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고, 노인인권 관련 이슈는 건강한 노화는 무엇인가, 노화 가족 문화 그리고 지역, 새로운 확산, 과학 기술 그리고 노화 등에 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 세계노년학대회는 권역별로 정기적인 국제 연구 발표의 장을 제공하는데 권역별 대회에서 다루어진 노인인권 연구 동향은 다음과 같다.
 -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IAGG-ER은 2015년 더블린대회⁵³⁾에서 ‘Unlocking the Demographic Dividend’ 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인권관련 연구 발표는 인권, 노인차별, 노인학대(Human rights, age discrimination, Elder abuse) 등에 관한 이슈가 다루어졌다.
 -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IAGG Asia/Oceania의 경우 2011년 Australia대회⁵⁴⁾에서 ‘Ageing Well Together: Regional Perspectives’ 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노인인권 관련 연구 발표는 학대, 방임과 관련된 연구발표가 주를 이루었다. 2015년 치앙마이대회⁵⁵⁾는 10월 개최될 예정인데 이 대회의 주제는 ‘Healthy Aging Beyond Frontiers (국경을 넘은 건강한 노화)’ 이다. 인권과 직접 관련된 연구 발표는 사회조사 및 계획과 실천분야에서 학대와 방임이 진행될 것이며, 그 외 빈곤(Poverty), 노인 자살(Suicide in older people), 노인돌봄(Aged care), 노숙(Homelessness) 등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정리하면 세계노년학회에서는 노인인권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주로 세부주제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세부주제에서는 주로 노인 학대 및 방임 관련해서 각 나라별 현황, 대응방안,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국

53) <http://www.iaggdublin2015.org/>

54) http://iagg.info/xe/iagg_archives/731

55) <http://iaggchiangmai2015.com/overview/iagg-asia-oceania-2015/>

제적 네트워크 활동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2) 노인인권 관련 국제 연구 동향

- 최근 5년간의 국제학술지⁵⁶⁾에서 노인인권을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노인 인권의 개념을 시도한 연구, 노인인권보호에서의 국제기준의 기능 및 역할, 개별 국가의 상황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국제기준에서의 노인권리에 관한 연구, 인권보호 관점에서의 노인의 국제적 지위에 관한 연구, 개별 국가들에서의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 노인학대 및 연령차별 대한 연구, 노인학대 및 노인 차별, 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에 대한 연구, 인권관점에서의 노인완화치료, 인권관점에서의 건강보호, 인권관점에서의 노인요양보호에 관한 연구, 고용상 연령차별에 관한 연구, 노인수감자의 인권에 대한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5년간 발표된 논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Mé gret, F. (2011)⁵⁷⁾의 연구는 노인인권에 대한 관점과 개념 들의 변화과정을 분석한 연구로서 노인인권 체제는 다른 분야 내지 집단에 비해 매우 느리고 더디게 발전되어 온 양상이 나타났고 있음이 제시되었다. Sleaf, B. (2009)⁵⁸⁾의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인권을 보호, 증진하는데 인권관련단체와 기구들이 유효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Sidorenko 등의 연구(2004)⁵⁹⁾에서는 비엔나계획과 MIPAA를 비교하고 이러한 국제기준이 갖는 의의에 대해 제시하였다. 비엔나계획이 노인들의 ‘인도주의적’ 필요에 일차적인 목적을 둔 반면, MIPAA는 개발론적 관점에서 고령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보았고, 이는 노인을 ‘도움을 받을 만한 집단’으로 가엾게 여기는 연령주의에서 평등한 대우와 자기 결정에 대한 노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 Rodriguez-Pinzon과 Martin(2003)⁶⁰⁾은 학자, 학생 및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56)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SSCI)를 중심으로 검색하였음.

57) Mé gret, F.(2011).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A growing challenge. Human Rights Law Review, 11(1), pp. 37-66.

58) Sleaf, B. (2009). Using human rights accountability mechanisms to promote and protect older women’s rights. Gender & Development, 17(3), pp. 427-439. doi:10.1080/13552070903298436.

59) Sidorenko, A. & Walker, A. (2004). The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From Conception to Implementation. Ageing and society. 24(2), pp. 147-165.

노인을 중심으로 한 국제법 또는 국제기준 관련 국제적 인권 메커니즘 및 체계에 대한 현재의 조직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으며, Kanter(2009)⁶¹⁾는 국제법적 차원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 노인의 권리에 대해 갖는 함의를 분석 하여 제시하였다. Morgan & David(2002)⁶²⁾는 노인옹호의 방법으로서 인권관점을 재조명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 Giordano(2005)⁶³⁾는 연령기준 분배(age-based rationing)가 유럽 및 세계적 차원에서 체결된 인권 관련 협약에 표현 된 원칙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Doron & Apter(2010)⁶⁴⁾의 연구에서는 노인국제인권협약의 필요성을 둘러싼 쟁점을 분석하였다.
- Doron & Werner(2008)⁶⁵⁾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규명하였고, Lloyd-Sherlock(2002)⁶⁶⁾의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 3개국의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에 대해 비교분석하였고, 노인학대 및 연령차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Firbank(2001)⁶⁷⁾의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고용상의 연령차별들의 문제 해결에는 인권관련 공적 기구의 역할이 중요함을 분석하였다. Phelan(2008)⁶⁸⁾의 연구에서는

60) Rodriguez-Pinzon, D. & Martin, C.(2003).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tus of elderly persons.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18, pp. 915-1008.

61) Kanter, A. S.(2009).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Rights of Elderly People Under International Law. *Georgia State University Law Review*, 25(3), pp. 527-573.

62) Morgan, R. E. & David, S.(2002). Human rights: a new language for aging advocacy. *The Gerontologist*, 42(4), pp. 436-442.

63) Giordano, S.(2005). Respect for Equality and the Treatment of the Elderly: Declarations of Human Rights and Age-Based Rationing. *Cambridge Quarterly of Healthcare Ethics*. 14(1). pp. 83-92.

64) Doron, I. & Apter, I.(2010b). The Debate Around the Need for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Older Persons. *The Gerontologist*. 50(5). pp. 586-593.

65) Doron, I. & Werner, P.(2008). Facts on Law and Ageing Quiz: older people's knowledge of their legal rights. *Ageing and Society*. 28. pp. 1159-1174.

66) Lloyd-Sherlock, P.(2002). Formal Social Protection for Older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Three Different Approaches. *Journal of Social Policy*. 31(4). pp. 695-713.

67) Firbank(2001). 'Human rights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protection of older workers against discrimination: The case of the quebec human rights commission' .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12(3). pp. 65-85. doi:10.1300/J031v12n03_04.

68) Phelan, A. (2008). Elder abuse, ageism, human rights and citizenship: Implications

노인학대, 연령차별의 문제를 인권 및 시민권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면서 비록 평등과 인간존엄이 점차 강조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노력 내지 사회적 바람이 노인집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음을 제시하였다.

- Castle & Beach(2013)⁶⁹⁾의 연구에서는 미국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양상을 분석·연구하여 제시하였으며, Brennan 등(2007)의 연구⁷⁰⁾에서는 인권의 관점에서 노인에 대한 완화치료의 개념과 의미를 분석하였고, Yates-Bolton(2010)⁷¹⁾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자율성, 인간존엄 등을 훼손하는 노인요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에 주목하여 요양관리자의 노인인권관점과 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Hamm 등(2007)⁷²⁾은 노인인권의 관점에서 헬스케어의 문제점과 인권침해 위기 등을 제기하고, Kelly& Innes(2013)⁷³⁾는 치매노인요양치료에어 인권 및 시민권이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연구한 바 있다.

3) 소결

- 전술한 것과 같이 국제학계에서 노인인권이 구체적인 쟁점으로 다뤄졌다고 보긴 어렵다. 한편 연구동향의 경우, 노인인권의 개념, 노인인권보호 관련 국제기준, 그리고 개별국가에서 노인의 사회적 보호 외 인권관점에서 노인관련 서비스 유형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인권에 대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는 다소 미흡한 편이다.

for nursing discourse. *Nursing Inquiry*. 15(4). pp. 320-329.

doi:10.1111/j.1440-1800.2008.00423.x.

69) Castle, N., & Beach, S. (2013). Elder abuse in assisted living.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2(2). pp. 248-267. doi:10.1177/0733464811418094.

70) Brennan, F., Carr, D. B., & Cousins, M. (2007). Pain management: A fundamental human right. *Anesthesia and Analgesia*. 105(1). pp. 205-221.

doi:10.1213/01.ane.0000268145.52345.55.

71) Yates-Bolton, N. (2010). Human rights-based care for older people. *Nursing Management (Harrow, London, England : 1994)*. 17(4). pp. 26-27.

72) Hamm, D., English, V., Harrison, C., Mussell, R., Sheather, J., & Sommerville, A. (2007). The human rights of older people in healthcare. *Journal of Medical Ethics*. 33(12). pp. 743-744.

73) Kelly, F., & Innes, A. (2013). Human rights, citizenship and dementia care nursing. *International Journal of Older People Nursing*. 8(1). pp. 61-70.

doi:10.1111/j.1748-3743.2011.00308.x.

IV

ASEM 노인인권 이슈 및 쟁점

1. ASEM 국가의 고령화 및 노인인권 상황	51
2. ASEM 회원국 주요 노인인권 이슈	57
3. ASEM 노인인권이슈의 특징	73

I. ASEM 국가의 고령화 및 노인인권 상황

1) 고령화 전개 양상

- 2015년 기준으로 ASEM 회원국의 고령화 현황을 살펴보면 표 10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회원국 중 65세 노인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 국가는 23개국(59%)이며, 고령화사회(노인인구 7%이하)로 진입하지 않는 국가는 아시아 국가의 일부인 8개국(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불과하다.⁷⁴⁾
 - 2020년 65세 이상 인구 예상 지표는 ASEM 회원국 대다수가 고령화 사회가 될 것임을 나타내며, 5년 단위의 지표들을 비교했을 때, 그 증가폭이 점점 커지고 있어 고령화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 회원국들의 경우도 러시아, 슬로바키아,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2015년 기준 노인인구비율이 14% 이상으로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2020년에는 전 회원국이 고령사회가 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 표 10에서 2015년 기준,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26.4%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독일(21.5%), 이탈리아(21.7%), 그리스(20.2%), 핀란드(20.4%)순이며 이들 회원국은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020년에는 네덜란드, 몰타, 포르투갈, 프랑스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노령화 지수(ageing index, 老齡化指數)는 유소년층 인구(0~14세)에 대한 노년층 인구(65세 이상)의 비율⁷⁵⁾을 제시하는 것으로, 노령화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회에 고령인구가 많다는 의미한다. 이는 노인의 부양문제와 함께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잠재적 성장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비율과 노령화 지수가 낮은 국가들이 많은 편이나 2000년 이후 이들 국가들도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즉 ASEM 회원국이 전반적으로 고령사회화 되고 있는 것은 공통적인 흐름이라 하겠다.

74) KOSISDB에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국가로서 전체 회원국 가운데 3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함.

75) 노령화 지수 산출식: 65세 이상 인구수 ÷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수) × 100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는 노령화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며, 2020년의 경우 과반수의 아시아회원국에서 100이상을 넘게 됨을 알 수 있다.
- 2015년을 기준으로 노령화 지수를 살펴보면 30을 넘지 않은 국가는 아시아에서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해당했을 뿐, 그 외 대부분의 국가들의 노령화 지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 회원국 중에서는 2015년 수치를 기준으로 그리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이 매우 높은 노령화 지수를 보이고 있다.

〈표 10〉 ASEM 65세 이상 인구비중 및 노령화 지수 변화 추이

국가별	2000		2005		2010		2015		2020	
	65세 이상	노령화 지수								
그리스	16.9	110.9	18.6	129.0	19.0	130.8	20.2	137.8	21.5	147.1
네덜란드	13.6	73.1	14.0	76.1	15.4	88.2	18.1	107.5	20.1	125.2
뉴질랜드	11.8	51.8	12.0	55.8	13.0	63.5	14.7	73.0	16.2	81.8
대한민국	7.2	34.3	9.1	47.3	11.0	68.4	13.1	94.1	15.7	119.1
덴마크	14.9	80.5	15.2	80.9	16.7	92.8	18.6	107.7	19.9	116.5
독일	16.3	104.6	18.9	132.2	20.8	155.2	21.5	165.7	23.1	178.6
라트비아	15.0	84.2	17.2	116.1	18.4	129.8	18.6	119.9	18.9	113.5
러시아	12.4	68.2	13.8	91.0	13.1	87.8	13.2	80.2	14.8	85.0
루마니아	13.4	71.7	14.8	95.3	14.8	98.8	15.5	102.0	17.0	111.4
룩셈부르크	14.1	74.3	14.4	77.4	14.0	79.3	14.4	83.3	15.3	88.7
리투아니아	13.9	69.5	15.1	90.5	15.5	101.8	15.7	101.8	16.3	97.6
말레이시아	3.8	11.5	4.4	14.5	4.8	17.5	5.8	22.8	6.9	28.8
몰타	10.7	51.6	13.3	77.2	14.5	92.7	17.7	125.1	20.6	149.2
몽골	3.7	10.6	3.7	12.9	3.8	14.2	3.8	13.9	4.4	15.3
미얀마	4.7	15.4	4.9	17.5	5.1	19.5	5.4	22.4	6.5	28.6
베트남	6.4	20.3	6.6	24.2	6.5	27.8	6.8	30.3	8.2	38.5
벨기에	16.9	96.4	17.3	101.0	17.2	102.3	18.6	108.5	19.8	114.1
불가리아	16.6	105.8	17.4	127.5	18.3	137.7	19.9	142.0	21.1	144.8
브루나이	2.8	9.2	3.2	11.0	3.7	13.8	4.9	20.0	7.0	32.3
스페인	16.9	114.1	16.8	115.5	17.1	114.6	18.3	117.7	19.5	127.7
슬로바키아	11.4	57.7	11.7	69.7	12.3	81.4	13.6	89.6	16.2	103.1

국가별	2000		2005		2010		2015		2020	
	65세 이상	노령화 지수								
싱가포르	7.3	34.2	8.2	42.9	9.0	52.0	11.2	72.9	13.9	95.6
아일랜드	11.2	51.5	11.1	53.7	11.3	53.0	12.6	58.4	14.1	66.1
에스토니아	15.2	84.5	16.9	110.2	17.5	113.5	18.4	114.1	19.4	116.2
영국	15.8	83.2	16.0	89.1	16.6	94.5	18.1	102.6	18.9	105.5
오스트레일리아	12.4	59.7	12.9	65.4	13.5	71.0	15.0	78.1	16.4	84.2
오스트리아	15.5	90.9	16.1	100.2	17.8	120.9	18.7	129.2	19.6	134.2
이탈리아	18.3	127.5	19.6	139.3	20.3	144.5	21.7	155.0	22.8	164.9
인도	4.4	12.8	4.7	14.6	5.1	16.8	5.5	19.3	6.3	23.7
인도네시아	4.7	15.2	4.9	16.2	5.0	16.8	5.4	19.3	6.3	24.4
일본	17.2	117.5	19.9	143.8	23.0	172.8	26.4	205.2	28.6	226.5
중국	6.9	26.8	7.7	37.4	8.4	46.0	9.5	52.0	11.7	64.2
태국	6.6	27.2	7.7	34.5	8.9	45.9	10.4	59.8	13.0	82.6
포르투갈	16.2	100.3	17.1	109.8	18.0	118.9	19.4	134.1	21.0	158.1
폴란드	12.3	63.4	13.3	80.7	13.5	90.1	15.3	101.3	18.1	114.7
프랑스	16.0	84.6	16.4	88.8	16.8	91.6	18.7	103.5	20.4	113.7
핀란드	14.9	82.2	15.9	91.8	17.1	103.8	20.4	123.5	22.5	134.4
필리핀	3.2	8.4	3.4	9.2	3.7	10.5	4.1	12.2	4.9	15.4
헝가리	15.2	90.1	15.7	101.3	16.7	114.2	17.7	119.2	19.5	129.9

출처: KoreaNationalStatisticalOffice,KOSISDB.(http://www.kosis.kr/)

* 자료다운일자: 2015/04/20 15:03:27

2) ASEM 회원국 노인인권 상황

- 현재 국가별 노인 인권상황을 공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는 개발되어 있지 못한 실정인 바 ASEM 회원국의 노인인권 상황은 간접적 지표를 통해 가늠해 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노인인권 영역에서 중요하게 간주되는 건강, 우호적 환경, 역량, 노후 소득보장 영역이 포함된 Global AgeWatch Index(GAI)⁷⁶⁾ 결과를 살펴보는 한편, 소득, 건강보장, 고용, 사회적 지원, 지속가능성의 분야에서 국가별 고령화 대응양상을 평가한 고령화 대응지수⁷⁷⁾를

76) Global AgeWatch Index(GAI)는 UNFPA(유엔인구기금)의 지원으로 HelpAge International에서 개발한 지표로, 건강, 역량, 소득, 환경을 중심으로 국가간 상황을 엿 볼 수 있는 지표이다.

77) 고령화 대응지수는 2012년에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발된 지

통해 국가간 비교결과를 분석하여 아시아와 유럽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1) Global AgeWatch Index(GAI) 2014 평가결과로 보는 노인인권 상황

- Global AgeWatch Index 2014 보고서를 기준으로 ASEM 회원국 노인인권 상황을 가늠하기 위해 2014 GAI 순위(96개국) 중 ASEM 회원국만 별도로 추출하여 재분석한 결과를 보면 GAI를 구성하는 건강, 역량, 소득, 환경의 영역에서 유럽과 아시아 회원국의 개별 상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일본, 뉴질랜드, 호주가 4개 영역 모두에서 비교적 상황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 나머지 회원국은 전체 평가에서 중하위권에 속해 있었다.
- Global AgeWatch Index 2014 보고서에서 제시된 대륙별 지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⁷⁸⁾
 - 아시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도전들을 인지하고 고용부터 장기요양보호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급격한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중국은 건강 영역과 소득안정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정책 대응은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평가 결과는 경제 성장률과 노인인권상황이 꼭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가령 한국의 경우에 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과 연결되는 노인소득보장 정책 상황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이 나타났다. GAI 평가 결과를 통해 아시아 회원국에게 시사하는 점은 노인빈곤문제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만큼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국가적인 대응논의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 유럽 및 오세아니아의 경우는 북유럽 복지국가로 거론되고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이 4대 영역 모두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었다. 동유럽의 경우, 에스토니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중간정

표로 소득, 건강, 고용, 사회적 지원, 지속가능성이라는 5개 영역, 각 10개의 세부 기준에 가중치를 두어 합산한 결과로 OECD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발된 지표이다.

78) HelpAge International(2014). 『Global AgeWatch Index 2014 Insight report』, 2014. pp.18-21.

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구소련의 붕괴 이후 시작된 이 권역의 빠른 사회·경제적 변화는 현재의 노인 세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GAI 분석에서 시사하는 ASEM 회원국 노인인권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GAI 지수 기준 중하위권에는 폴란드를 비롯한 13개 유럽 회원국과 한국을 비롯한 13개 국가가 속해 있다. 비록 해당 국가들의 GDP, 고령화지수, 국가경쟁력 등은 상이하지만, 하위권을 차지하는 아시아·유럽 회원 국가들은 대체로 GAI 지표에 포함된 소득, 건강, 환경, 역량 등과 관련하여 열악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 수준 여부와 무관하여 유사·동일한 인권 이슈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만큼, 노인인권 의제의 공통적 발현을 예상할 수 있다.
 - 상위권 국가 집단그룹과 비교해 보면 아시아·유럽 회원국간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신흥경제개발국가(한국, 러시아, 중국, 인도)라고 할지라고 노인인권 분야만큼은 여명기적 상황에 고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밖의 내전(內戰) 및 저개발과 같은 정치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노인 뿐만 아닌 보편적 인권보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낙후된 것으로 여겨진다.

(2) 고령화 대응지수의 국가간 비교(2012)를 통한 노인인권 상황

- 고령화 대응지수의 국가별 비교에서는 22개국의 OECD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영역별 각 10개씩의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를 하여 국가간 비교 순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각 영역별 평가지표는 정책대응지표와 정책결과지표로 구분하여 각 지수의 국가간 비교 순위를 제시하고 있다.⁷⁹⁾
 - 고령화 대응지수의 하위 영역 지표는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후 각 영역별 값들을 합산한 총괄지수를 산출한 결과 1위는 아일랜드이고, 최하위가 한국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는 의료 영역과 지속가능성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고용 영역과 사회적 지원 영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 또한 중위권 국가들로는 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 영국, 미국, 벨기에 등으로 주로 동유럽 국가들이 소득과 의료영역이 비교적 높고, 하위권에 속한

79)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pp. 265-278.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남부 유럽 국가들과 일본의 경우 소득, 의료 및 사회적 지원 영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의 경우는 고용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에서 최하위권으로 평가되어 제시되었다.

○ 고령화 대응지수의 영역별 국가간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⁸⁰⁾

- 소득 영역의 지수 산출 결과 중부 유럽국가인 오스트리아, 프랑스,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이 중상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독일 등이 중위권을 보이고, 영국, 미국, 호주 등의 영미권 국가들, 그리스, 스페인 등 남부유럽 국가 그리고 일본, 한국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 건강보장 영역에서는 소득보장 영역과는 다르게 미국, 아일랜드, 호주, 영국을 포함한 영미권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북부, 중부 유럽 국가들이 중위권에, 남부 유럽 국가들이 일본과 함께 하위권으로 제시되었고, 우리나라는 중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 그리고 고용영역의 지수에서는 북부 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일본과 한국도 상위권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부 유럽 국가들과 영미권 국가들이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고, 동유럽 국가들과 남유럽 국가들이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 사회적 지원 지수에서는 호주가 가장 높고,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중부 유럽 국가들과 폴란드, 헝가리, 미국 등이 타 영역과는 다르게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 지속가능성 영역의 지수에서는 영미권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북부, 중부 유럽 국가들이 중상위권이었으며, 남부 유럽 국가들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낮고 한국은 중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령화 대응지수에서 제시된 정책대응지수의 평가 결과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의 국가들이 상위권에 속하고 벨기에, 독일, 영미권 국가들이 중위권에, 영국, 스페인, 그리스, 체코, 헝가리, 일본, 한국이 정책대응지수가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 또한, 정책결과지수 비교에서는 정책 대응 정도가 낮았던 체코가 상대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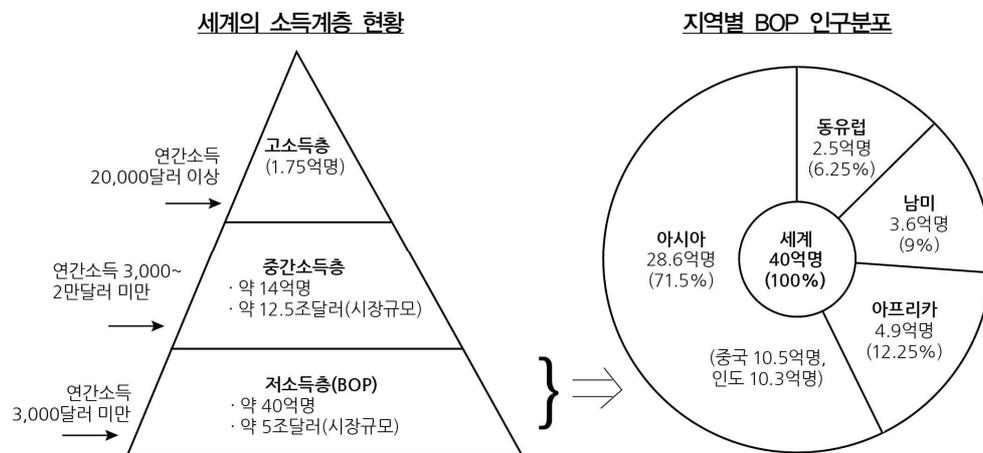
80) Ibid. pp.302-304.

로 높게 나타났고,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일본과 한국, 스페인은 정책대응지수와 정책 결과지수가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2. ASEM 회원국 주요 노인인권 이슈

1) 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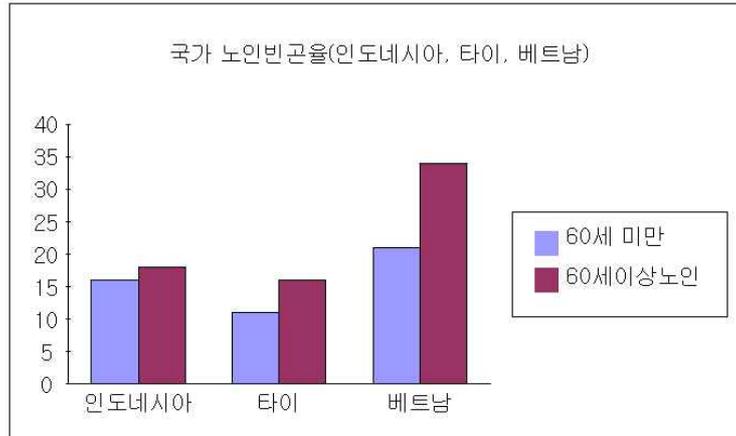
- 아시아 BOP 인구는 전체의 71.5%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중국·인도 BOP비중은 약 50%를 차지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 1억8500만 명에 이르는 60세 이상 노인 인구 중 22.9%가 절대빈곤 상태로서 BOP를 구성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48.6%인 바, 노인인구의 절반은 절대빈곤임을 알 수 있다.



주 : 조사대상은 110개국 55억 7,500만명. 소득경계는 2002년 구매력 평가(PPP)기준
 자료 : 『The Next 4 Billion』, IFC(국제금융공사) and WRI(세계자원연구소), 2007

[그림 2] 소득계층 및 BOP 인구 분포

- 좀 더 구체적인 노인빈곤 양상을 보면 아래와 같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의 경우 60세를 기준으로 60세 이상 연령집단, 즉 노인의 빈곤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국가별 빈곤율

- 스리랑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스리랑카의 연령과 빈곤관계는 “U자” 형태로 나타나는데, 유소년 및 청년에 이르는 세대에서는 빈곤율이 높지만 그 후 점차 감소해가다가 55세에서 64세 구간에 이르러 가장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65세 이상 연령으로 올라갈수록 빈곤율은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고령에 따른 노동시장의 은퇴는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80세 이상은 스리랑카 전체 인구집단 대비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빈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욱 극심해짐을 보여주고 있다.⁸¹⁾
- 중국의 경우 노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욱 빈곤해지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60세에서 69세 노인의 경우, 빈곤율은 19.9%였으나 70세에서 79세는 22.2%, 그리고 80세 이상은 25%로 빈곤율이 더욱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이 고령화 되어 갈수록 더욱 심각한 빈곤 상황에 노출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⁸²⁾
- 빈곤문제 해결 노력의 일환으로 태국에서는 60세 이상의 노인인구에게 보편적 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캄보디아에서는 사회보장전략이 도입되었으

81) Ghazy Mujahid, Joseph Pannirselvam, Brooks Doge(2008). The Impact of Social Pensions: Perceptions of Asian Older Persons. UNFPA. p. 7.

82) Barrintos, armando, M. Gorman, and A. Helsop(2003). “Old Age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contributions and dependence in later life” , World Development, vol. 31, No.3, pp. 555-575

며 중국에서는 새로운 연금제도 도입 등과 같은 사회적 보호체계가 구축된 적이 있다.⁸³⁾

- 그러나 노인절대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핵심업무 이행의 대표적 조치라고 볼 수 있는 ‘비기여공적연금제도’의 경우, 한국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도입 내지 시범(초기)단계에 속해 있는 등⁸⁴⁾, 절대빈곤해소를 위한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바, 기본소득보장을 위한 국가의무 이행이 시급하다.
- 한편 고령(화)에 대한 국가보호체계의 미흡 내지 부재로 인한 ‘노후난민’⁸⁵⁾ 발생과 같은 문제 양상들이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나타나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010년을 기준으로 일본 노인의 ‘고립사’의 급증과 더불어 처음으로 노후난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노후난민의 발생 배경은 초고령화사회, 무연사회(無緣社會), 무소득(저소득) 노인인구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⁸⁶⁾
 - 노후난민화는 고령화·저성장·저인플레이션에 직면한 한국, 중국에서도 유사·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파키스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과 같은 아시아 저개발·고령화국가에도 순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 일본 등 아시아에서 발생한 노후난민 문제는 ‘경제적 빈곤’ 문제와 구별되는 또 다른 노인인권 쟁점인 바, 노후난민의 예방과 이들의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조치가 시급하게 논의·마련되어야 한다.
- 유럽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개발국가가 좀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 회원국의 특성상, 사회기반시설 부족에 의한 노인집단의 기본권 침해 및 생존권 위험현상이 높게 드러나고 있다.

83)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and HelpAge International(2012). “Ageing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Celebration and A Challenge” pp. 125-127.

84) HelpAge International(2014). Global AgeWatch Index 2014 Insight report(Korean). pp. 9-11.

85) 노후 난민화란 노인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기본적 생계에 곤란을 겪거나, 가족·사회에서 소외·배제되어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함. 특히 노후 난민은 사회적 단절과 같은 비재무적(비경제적) 요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빈곤노인과는 구별됨.

86) 강성호·류건식(2014). ‘노후 난민화 가능성 검토와 향후 과제’ . 『KIRI Weekly』. 328. pp.1-10.

- 이는 특히 아시아 저개발 국가가 직면한 사안으로서, 식수, 도로 등 기본적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노인 생존권 위기 및 재해 피해노인 집단의 증가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파키스탄은 2010년~2011년간 홍수 피해로 2010년 60세 이상 노인 8만 명 중 약 3만 명이 피해를 입고, 2011년 노인 7만 명 중 1만 명 이상 수해를 당하는 등 자연재해피해 노인집단이 나타났다. 낙후된 사회기반시설로 인해 복구조치는 매우 미흡하다. 이로 인해 피해노인들은 주거, 건강, 보건, 의료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는 일할 권리의 측면에서 아시아, 유럽 국가 모두 관심을 두는 사안이다. 우선 지역, 성별, 연령별로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면, 연령과 노동시장 참여, 성별에 따른 차이, 국가의 사회·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2008년 노인 노동시장 참여율 (지역, 성별, 연령별 비교)

Region	Age group					
	25-54		54-64		65+	
	Men	Women	Men	Women	Men	Women
World	95	67	74	40	30	12
More developed regions	92	78	65	46	15	8
Less developed regions	96	64	77	38	37	14
Africa	95	63	84	51	53	28
Asia	96	64	76	37	34	11
Europe	91	80	58	39	9	5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94	64	78	40	47	19
Northern America	91	76	70	59	21	13
Oceania	90	75	70	53	18	8

자료: International Labour Offic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stimates and Projections (LABORSTA database, 5th ed., 2009 revision) and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재인용: UN(2011: 17)

- 위 표 11에서와 같이 아시아 지역은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인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높은 편인데, 이는 퇴직 후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수준, 조기 퇴직에 의한 재취업 현상,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및 인식수준 등에 의한 차이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다는 현상만으로는 이를 문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보장체계 미비 내지 저발달로 인해 노인이 된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잔류하여 가처분 소득을 좀 더 확보하여야만 하는 사회적 상황이 아시아 지역 절대빈곤노인의 쏠림 현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노인 노동시장 참여는 유럽과 다른 점이 나타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아시아 주요 국가별 노인 노동시장 참여 및 고용 정책과 이슈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일본의 고령자고용정책은 중앙정부인 후생노동성과 고령·장애인고용 지원기구를 중심으로 기업지원금을 통해 주로 기업의 정년연장, 계속고용, 재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⁸⁷⁾ 주로 고령자의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한 65세까지의 고용보장, 중고령자의 재취직 지원 및 촉진, 고령자의 다양한 취업·사회참가 촉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후생노동성이 관장하는 고령·장애자고용지원기구, 지역중심의 실버인재센터 등을 중심으로 고령자고용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고령·장애자고용지원기구에서는 기업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령자고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실버인재센터는 다양한 취업,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 중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한국은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에서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고령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촉진프로그램으로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다수고용장려금,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⁸⁸⁾ 한국의 고령자들은 연령차별에 의한 일률적이고 비자발적인 퇴출과 노동시장 재진입의 어려움, 제한된 직종과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을 선택하게 되는 불리한 계층이며, 생산성과 능력중심주의가 만연됨에 따라 연령차별이 노동시장에서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

87) 나영선 외(2010). ‘고령자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실태조사 및 향후 개편방안’. 고용노동부 수탁연구용역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p. 70-72.

88) Ibid. p10-16.

다.⁸⁹⁾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 고용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일자리 소개에 그치고 있어 고령층이 근로빈곤층에 머물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기퇴직제도 및 일시적 인력구조 조정과 같은 소극적 대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고령자 고용형태는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 위주의 저임금·비연속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호주의 고령자 고용관련 연방정부의 정책들은 노동시장 유연화(Labour Market Flexibility)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연금 일시불(Lump Sums) 지급 제한과 일정 수입에 대한 세금 감면 그리고 고용관련 연령차별(Age Discrimination) 금지 등을 들 수 있으며, 사용자들이 노동자를 고용할 때 연령을 차별을 금지해서 경력이 풍부한 고령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남게 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화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⁹⁰⁾ 또한 1996년 강제퇴직연령에 대한 법적인 제한을 가한 후 1999년에 완전 폐지하였고 2004년에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ADA: Age Discrimination Act)을 제정하여 노인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 유교적이면서 가부장적 가치가 지배적인 아시아지역의 특성상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체로 노인학대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표면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심각한 쟁점이다. 또한 노인학대에 대한 관점조차 상이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부양의 사회화’에 초점을 둔 접근보다는 가족중심 부양 가치를 더욱 강조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 주요 국가별로 구체적인 상황과 쟁점을 살펴보면 중국은 2007년 중국 난징의 주요도시 의료센터 4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45명(35%)이 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69세이며 59%가 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은 방임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경제적 착취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그리고 유기가 뒤를 이었다. 여성노인, 저학력, 그리고 낮은 수입이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⁹¹⁾ 가족의 돌봄과 학대예방 등을 위해 1995년에 제정된 노인권익보장법은 최근 제

89) 김주현 외(2011). ‘국제법상에 나타난 보편적 인권규정과 노인인권’. 『법과사회』. 40, pp. 267-268.

90) 신준식(2004). ‘호주 고령자고용정책에 대한 입장과 전망’. 『국제노동브리프』. pp. 21-25.

91) XinQi Dong, Melissa A. Simon & Martin Gorbien(2007). Elder Abuse and Neglect in an urban Chinese population.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9(3/4), pp. 79-96.

18조 제2항에서 ‘노인과 분가해서 사는 가족구성원은 자주 집을 찾아 가거나 노인의 안부를 물어야 한다.’ 는 규정을 삽입하였으며, 최근 나이든 부모를 자주 방문하지 않거나 학대하면 벌금을 물거나 구속하는 등의 처벌이 강화된 ‘노인권리법’ 도 제정된 바 있다. 이는 도시화가 확대되면서 중국정부가 부모를 방치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련한 조치로서 가족중심접근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⁹²⁾

- 인도는 최근 노인학대와 폭력을 둘러싼 문제인식이 나타나면서, 그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주력하는 양상이다. 문제 양상을 보면 2005년 인도 첸타이의 65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4%가 노인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성적인 언어적 학대가 가장 많았고 경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방임은 비슷한 비율이었고, 정확하게 반 이상이 중복 학대를 경험했으며, 경제적 학대를 제외하고 여성들이 더 많은 폭력과 학대, 방임을 경험했다. 성인자녀, 며느리, 배우자, 사위 순이며, 피해노인은 삶의 만족도가 적고 우울감이 높았다. 성별, 사회적지지, 주관적인 신체적 건강 등이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제시되었다.⁹³⁾ 유의할 점으로는 인도의 노인학대 및 방임 이슈는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정책논의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다. 다만 학계와 관련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노인학대와 방임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보아야 한다는 인식들이 모아지기 시작하고 있다.⁹⁴⁾
- 한국의 경우,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은 1990년에 학문적 관심을 시작으로, 2000년 노인학대 상담기관 서비스가 민간차원에서 실시되었고, 그 후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국가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의무화하여 노인학대 사례 신고 접수 및 사례관리,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⁹⁵⁾ 즉 전술한 인도, 중국에 비교해볼 때 노인학대 및 폭력예방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좀 더 활발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2) <http://www.todayus.com/?p=72059>

93) Srinivasan Chokkanathan, Alex E. Y. Lee(2005). Elder Mistreatment in Urban India: A Community Based Study,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7(2), pp. 45-61.

94) Jyotsna M. Kalavar, Duvvuru Jamuna & Farida Kassim Ejaz(2013). Elder Abuse in India: Extrapolating From the Experiences of Seniors in India's "Pay And Stay" Homes.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5(1), pp. 3-18.

95) 권금주(2007). ‘며느리에 의한 노인학대 과정에 관한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년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2014. 10. 29)’ 을 국회 사회 보장위원회가 제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재발방지 등을 위한 노력’, ‘시설 내 학대 예방강화’ 등이다.

- 일본은 노인학대 및 폭력문제를 노인권리보장의 면에서 접근하는 양상이다. 2000년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2004년 3월 ‘의료경제연구기구’ 가 후생노동성의 보조금으로 실시한 ‘가정 내 고령자 학대에 관한 조사’ 를 실시하였다.⁹⁶⁾ 그 후 2006년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간병지원법,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원활한 운송법, 노인고용안정관련법이 제정되었다. 한편, 헌법에 명시된 정보공개법 역시 공공요양기관의 노인학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데 일조하고 있는데, 불만을 접수할 수 있는 전국적인 옴부즈맨 기관이 있고 몇몇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세금과 같은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지역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실행해오고 있다.

2) 유럽

- 유럽은 아시아에 비해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일찍 겪었는데, 동유럽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고령인구비율 14%를 초과하였다. EU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약 8,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4%에 해당되고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한 국가들은 2015년 기준으로 그리스,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이며, 2020년에는 네덜란드, 몰타, 포르투갈, 프랑스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어 EU 회원국들은 머지않아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⁹⁷⁾
- 유럽 역시 노인인권이슈 가운데 노인빈곤문제는 해결을 바라는 과제에 해당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소득연구(LIS)의 가구소득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표 12 참조), 벨기에, 핀란드,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국가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노인 빈곤율은 전체인구 빈곤율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96) 박수천(2005). 노인 인권 보호의 세계 동향과 성년후견인제 도입방안, 한국노인복지학회, 2005년 추계학술대회, pp. 11-34.

97) Eurostat,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 A Statistical Portrait of the European Union 2012.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11), p. 7. ; KoreaNationalStatisticalOffice,KOSISDB. <http://www.kosis.kr>

〈표 12〉 노인빈곤율 유럽국가 비교

국가	연도	노인인구			아동인구			전체인구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40%	50%	60%	40%	50%	60%	40%	50%	60%
호주	1981	5.10	24.74	50.17	7.23	13.64	19.98	5.15	11.29	18.27
	1985	3.66	24.33	48.94	7.90	14.01	20.61	5.28	11.76	19.64
	1989	5.61	24.24	46.15	9.26	14.97	21.05	6.03	12.17	18.99
	1995	4.40	21.84	44.16	6.46	13.09	22.30	4.83	11.37	20.64
	2001	4.73	23.02	46.69	6.70	14.94	22.98	5.53	13.01	21.58
	2003	5.76	22.30	44.91	6.89	13.96	22.06	5.41	12.19	20.37
오스트리아	1987	6.84	18.51	30.14	2.61	4.83	9.77	2.80	6.65	11.74
	1994	5.25	11.88	22.32	4.75	9.76	16.71	4.61	8.69	14.74
	1995	6.88	10.32	22.64	10.63	15.04	22.31	7.37	10.60	17.05
	1997	3.29	10.41	22.66	6.56	10.22	17.28	4.44	8.03	14.23
	2000	5.77	13.59	21.44	3.80	7.79	15.88	3.64	7.74	13.43
	2004	1.98	9.36	17.82	3.59	6.82	15.36	3.44	7.07	13.40
벨기에	1985	4.27	10.93	21.26	1.48	3.51	10.04	2.03	4.46	10.52
	1988	4.29	9.75	24.50	1.32	3.56	10.56	1.88	4.56	11.37
	1992	4.09	12.14	24.57	1.52	4.43	9.51	1.80	5.14	10.38
	1995	6.35	17.19	31.30	2.44	8.18	15.03	3.00	8.74	16.18
	1997	3.70	11.72	22.68	3.20	7.68	13.72	3.29	7.98	14.41
	2000	5.82	15.44	35.87	3.50	7.21	12.66	3.67	8.08	16.12
캐나다	1971	16.86	36.91	51.81	10.84	16.56	22.98	10.36	16.12	22.16
	1975	20.79	34.73	48.49	9.14	14.42	20.45	8.89	13.93	19.63
	1981	6.72	22.05	39.32	9.62	14.76	21.41	7.49	12.42	18.93
	1987	3.50	10.92	24.81	8.77	13.91	20.11	6.85	11.36	17.47
	1991	1.31	5.83	19.41	8.04	13.99	19.43	6.30	10.96	16.63
	1994	1.21	4.93	17.37	8.67	15.46	22.31	6.48	11.26	17.59
	1997	1.36	5.35	17.35	9.63	15.71	23.11	7.35	11.92	18.39
	1998	1.65	6.16	18.90	9.28	16.24	23.83	7.96	12.94	19.76
	2000	1.41	5.40	16.17	8.22	15.60	23.92	7.24	12.37	18.89
	2004	1.42	6.27	17.58	9.74	16.87	25.41	7.71	12.98	19.89
2007	1.23	8.28	20.73	7.33	15.00	22.69	6.48	11.94	18.73	

국가	연도	노인인구			아동인구			전체인구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40%	50%	60%	40%	50%	60%	40%	50%	60%
덴마크	1987	4.93	31.83	56.23	3.22	5.21	9.46	3.98	10.09	17.35
	1992	3.63	11.00	35.71	2.80	5.42	11.00	3.76	7.16	14.64
	1995	0.61	11.37	35.18	1.28	2.72	7.80	1.85	5.17	12.02
	2000	0.78	12.06	36.90	1.16	2.76	8.91	1.98	5.39	13.06
	2004	1.06	8.49	31.16	1.51	3.87	10.49	2.35	5.59	13.20
핀란드	1987	2.90	12.06	31.92	1.65	3.22	6.83	2.31	5.14	10.71
	1991	3.43	14.12	30.58	1.50	2.77	5.87	2.46	5.51	10.69
	1995	0.84	5.55	18.45	0.61	2.00	4.49	1.67	4.12	9.14
	2000	1.15	8.82	25.78	1.44	3.03	8.56	2.16	5.47	12.69
	2004	2.96	10.32	25.87	1.49	4.01	10.18	2.52	6.62	13.68
프랑스	1979	1.66	10.28	23.98	3.79	7.22	13.58	4.20	8.15	14.51
	1981	-	-	-	4.32	6.90	13.16	4.74	7.28	13.42
	1984	1.43	4.79	11.56	3.71	6.56	13.32	4.15	7.38	13.10
	1989	7.20	14.74	25.55	3.92	8.27	15.48	4.83	8.94	15.49
	1994	3.41	9.70	18.30	2.93	7.97	14.30	3.36	7.99	14.08
	2000	3.03	8.47	16.19	2.72	8.06	16.02	2.84	7.33	13.75
독일	1973	10.32	18.78	29.38	1.63	3.67	8.63	3.59	6.75	12.23
	1978	7.80	17.41	29.40	1.24	2.94	7.04	2.72	6.02	11.34
	1981	7.72	14.36	25.72	0.81	2.77	8.11	2.57	5.30	10.58
	1983	6.26	14.49	25.95	1.53	4.45	10.30	2.37	5.83	11.69
	1984	6.51	14.12	25.67	3.53	7.78	15.45	3.76	7.75	14.25
	1989	4.91	10.42	21.60	1.90	4.41	12.37	3.02	5.62	11.78
	1994	3.82	8.77	16.99	5.25	9.21	15.04	3.99	7.72	13.13
	2000	3.68	10.00	17.94	4.98	8.36	13.99	4.06	7.63	12.74
	2004	2.66	8.62	15.98	5.39	10.90	17.89	3.87	8.52	14.34
	2007	3.64	9.01	17.87	4.04	9.32	17.04	3.89	8.38	14.63
이탈리아	1986	5.15	13.30	22.13	6.31	11.14	18.56	5.52	10.46	17.42
	1987	6.07	12.64	22.77	8.85	13.47	22.70	6.75	11.12	19.25
	1989	6.01	15.02	25.45	5.04	11.09	21.18	4.35	9.65	17.47
	1991	5.51	15.72	27.45	6.08	14.00	25.50	4.54	10.42	19.06
	1993	5.15	13.83	24.38	12.53	19.87	28.82	8.18	13.96	21.89

국가	연도	노인인구			아동인구			전체인구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40%	50%	60%	40%	50%	60%	40%	50%	60%
이탈리아	1995	4.56	14.54	23.27	13.37	19.07	27.72	8.49	14.12	21.15
	1998	7.02	15.96	24.21	12.27	18.55	26.87	8.37	14.24	20.76
	2000	6.12	14.37	22.94	10.53	16.31	26.29	7.48	12.71	20.03
	2004	5.05	11.20	21.63	10.48	18.26	29.52	6.92	12.04	20.08
룩셈부르크	1985	1.44	9.94	18.22	1.30	4.23	12.67	1.17	4.30	10.56
	1991	2.64	11.81	23.06	0.64	4.98	15.92	0.79	4.52	12.19
	1994	0.92	6.87	13.43	2.24	4.11	14.06	1.31	3.74	10.42
	1997	0.67	5.78	11.77	2.80	9.73	20.51	1.90	6.21	13.16
	2000	1.13	3.67	10.50	2.15	8.98	18.26	1.38	5.88	12.34
	2004	0.98	4.74	10.20	4.99	13.49	19.61	3.29	8.88	13.77
네덜란드	1983	2.93	5.53	13.64	2.88	4.19	7.21	4.02	6.26	10.25
	1987	0.16	1.05	7.79	1.23	2.20	6.69	2.21	3.89	8.31
	1990	2.19	3.22	19.45	4.92	8.23	13.89	3.82	8.88	12.20
	1993	3.32	6.44	21.37	4.87	8.13	12.89	4.90	8.07	13.71
	1999	0.36	1.61	15.03	2.90	6.32	12.19	2.45	4.91	11.06
	2004	0.96	2.45	8.18	4.87	9.15	15.48	3.71	6.34	11.77
노르웨이	1979	4.00	6.27	31.98	2.10	4.89	9.11	2.65	4.97	12.09
	1986	1.72	21.80	38.80	2.77	4.46	8.30	2.40	7.25	12.81
	1991	0.88	14.01	29.40	1.94	5.25	10.11	2.31	6.44	12.14
	1995	0.45	0.76	1.64	2.78	6.18	14.74	3.55	6.11	11.54
	2000	1.30	12.19	28.89	1.94	3.70	7.80	2.97	6.45	12.28
	2004	0.88	8.47	22.96	2.59	5.26	10.30	3.72	7.07	12.77
스웨덴	1967	6.26	15.92	33.05	4.69	6.39	9.05	6.42	10.64	15.98
	1975	1.42	13.91	34.98	0.98	2.29	4.89	2.77	6.48	12.55
	1981	0.11	2.89	11.34	2.33	4.80	7.69	3.01	5.32	9.13
	1987	1.11	8.44	21.39	1.65	3.07	5.36	3.70	6.70	11.52
	1992	1.47	6.44	19.81	1.59	3.02	6.23	4.14	6.67	12.09
	1995	0.79	2.71	7.78	1.33	2.62	5.50	4.69	6.58	10.02
	2000	2.20	8.01	21.42	1.77	4.25	9.16	3.80	6.61	12.29
	2005	1.52	6.61	20.59	2.02	4.72	10.97	2.64	6.00	11.97

자료: 김경아(2012: 9~10)

- 전술한 아시아 상황과 비교해보면, 절대빈곤 노인인구는 유럽에 비해 아시아 지역에 좀 더 몰려있는 있다고 하더라도, 유럽 국가 역시 노인의 빈곤양상은 비노인집단에 비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유럽을 중심으로 빈곤상황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유럽이라고 하더라도, 빈곤노인의 생존권은 여전히 취약함을 알 수 있다.
- 주거와 고령친화적 환경구축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아시아에 비해 유럽에서 좀 더 활발한 편이다. 유럽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거의 사회성’을 강조하면서 사회권과 역량의 관점에서 주거정책을 계획, 실시하는 특징이 있다.⁹⁸⁾ 그 선두에는 스웨덴, 덴마크, 포르투갈, 벨기에,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의 발전된 유럽국가가 자리한다.
 - 그러나 이처럼 상당수 유럽국가 노인들은 자기 소유의 주택에서 비교적 적절한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남유럽 일부 국가 및 EU 신흥가입국가의 경우, 주거상황과 환경이 적절하지 못한 상황인 점인 점은 주지하여야 한다.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들 국가 노인들은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수선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유지보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노후된 주택환경을 개선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⁹⁹⁾
- 한편 유럽 국가들은 MIPAA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노인학대·방임 예방을 위한 정책적 준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2011년 발간된 ‘European Report on Preventing Elder Maltreatment’ 와 ‘The European Reference Framework Online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and Neglect’ 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두 보고서는 노인학대 대응관련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정책 제언을 하였다. 특히 노인학대를 국가적 차원에서 이해하여, 위험집단에 예방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노인학대 발견 시 적절한 개입과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등 노인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¹⁰⁰⁾ 이 외에도 전술한 유럽평의회 2014년 권고

98)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2006). First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Social Dimensions of Housing. pp. 16-18.

99) UN(2011). Current Status of the Social Situation, Well-Being, Participation in Development and Rights of Older Persons Worldwide. p.12.

안에서도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를 과제내용이 채택되어 각 나라의 정책 사례가 소개된 바 있다.¹⁰¹⁾

-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노르웨이는 노인보호서비스(Elder Protective Service: EPS)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목적은 ① 학대를 경험한 노인이 가족과 접촉하여 이를 예방하고 ②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식을 제고하며 ③ 학대에 관한 전문기술을 개선·보급하고 ④ 공공과 민간기관간의 제휴를 강화하며 ⑤ 학대대상자를 익명으로 등록하여 관련지식을 축적하는 역할을 하는데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는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폭력에 관한 정보·연구의 노르웨이자료센터」를 1996년 오슬로대학에 설립하고, 폭력·학대·피해자와 관련된 의료·요양·수발인을 대상으로 기초 및 고등교육을 시키는 것을 통해 학대징후를 조기에 확인하고 예방하는 ‘폭력예방행동프로그램’ 을 시행하고 있다.
- 유럽 회원국의 노인인구 증가와 고령화 현상은 장기요양 및 만성질환과 관련된 인권 쟁점들을 만들고 있다.
 -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의 경우 가족 돌봄 기능의 약화와 국가요양비용의 급증현상과 맞물려 자국에서 요양 등의 필수처치를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의 비자발적 국외 이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럽요양병원 서비스 질 저하와 고령부모 및 장년자녀 돌봄의 문제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중장년 세대의 경제적 부담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 독일에서는 요양시설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노인인구는 약 40만 명에 달하며 이 수는 연간 5%씩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1년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한 독일 노인은 7,146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주 국가는 헝가리와 체코 슬로바키아 등 유럽뿐만 아니라, 태국과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 국가에까지 이르고 있는 추세이다. 독일 정부는 치매나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 매달 200여만 원을 지급하지만 실제 한 달 요양비용은 500만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독일의 요양시설 비용의 3분의1에 불과한 동남아시아나 동유

100) 의협신문(2014. 08. 18). 노인학대 국제사회의 대응노력

101) Council of Europe. 2014. ‘Recommendation CM/Rec(2014)2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https://wcd.coe.int/ViewDoc.jsp?id=2162283&Site=COE&BackColorInternet=C3C3C3&BackColorIntranet=EDB021&BackColorLogged=F5D383>).

렵으로 비자발적 요양이주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할머니 수출’ 이라고 부르며 ‘후진국에 쓰레기 처리를 맡기듯 노인과 장애인을 해외로 내보내고 있다.’ 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¹⁰²⁾

- 모국에서 생존에 필요한 요양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국외이주요양을 비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것은 기본적인 국가 의무의 해태일 뿐만 아니라, 고령·중증노인 등 생산성 저하집단의 ‘강제추방’ 이라는 몰인권적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고령·중증질환 노인에 대한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에서의 장기요양보호체계 재편 논의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3) 관점의 변화: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

- 2000년대 이후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 긍정적 노화 (positive aging),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등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용어의 의미와 등장배경은 다소 상이하지만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며 길어진 노후를 생산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려는 점은 공통적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유럽연합(EU)에서 2012년을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 이하 액티브에이징)의 해로 선포한 것을 계기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접근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로 이어지는 추세이다.
 - 나아가 EU회원 국가들은 액티브에이징을 경제 및 사회정책에 있어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사회 내에서 고령자들의 권리와 욕구를 통합하는 것으로 결의하여 이를 촉진시키고 있다.¹⁰³⁾
 - 액티브에이징의 바탕에는 유럽인권헌장(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이 자리하고 있다. 유럽인권헌장 제21조(차별금지) 및 제25조(노인의 권리)는 액티브에이징과 가장 분명하게 연결된 지점이다. 뿐만 아니라 헌장은 사회보장, 보건의료 등과 같은 액티브에이징의 목적과 관련된 권리 역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액티브에이징을 이루는 기초이다.¹⁰⁴⁾

102)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3). 「글로벌보건산업동향」. 77. p. 6.

103) 선우덕·김세진·모선희(2012).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 유럽국가의 활기찬 노후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5.

104) European Commission(2012). ‘The EU contribution to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 . p.5.

- 액티브에이징 정책의 구성이론은 건강한 노년, 성공적 노년, 긍정적 노년, 고령친화환경, 자신이 살아온 환경 유지, 생애주기관점, 젠더와 문화, 세대 간 교류, 인권 등 9가지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인권은 모든 정책과 실천이 전 인류의 인권을 보장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구성인자로 강조되고 있다.¹⁰⁵⁾
-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접근방식은 고령자의 인권(human right)과 노인을 위한 UN원칙에 기초한다. 전략적 계획으로는 수동적 차원의 욕구기반한(needs-based) 접근에서 벗어나 권리기반(rights-based) 접근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¹⁰⁶⁾
- 요컨대 액티브에이징은 노인에 대한 ‘인권’ 중심 관점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접근방식이 취약한 노인을 위한 보호 등에 주목하여 노인을 객체화하였다면, 액티브에이징은 모든 노인의 인권적인 삶이 무엇인지 노인의 입장에서 주체화하는 것을 강조한 바, 노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접근하려는 인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유럽

- 현재 액티브에이징 정책은 유럽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2012년을 ‘활기찬 노후와 세대간 유대를 위한 해’ 로 선언하고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위기를 액티브에이징 관점에서 정책 재설계를 시도하였다. 유럽은 WHO에서 제안한 액티브에이징의 기본개념인 사회참여, 건강증진, 안전 외에도 교육을 첨가하여 4개의 중심축을 액티브에이징 정책의 요소로 삼았으며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와 유럽경제위원회(UN ECE)에서는 액티브에이징 지수를 개발한 바 있다¹⁰⁷⁾. 주요 영역은 고용, 사회참여, 독립과 건강 그리고 안전한 삶, 액티브에이징을 위한 환경구축의 가능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EU 국가들의 액티브에이징 정책을 지수로 측정하고, EU국가들의 노력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 국가간 노인인

105) 한동희(2014). ‘고령사회와 액티브에이징 고찰연구’, 『노인복지연구』. vol. 64. pp. 35-37. 참고

106) 선우덕·김세진·모선희(2012).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국가의 활기찬 노후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8.

107) <http://www1.unece.org/stat/platform/display/AAI/Active+Aging+Index+>

권상향과 정책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액티브에이징 지수는 아시아 및 유럽에 적용할 수 있는 노인인권지수 개발에 있어서 유의미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이다.

(2) 아시아

- 아시아 지역의 액티브에이징은 아시아태평양 액티브에이징 컨소시엄(Active Aging Consortium for Asia Pacific : ACAP)을 주축으로 시도되고 있다. ACAP은 일본 국제기금의 후원으로 2005년에 설립되었는데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몽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네팔,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액티브에이징과 관련된 정책과 실천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왔다. 그간 주요 아젠다로 다루었던 내용을 보면 2005년 3월에 새로운 지역사회발전: 고령화를 위한 교류와 준비(New Community Development : Responding and Preparing for Aging Society)를 시작으로, 2006년 제2회 액티브에이징: 최고의 실천방향(Active Aging Asia Pacific: Showcasing Best Practices)이 다뤄졌다. 제3회는 한국에서 개최되었는데 고령사회 재설계프로그램과 환경(Re-Designing Program and Environment for Aged Society)을 주제로 실시되었다. 제4회는 2008년에 중국에서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The Development of Old Age Programs)을 주제로 개최되었고 제5회는 2010년, 일본에서 모든 세대의 사랑과 동맹(With Love and Reliance for All Generation)을 주제로 열린 바 있다. 그 후 인구고령화: 기회와 도전(2011년), 진화: 총체적 고령화와 고령사회의 변화 (Evolution: Holistic Aging an Aged of Change, 2012년), 국민항노화 발전방향(Anti-Aging toward Citizen, 2013년), 아시아지역의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in Asia Pacific, 2014년)와 같은 주제들이 차례로 다뤄진 바 있다. 즉 아시아지역이 다루었던 주제들은 전술한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이슈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바, 기존 노인인권과 관련된 쟁점을 액티브에이징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 접근할 것인지를 활발하게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

3. ASEM 노인인권이슈의 특징

- 전술한 아시아와 유럽의 노인인권 관련 이슈와 정책동향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 첫째, 아시아 및 유럽 지역 국가 모두, 노인빈곤 문제는 해결을 바라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빈곤노인은 고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절대빈곤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은 분석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었다. 따라서 ASEM 국가별 최소핵심 의무 차원에서 노인빈곤문제를 인식하고 이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발과 시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둘째, 농촌에 비해 도시지역이 주거환경 및 기본적인 서비스로의 접근성 면에서 좀 더 우월하다는 점이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노인들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바, 이는 ‘농촌의 노화’ 라는 공통현상이다. 그러나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와 자원배분의 문제에서 농촌은 소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은 노화와 배제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물론 사회안전망이 잘 발달된 북유럽 일부 국가들은 다소 예외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농촌지역 노인의 생활환경은 보건의료, 사회문화, 여가, 참여 등의 면에서 취약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개별국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바, 특히 아시아 다수 저개발국가의 경우 인구의 공간적 분포와 사회보호체계의 공간적 분포의 부조화가 높게 나타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접근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 셋째, 특히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는 국가의 경제상황, 은퇴 관련 정책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건강 상황, 역량조건, 낙인(스티그마)과 관련된 사항 역시 노동시장 참여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었다.¹⁰⁸⁾
 - 넷째, 주거형태와 지역사회 환경에서의 인권적 쟁점이 등장하고 있다. 유럽은 1990년대 초부터 노인을 둘러싼 ‘환경’ 과 ‘주거’ 의 문제를 권리적 관점에서 정책으로 적용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의 정책이 채택되는 등 비교적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¹⁰⁹⁾. 아시아는 주거권 내지 연령친화적 환경 조성 논의의 초기단계 내지

108) UN(2011). Current Status of the Social Situation, Well-Being, Participation in Development and Rights of Older Persons Worldwide. pp.17-18.

시험단계에 해당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주거와 사회 환경은 노인 당사자의 생활에서의 편익뿐만 아니라 사회참여,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에 이르기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점에서 아시아, 유럽 국가 모두 연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인 당사자 및 정부 모두의 욕구가 나타나는 바, 지역사회접근성, 주택설계, 편의장치 제공 여부 등의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¹⁰⁾

- 다섯째,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의 증가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국가에 대해 노인의 건강권 보장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노인들은 지역사회 및 재가 중심 요양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각 국은 이러한 욕구를 권리로서 인식하고 개별 노인이 이러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 아시아, 유럽에서 모두 노인폭력과 학대라는 최악의 권리침해를 경험한 노인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노인폭력과 학대는 노인권리의 심각한 침해의 결과인 만큼 국가는 노인폭력과 학대 사례에 대해 가능한 조기에 즉각적으로 개입할 뿐 아니라, 노인폭력 및 학대 사례를 예방하는 노력을 의무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이에 노인폭력과 학대 문제에 대해 노인인권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 아울러 논의된 인권이슈에 대한 접근양상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EU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은 ‘고령화는 위기이기도 하면서 기회이기도 하다’ 는 인식을 공유하는 특징이 드러났다.¹¹¹⁾ 더불어 국가 및 유럽연합 차원에서 MIPAA의 제안을 기반으로 노인인권 향상을 위한 적극적 대응 및 성과를 세워 사회·경제발전의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개별 국가만이 아니라 유럽지역 전체가 노인인권에 기반한 사회경제, 정치적 환경 대응과 향

109) 1990년대 유럽 및 미국, 캐나다 등 각국의 노인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에 관련된 정책동향과 구체적인 사례는 “United Nations Centre for Human Settlements (1993)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and Disabled People in Human Settlements—Volume I: A Resource Book of Policy and Programmes from around the World.”의 pp. 17-54. 참고

110)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WHO Press.

111)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and HelpAge International.(2012). “Ageing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Celebration and A Challenge” . p. 117.

후과제를 연대, 공유하려는 노력이 특징적이다.¹¹²⁾

- 아시아 국가들은 개별 국가단위로 나타나고 있는 노인인권의 쟁점을 해결하는데 좀 더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가별 양상을 보면 사회적 안전망 부족으로 고령자들이 소득의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국가(태국, 캄보디아, 중국 등)들에서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 구축을 가시화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리고 동북아국가들(중국, 한국, 일본, 몽골)에서는 장기요양보호를 제공하는 인력이 가족에서 지역으로 변화함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안전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¹¹³⁾ 즉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사안’ 중심으로 접근하는 양상이며, 최근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장기요양, 빈곤 등에서의 인권이슈가 제기되면서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과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p. 39

113)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and HelpAge International(2012). “Ageing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Celebration and A Challenge” . pp. 125-127.

V

ASEM 노인인권 아젠다 및 주요 의제

1. 제안 배경	79
2. ASEM 회원국 노인인권 전개과정과 시사점	83
3. ASEM 노인인권 아젠다 및 주요 의제	88
4. ASEM 노인인권 증진 공동 선언(안) 마련	92

1. 제안 배경

1) ASEM 아시아 회원국의 노인인권 상황 개요

- ASEM 회원국 노인인권 이슈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동일한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권역과 자국의 상황에 따라 노인인권 이슈의 대응양상과 정책 운영 실태는 차이가 있다. 1990년대 이후 일본, 중국, 한국 등 동북아 국가의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UN의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을 시작으로 2002년 MIPAA가 발표됨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은 노인과 고령화, 노인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에 MIPAA에서 제시된 기본방향을 토대로 자국의 상황에서 이를 실행하고 평가·모니터링 하는 데 초점을 두는 양상이다.¹¹⁴⁾
- MIPAA 이후 아시아 국가들에게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ESCAP에서 실시한 MIPPA의 이행 관련 2차주기 점검(2012) 결과를 통해 잘 드러난다. ESCAP의 2차 점검에 의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고령노인의 수는 전례 없는 비율로 증가할 것이 예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2012년 4.5억 명에서 2050년에는 약 13억 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60세 이상의 인구는 3명 중 1명으로 60세 이상 인구 중 여성인구가 53.5%를 차지하게 되고, 80세 이상의 후기고령노인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한편 2차 점검을 통해 드러난 아시아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인인권과 관련된 이슈는 사회안전망의 부족으로 인한 생존권 보장 장치 부재의 문제를 비롯하여 절대빈곤 노인의 급증, 비공식적 자원 부문의 보호기능의 약화와 국가대응책 부재로 인한 건강권 침해, 주거 및 사회기반시설의 고령친화적 환경 구축 미비, 대안적 지원체계 부재로 인한 노인학대와 폭력 은폐의 만연¹¹⁵⁾, HIV/AIDS 감염노인 대응체제 미비의 문제였다.¹¹⁶⁾ 결국 기존 노인인권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

114) Report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A/AC.278/2011/5),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Second working session, New York, August 2011.

115) 실제로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가진 아시아 지역 내 국가는 극소수(호주, 일본)에 그치고 있다.

116)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and HelpAge International. “Ageing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Celebration and A Challenge” (2012). p. 123.

한 노인인권문제까지 겹쳐진 양상이다.

- 그 밖에 아시아 지역 협의체인 ASEAN에서는 ‘사회복지와 발전에 관한 전략(2011-2015)’ 우선과제로 사회보장,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화, 지역보호접근, 건강에 있어서의 자기보호, 노인조직, 정책과 프로그램 강화에 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¹¹⁷⁾
- 요컨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당면한 노인인권상황과 핵심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을 권리주체로서 인식하는 권리기반 접근이 정책과 제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법과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노인권에 대한 관심을 우선시 하고, 국가 정책과 프로그램에 고령화 이슈를 주류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능력과 자원을 확보하고, 여성노인 및 취약한 노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포괄적 사회보호체계가 요청되고 있다.

2) ASEM 유럽 회원국의 노인인권 상황 개요

- 유럽의 고령화는 저출산 추세와 함께 유럽 전반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치며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유럽은 2008년 이후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위기로 인한 공공 영역의 부채 문제가 아직 해결이 요원한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가 60대에 접어들고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기 시작함으로써 현실화되고 있는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¹¹⁸⁾
- UN-ECE에서는 2007년 1차 점검회의 이후 회원국에게 MIPAA 이행전략에 따른 10대 이행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며, 2차주기 점검에서는 1차 점검에서 제시한 영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MIPAA 이후 유럽 국가들에서 제시된 주요 성과는 모든 정책 내 고령화의 주류화, 인구구조 변화와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응하는 사회보호체계, 건강과 웰빙에 따른 모든 노인의 독립적인 삶의 질 유지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과제로는 인구구조 변화와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응하는 사회보호체계 구축, 인

117) Ibid. pp. 120-126.

118) 박영란(2013). ‘초고령사회 대비 EU의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정책 패러다임 : 「유럽연구」. 31(1). p. 136.

구고령화로 인한 경제·사회적 결과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구축, 건강과 웰빙에 따른 모든 노인의 독립적인 삶의 질 유지 영역에서 제시되었다.¹¹⁹⁾

○ UN-ECE 유럽 국가들의 MIPAA 2차주기 점검결과에서 제시된 특징 중 ASEM 회원국에 속한 개별 국가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¹²⁰⁾

- MIPAA 2차주기 점검에서 유럽 국가들의 주요 성과로 제시된 인구구조 변화와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응하는 사회보호체계 구축은 고령화 사회에서의 지속가능한 사회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연금 및 사회보장시스템 개혁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을 한 국가들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해당된다.
- 건강과 웰빙에 따른 모든 노인의 독립적인 삶의 질 유지를 위한 노력은 27개의 유럽 국가들에서 성과로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에서는 고령(화)사회에서 도전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 가장 많은 성과가 제시된 영역은 모든 정책 내 고령화의 주류화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바니아, 스웨덴 등의 국가들에서 주요 성과로 보고되었는데, 이들 국가 중,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일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진전도 있었지만 향후 노력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 인구고령화로 인한 경제·사회적 결과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구축 영역에서 성과가 제시된 유럽 국가들은, 불가리아, 핀란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몰타,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등이며, 향후 더욱 노력해야 할 국가들은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덴마크, 핀란드, 독일, 리투아니아,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으로 제시된 바 있는데, 고령화사회에 대응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은 연금시스템 및 고령에도 노동을 계속하는 자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노인의 사회적 통합과 참여 보장은 벨기에,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과 같은 국가들에서 진전이 있는 것

119) UN(2012). 'Synthesis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in the UNECE region' . p.7.

120) Ibid. p.8이하 참고 (ASEM회원국에 속한 유럽 국가들 내용을 발췌, 정리)

으로 보고된 반면,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웨덴 등에서는 여전히 일부 노력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추구하고 관련되어서는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빈곤의 감소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 온 것으로 보고되었고,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스페인 등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 한편, 평생교육 증진과 교육제도 개선, 고령사회에서 성주류화, 노인 돌봄 제공과 세대 내·세대 간 연대 강화, 지역이행전략 성취를 위한 지역 협력 등의 영역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는 주목을 덜 받아 왔으며 성과와 도전에 대한 논의도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 즉, 유럽은 국가차원을 넘어 국가 간의 연대를 통해 노인권리에 입각한 적극적인 대응과 전략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경제 불황, 노동인구 급감과 같은 사회변화 요인에 의해 지금까지 다룬 주요 주제였던 건강권, 노동권, 경제권에 속하는 이슈들이 여전히 미해결되었고, 예측하지 못한 노인인권 사각지대가 대두되는 등 노인인권 이슈는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유럽은 향후 5년간을 경제 불황이라는 맥락 속에서 도전과 기회에 당면할 것으로 간주하는 양상이다. 따라서 기존의 고령화의 주류화와 통합적 접근 안에서 ① 건강과 보호 관련 사회서비스와 보건서비스의 통합과 조정, 재정적 지속가능성,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의 유지, 통합적인 장기요양 보호 체계 구축, 비공식 및 가족 수발자 지원,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보호, ② 노동시장의 변화 관련하여 퇴직연령의 제고, 조기퇴직의 인센티브 지양 등을 언급과 사회안전망 개혁과 연계되어 전개, ③ 평생학습을 통한 노인 역량강화와 활동적인 삶의 영위, ④ 정책 입안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일과 보호의 책임,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는 정책 등을 강조하여 지속적으로 노인인권 기반의 사회발전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¹²¹⁾

1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pp. 52-53.

2. ASEM 회원국 노인인권 전개과정과 시사점

1) 노인인권 전개과정

-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전면적인 국제 인권 체제가 확립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로서 세계대전과 유대인의 대량학살에 대한 성찰에 기반하고 있다. 유엔헌장에서 회원국의 인권존중의무가 일반적 의무로서 규정되고 그 증진을 위한 인권위원회¹²²⁾가 설치된 것을 계기로 인권논의는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시작으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는데, 비록 ‘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되어있지 않았더라도 제25조에서 ‘노령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보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것은 현대 노인인권 발달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이후 아동,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보편적 인권논의가 일반화되는 흐름과 달리, 노인인권은 1980년 이후에서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국제적으로 노인인권의 주제별 권리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구체화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¹²³⁾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노인인권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일반 인권 논의와 비교하면서 연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1950년대의 경우,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 시기이긴 하지만 그 진정한 중요성을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주요한 흐름으로는 1952년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1957년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이 만들어졌을 뿐, 노인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나타나지 못하였다.¹²⁴⁾ 그런 점에서 1950년대는 노인인권 역사에서 일종의 여명기로 볼 수 있다.
 -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유엔을 중심으로 인권문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1966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만들어 짐으로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의 항목들이 구체화되었다. 1966년 발표된 두 국제

122) 인권위원회는 2006년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로 격상되었다.

123) 이와 관련된 논의는 김주현(2011), 안진(2007)을 참고.

124) 박찬운(2011). 「인권법연구」. 한울. pp. 50-54. 참고

규약은 인권이 포괄해야 하는 영역을 확정하는데 유의미한 기준이 되었다. 당시 제시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그리고 사상과 양심, 표현, 신체의 자유 등이 포함된 자유권과 적정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와 차별금지 등의 원칙 등은 이후 노인인권 논의에서도 강조됨을 알 수 있다. 비록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국제법상에서 의미 있는 규약이 제정되는 등 일반 인권 분야는 진전이 있었지만, 노인 당사자 인권을 둘러싼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 1980년대 이후부터는 구체적인 대상에 초점을 둔 인권 논의가 시작되었다. 1989년 아동권리협약, 1990년 이주노동자 및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만들어 진 바, 노인인권에 대한 관심이 나타난 것도 이 시기부터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2년 오스트리아 빈 회의에서 노인에 관한 최초의 독립적인 국제문서라고 할 수 있는 ‘고령화에 관한 비엔나 행동계획’이 채택된 것을 시작으로 UN을 주축으로 하여 노인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원칙과 계획들이 다뤄졌다. 고령화에 관한 비엔나 행동계획은 인구의 고령화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의 능력을 강화하고 노인들의 잠재적 개발능력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고령화 현상은 노인인권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과 국제협력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국가의무의 성격 또한 과거 소극적 의무에서 적극적 의무를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인권논의는 한걸음 더 나아가는 전환기적 계기를 맞은 것으로 보여 진다. 예를 들어 1991년 UN 총회(결의서 46/91)에서 채택된 ‘노인을 위한 UN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 for Older Persons)’은 인권당사자로서 노인에 대해 국가는 가능한 한 그들의 정책에 이 원칙들을 반영하도록 명시하는 등 노인인권을 둘러싼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인권 개념의 역사적 변화과정에서 20세기말 2세대 인권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그 이후 지금까지 노인인권의 논의는 더욱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어떤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를 나열하고 그 성격을 규정하였다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노인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확

대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실증으로서, 2002년 UN은 MIPAA를 채택한 후 과거와 달리 계획 채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UN 사회경제국의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한 안내서’와 UN 사회개발국의 ‘MIPAA의 점검과 평가를 위한 안내’ 등을 통해 개별 국가에서 MIPAA에 따른 계획이 적절히 이행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제시한 바 있다. 즉 노인인권 보장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개별 노인의 일상에서 자신의 인권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권리로서 이행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 즉 생활양식에 터를 잡은 노인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어 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 정리하면, 195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이르는 노인인권 논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인권의 발달 과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각 시기에서 나타나는 노인인권 이슈와 주제들은 그 이전 및 이후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만큼 ASEM 회원국에서도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제도적 보장의 흠결에 따른 노인인권 주제들이 중요한 문제로 재조명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이른바 노인인권 선진 국가에 속하는 일부 ASEM 북유럽 국가(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경우, 최근 제3세대 인권에 속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불황, 노동인구 급감과 같은 사회변화 요인으로 인해 건강권, 노동권, 경제권의 침해 상황이 노인인권 사각지대로서 대두되는 등, 노인인권 이슈는 반복되고 있다. 이는 전술한 4장의 분석에서도 드러난 바 있는데, ASEM 회원국의 노인인권 이슈들은 고령화 혹은 노인인권 논의가 선행된 국가에서 다뤄진 문제들이 후발 혹은 타 국가에서도 유사한 패턴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이러한 점이 ASEM 회원국 노인인권 전개과정의 특징인 바, 국가간 전혀 다른 노인인권이슈가 나타나기 보다는 오히려 서로 닮은꼴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노인 기본권 및 자유권 논의가 생략된 채 사회권 보장으로의 주제 이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달리 설명하자면, 국가의 소극적 의무와 관련된 조치와 논의를 생략한 채 적극적 의무보장의 단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2) 노인인권 전개과정의 시사점

- 노인인권의 국제적 흐름은 시대별로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진행되고 있어 “노인인권의 상호연계적 전개과정” 이라고 할 수 있고, 노인인권 논의의 특징은 “국가 간 노인인권이슈의 발현과 재현”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노인인권 영역의 공통적 이슈들이 있고, 여전히 해결을 바라는 과제들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노인인권이 전개되어 온 과정이 ASEM 회원국에게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비록 1980년대 이후 노인인권의 논의가 확대되었지만 인권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UN장애인권리협약 혹은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노인인권 국제협약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가·지역·세계적 차원을 아우를 수 있는 보편타당한 인권관점에 대한 충분한 합의와 논의 역시 부족하다.
 - 둘째, 노인차별, 학대, 배제, 빈곤과 같은 이슈들은 지난 50여년에 걸친 노인인권 논의에서 단 한 번도 강조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는 고령자에 대한 차별, 사회참여로부터의 배제와 소외, 존엄적 생존권 박탈을 둘러싼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전술한 UN OEWG의 논의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연령차별, 방임과 폭력과 같은 만성적인 인권침해 현상 또한 만연한 상황이다.¹²⁵⁾ 유럽과 아시아의 논의에서 나타났듯이 노인은 어떤 사회에서든 아직도 재난, 빈곤, 건강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취약한 사회계층으로 남아있다. 2012년 발표된 ‘노인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인권최고대표 보고서’ 는 이러한 점을 잘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는 고령화에 따른 연령차별과 낙인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폭력과 학대 문제는 고령화 속도에 비례하여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음이 지적하고 있다.¹²⁶⁾ 이를 종합 할 때, ASEM 회원국간 지적학적 상황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노인인권이슈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간 협력과 공조 가능성이 엿 보인다.

125) Report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A/AC.278/2011/5),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Second working session, New York, August 2011.

126)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E/2012/51), 2012.

- 요컨대 노인 인권 개념과 국제논의의 수준은 확장·진화되어 왔지만, 국가적·지역적·지구적 실행 수준은 이에 못 미치고 있으며, 심지어 전 세계적 경제 불황 속에서 퇴보하는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천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노인인권보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노인과 노인인권 증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단지 그동안 발전해왔다는 성급한 일반화 논리에 막힌 채 담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만큼 국가·지역 간 수준과 상황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노인들의 적절한 신체적 및 경제적 수준을 유지할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²⁷⁾ ASEM 노인인권 아젠다와 주요 의제가 이러한 시사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논의를 해야 할 이유 역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3) 소결

- ASEM 회원국들은 노인인권 권리의 확인(인식), 존중, 보호, 충족, 증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인권보장 의무 이행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국가의 적극적 의무로서 노인인권보장을 인식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사회권에서 본 노인인권 상황은 더욱 취약하다. 설령 사회권적 논의가 발달된 북유럽 등 국가라고 할지라도 전 지구적 경기침체 및 경제 불황과 같은 요인과 맞물려 노인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국가의 최소핵심 의무이행은 우선순위에서 힘을 잃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발표에서 보듯 세계 인구의 80%가 어떠한 종류의 사회보장도 받지 못하며 그 중 과반 수 이상이 노인이라는 점은 기본적인 생존보장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 노인인권침해와 권리박탈의 문제는 더 이상 복지중심 접근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즉, 적극적 의무로서 노인인권을 인식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127)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A/AC.278/2012/1),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Third working session, New York, 21-24 August 2012.

- 이에 ASEM 회원국들이 ‘국가의 적극적 의무로서 노인인권보장’ 을 중요한 주제로 인식하는 것이 급선무인 바, ASEM 노인인권의 아젠다와 의제는 이러한 주제와 문제 상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3. ASEM 노인인권 아젠다 및 주요 의제

- 국가와 지역별로 노인당사자의 인권상황과 정책 이행 경험과 수준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범지구적 고령화를 맞고 있는 지금, ‘모두를 위한 세대연대형 사회’ 를 만드는 것만큼은 공통의 과업이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앞서 살펴본 노인인권 관련 국제동향과 ASEM 회원국의 노인인권 현황 분석을 통해 ASEM 노인인권 아젠다와 주요 의제를 제시하여 향후 ASEM을 중심으로 한 노인인권의 방향과 구체적인 과업과 전략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는 가깝게는 ‘2015 ASEM 노인인권 컨퍼런스’ 및 ‘노인인권 공동선언’ 과 맥락을 같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제10차 ASEM 정상회의에서 제안된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에 요구되는 목적과 사업을 설정하는데 바탕이 될 수 있다.

1) ASEM 노인인권 아젠다 제언

- 전술한 ASEM 회원국의 노인인권상황 분석결과들은 노인인권은 개별 국가의 적극적 대응 더불어, 아시아·유럽 내 다른 국가들의 정책 운영 경험의 공유 내지 공조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각 국의 고유한 상황에 기인하는 노인인권 쟁점도 있지만, 노인인권에 내재된 보편성에 기초한 많은 이슈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만큼 ASEM 노인인권 아젠다는 ASEM의 설립목적과 위상을 고려하되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각 회원국의 의지와 방향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논의를 종합하여 ASEM 노인인권의 아젠다로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아시아와 유럽의 연대와 협력” 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ASEM이 추구하는 ‘아시아와 유럽의 연계성(connectivity) 강화’ 의 일환이자 그 지향성을 계승하는 것과 연계된다.

ASEM 노인인권 아젠다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아시아와 유럽의 연대와 협력”

- 본 아젠다는 왜 ASEM에서 노인인권이 다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시아·유럽 국가에서 발현·재현되고 있는 노인인권과 관련된 문제는 일국 차원의 접근보다는 회원국가간 노인인권정책 운영 경험의 공조와 노인인권 가이드라인 개발과 같은 새로운 접근과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제시할 수 있다.
 - 특히 ‘아시아와 유럽의 연대와 협력’은 기존 개별 국가 단위 혹은 문제로서 노인인권을 바라보았던 관점에서 탈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는 ASEM이 지향하는 네트워킹과 협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나아가 노인인권 증진에서 국제협약체로서 ASEM이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축적하여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음이 대내·외적으로 강조될 수 있다.

2) ASEM 노인인권 아젠다에 의한 주요 의제 구성

- 위에서 제시된 아젠다를 기초로 제안하는 주요 의제는 크게 4가지로서, 노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의무강화, 적절한 생활환경 보장, 정당한 편의제공과 참여보장, 자기결정권 보장과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이다. 각 의제가 지니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의무 강화

- 고령(화)사회의 과제는 ‘노인인권의 완전한 보장’을 실현하는 것인 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에 기반을 두고 고령화대책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가 가장 중요함은 재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아시아 국가에서 나타나는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과 유럽 국가에서 대두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노인 정책 개발에 대한 시급한 요구는 우리 모두의 당면 과업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국가 노력이 촉구되어야 함이 나타났다.
- 이런 점에서 본 의제는 무엇보다 노인인권 전반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을 강조하는 것인 바, 노인을 둘러싼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의무를 요구한다. 노인인권을 보편적으로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촉진하는데 따른 국가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노인 당사자의 인간존엄성을 보호·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본 의제는 노인인권이 ASEM 회원국의 지정학적 여건 내지 경제상황에 경도되거나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노인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자국 상황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한 ICESCR 제2조의 확인이자 이에 대한 적극적 실천의지와도 연결된다. 이에 ASEM노인인권의 첫 번째 의제이자 다른 모든 의제의 국가적 이행을 담보하는 장치가 되는 바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노인의 적절한 생활환경 보장

- 인간의 존엄은 자신과 가정을 위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그러한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권리로부터 지켜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분석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노인’의 신체, 지적,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바,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노인이 적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주거권과 건강권을 개선하고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 비단 인권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노인은 가능한 한 자신의 집, 거주하던 지역에서 계속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때 지역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의 환경을 조성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
 - 또한 적절한 생활환경은 노인의 잔존 생애를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권 보장으로도 연결된다. 이 점에서 노인의 적절한 생활환경에는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둘러싼 보건·의료적 조치가 고려되어 하며 이에 따른 국가의무가 수반되어야 한다.
 - 이에 본 의제는 아시아·유럽 국가간 노인생활환경 및 보건의료체계의 특수성과 공통점을 바탕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국가의무와 ASEM의 공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3) 노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과 참여의 보장

- 본 의제는 연령상 이유로 노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며 이들의 참여, 활동, 이동,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인 근로권의 향유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도록 노력하며 제 3자가 노인의 근로권의 향유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것과 연결된다.
 - 이 점에서 ICESCR 제6조에서 적시된 근로권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ASEM 회원국의 적극적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국가적 조치를 요구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는 의제이기도 하다.
 - 즉 ‘노인’이라는 생애주기에 접어들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차별의 방지함에 있어 동등한 ‘참여’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인 만큼, 근로권을 시작으로 사회권에 이르는 범위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식하는 특징이 내재되어 있다.
 - 그러므로 노인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성 보장, 노인근로자의 근로권 여건 조성을 위한 공공·민간파트너십 구축, 노인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국가 간 정책 및 프로그램 정보 공유와 협력 등이 이 의제가 주목하는 사안이다.

(4)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어떤 상황 내지 대상을 막론하고 비인도적 취급과 폭력 그리고 학대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폭력 등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은 UN을 비롯한 많은 국제협약에서 강조되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분석에서와 같이 노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폭력과 학대는, 그 빈도와 양상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ASEM 모든 회원국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 주지되는 것과 같이 노인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형태로 가해지는 것뿐 아니라, 의도적 방임 또는 비의도적 방임 및 자기방임까지 포함한다. 그런 만큼 국가는 폭력·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본 의제가 가장 주목하는 점이다. 무엇보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노인에게 제공되는 제약들을 포함한 폭력 및 학대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제공 의무가 국가에게 있음은 본 의제를 통해 가장 강조될 사항이다.

4. ASEM 노인인권 증진 공동 선언(안) 마련

1) ASEM 노인인권 증진 공동 선언(안) 초안 개발

- 본 연구에서는 아젠다로 제안하는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아시아와 유럽의 연대와 협력’은 ‘2015 ASEM 노인인권 증진 컨퍼런스’의 아젠다로 활용될 수 있다. 동시에 ASEM 회원국이 공동으로 지향해야 할 실행 전략을 개발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5 ASEM 노인인권 증진 컨퍼런스’에서 선포할 공동 선언(안) 초안을 마련하였다.
- 공동 선언(안) 초안은 총 38조의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우선 노인인권 증진에 ASEM 회원국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당위성과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구축의 재확인에 대해 서술하는 총괄적인 언급을 먼저 제시한 후, 구체적인 노인인권 증진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의제를 중심으로 4가지 주제- 노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의무 강화, 노인의 적절한 생활환경 보장, 노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과 참여의 보장, 자기결정권과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작성하였다.

2) ASEM 노인인권 증진 공동 선언(안) 최종 개발

- 연구진에 의해 1차 개발된 공동 선언(안)의 내용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인인권 관련 전문가 4명(교수 2명, 연구자 2명)에게 자문을 실시하였다.

〈표 13〉 공동선언(안) 검토 전문가 현황

구분	영역	분야	자문형태
전문가 A	노년학 및 노인인권	연구자	서면검토 요청 및 자문의견 회신
전문가 B	노인복지	교수	서면검토 요청 및 자문의견 회신
전문가 C	노인정책연구	교수	서면검토 요청 및 자문의견 회신
전문가 D	노년학 연구	연구자	서면검토 요청 및 자문의견 회신

- 자문결과를 살펴보면 공동 선언(안) 초안에서 ASEM 노인인권 아젠다 및 주요 의제의 반영 여부에 대해 적절하게 잘 반영되었다고 환류되었다. 이는 연구진이 구성한 공동 선언(안)의 내용이 ASEM 노인인권 아젠다 및 주요 의제와

의 맥락상 연결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공동 선언(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자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수렴되었다.

- ‘자기결정권과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관련해서 제목과 달리 내용에는 폭력 및 학대관련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소극적 방어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인 인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는 측면에서도 관련 내용(34호)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 주거권이나 건강권에 비하여 이동권에 대한 논의가 다소 부족하고
 - 인권통합적 관점에 의한 사회보장체계 구축방안 마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며
 - ‘노인의 적절한 생활환경 보장’에서의 “적절한”이란 표현을 노인의 생활환경 보장에 국가수준을 초월한 보편적인(universal)이며 절대적인 최저 기준선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고,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 전문가들로부터 환류된 의견을 검토하여 수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순서의 배열 문제 관련해서는 우선 자기결정권과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선언을 한 후, 자기결정권 내용 중 적극적인 면에서 소극적인 방어 순으로 재배열하였으며,
 - 이동권의 추가 논의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노인인권의 주 이슈에서 이동권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고, 공동선언(안)에 이동권에 대한 내용을 언급(주거환경 조성의 조치 요구(15조), 노인의 주거환경 조성 관련 국가 책임 등(16조)-을 간접적으로 담고 있어 이는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 ‘인권 통합적 관점에 의한 사회보장체계 구축방안 마련’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인권의 특성 중 보편성(모든 개인이 고유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서 평등하게 인권을 향유함)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함으로 ‘인권의 특성인 보편성을 수용한 사회보장체계 구축방안 마련’으로 수정하였다.
 - 다만 마지막으로 ‘노인의 적절한 생활환경 보장’에서의 “적절한”이란 표현에 대해 최저 기준선을 제시하도록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유럽과 아시아의 상황이 상이하고, 공동 선언문의 취지 내지 범위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반영을 유보하였다.
- 본 과정을 거쳐 ‘2015 ASEM 노인인권 증진 컨퍼런스 공동 선언(안)’을 개발하였다.(부록. 공동 선언(안) 참고)

VI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기본 계획(안)

1.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의 필요성	97
2.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기본 계획(안) 개발	99
3.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목적 및 주요사업 관련 델파이 조사	101
4.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목적 및 주요사업 최종(안)	112
5.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기능 및 역할	113

I.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의 필요성

- ASEM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포괄적인 주제에 걸쳐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협의체임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관련된 논의 내지 사업은 다소 미진한 상황이다. ASEM의 기존 ‘인권’ 분야 사업은 아시아·유럽재단(ASEF)에 의해 진행된 ASEM 비공식 인권세미나로서 ASEF의 주요 사업 가운데 ‘거버넌스’ 분야의 단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표 14 참조). 그런 만큼 ASEM의 핵심 주제로 다뤄진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표 14〉 아시아-유럽재단(ASEF)의 운영 목적 및 사업

주제	주요 사업 내용	주요 관련 프로그램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정책, 예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 추진 - 다양한 인적자원 간 교류 촉진 프로젝트 수행 - 장르 간 협력 - 창조행위 및 문화적 관행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F Creative Networks - ASEF University - Creative Encounters Programme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 지역의 교육 네트워크 - 학술기관들의 연대 강화 프로그램 운영 - 학술적 대화 프로그램 운영 - 지적 교류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EH Thematic Networks - Model ASEM - Asia-Europe Co-operation in Voluntary Service - ASEM Education Research Hub for Lifelong Learning
지속 가능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슈 분석 및 해결방안 모색 - 정책 변화 논의 공간 마련 - 정보 교환 강화 - 이익 관계자들 대화 도모 - 과학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의 이슈 검토 및 정책 변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F Journalists' Colloquium - ASEF University - Asia-Europe Youth Training - Asia-Europe Young Leaders Symposia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공황의 영향 평가 - 혁신적이고 통합적 정책 조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ia Europe Economic Forum - Asia-Europe Lecture Tours - ASEF Higher Education Programme
거버 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 지역 정부 및 시민사회 대표 간 비격식적 대화, 공개 담화 등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ia in Eyes of Europe - Informal ASEM Seminar On Human Rights - Democratozati on Justice Series - Asia-Europe Youth Training
공중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종사자 지식 및 경험 교류 - 정부, 국제기구, 기업 및 비영리 기관의 파트너십 형성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F Public Health Network - ASEF University

자료: http://www.mofa.go.kr/countries/regional/asem/asef/index.jsp?menu=m_40_70_70&tabmenu=t_2 참고로 작성.

○ ASEM 노인인권정책 관련 허브기구 설치의 필요성

-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ASEM 회원국가에서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인권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정책 개발이 당면과제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인권정책 개발을 위한 국가간 연구와 정책 개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그렇지만, 아직 ASEM의 인권 활동은 전술한 비공식 인권세미나 개최에 그칠 뿐 특별한 조치 내지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물론 비공식인권세미나를 통해 인권 상황이 열악한 국가에 대해 개선 필요성에 대한 ASEM 차원의 직·간접적인 권고를 할 수 도 있지만, 인권 이슈주제가 광범위하고 세미나가 갖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실행역량은 기대할 수 없다.
- 주지되는 것처럼 인권보장은 국가별 인권정책 기본 계획과 실행이 수반되어야 하는 바, 이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는 최우선 순위로 고려되어야 한다. 바로 이점에서 MIPAA 이후 노인을 둘러싼 정책기조가 시혜적 차원에서 벗어나 권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¹²⁸⁾
- 따라서 노인을 둘러싼 관점 변화와 인권보장의 맥락에서 보면, 기존 ASEM의 주요 사업 내지 기구들은 이에 대한 대응역량이 부족한 바, 노인인권 이슈들을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노인 관련 정책의 내용과 우선순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인구 고령화는 이미 일국적 차원이 아닌 거의 모든 나라의 이슈로 대두되었고 그에 따른 고령(화)사회로의 변환은 ASEM 모든 국가들이 당면한 현상이다.
- 이에 아시아 및 유럽 대륙 국가들의 고령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노인인권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방안을 협력하여 개발·연구할 필요가 있는 만큼 해당 기능을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노인인권정책개발 관련 전문기관이 요구된다.

128) 조영환(2005). '고령화 대응전략으로서의 노인인권 정책방향'. 「한국노인복지학회 2005년추계학술대회」. p. 8.

2.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기본 계획(안) 개발

-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목적과 주요 사업(초안) 개발과정
 -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기본 계획(안)을 개발하기 위해 지금까지 진행한 연구 내용과 이를 통해 만들어진 ASEM 노인인권 아젠다와 주요 의제에 기초하여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가 추진해야 하는 방향성 및 사업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다.
 -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가 추진해야 할 목적과 사업의 결정 기준은 ASEM 노인인권 아젠다 및 주요 의제와의 정합성이다. 목적 및 사업에 관하여 ① ASEM 회원국의 노인인권 의식의 향상이 조성되어야 하며, ② ASEM이 지역협의체로서의 역할정립뿐 아니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③ 궁극적으로 ASEM 회원 개별 국가의 노인인권정책 이행 수준을 향상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 이 과정을 통해 5개의 목적을 도출한 바, ① 회원국의 노인인권의식 고취(계몽), ② 회원국의 노인인권보장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③ 회원국의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 ④ 회원국 간 노인인권 협력네트워크 구축, ⑤ ASEM 회원국의 노인인권 대응력 향상이다.
-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사업(안)은 위 5대 목적에 부합하는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하였다. 각 목적별 사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ASEM 회원국의 노인인권의식 고취(계몽)는 ‘ASEM 노인인권 아젠다와 주요 의제’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데 있어 필수적 과업이다. 이는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를 중심으로 교육 차원뿐 아니라, 노인인권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의 지원, 캠페인 활동, 정보의 공유 제공 등을 회원개별 국가 및 지역연계 차원에서 수행할 때 성취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인권 교육 자료 개발, 노인인권교육, 노인당사자 인권역량강화사업 지원, 노인인권증진 캠페인, 노인 인권정보 포털 구축 등의 5개 사업을 구성하였다.
 - 둘째, 회원국의 노인인권보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ASEM 회원국의 노인권리보장에 따른 국가의무강화, 생활환경 보장, 정당한 편의제공과 참여보장, 자기결정권 보장과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 등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

업으로서 노인인권지표 개발, 노인인권상황 실태 패널 조사, 노인인권 브리프 및 백서 발간, 노인인권상황 정례 평가, 데이터베이스 기반 노인인권 실태 연구를 구성하였다.

- 셋째, ASEM 회원국의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은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결과물이며 ASEM 노인인권 주요 의제 이행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ASEM 회원국가가 노인인권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가 그에 필요한 자료와 사례를 연구하여 제시하는 것은 센터의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이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인권보장 우수 사례 발굴·상시 학습, 노인인권보장체계 비교 연구, 노인인권보호 협력 사업 발굴,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중점 연구 과제 개발 및 추진, 노인인권 정책품질관리체계 개발,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제정 관련 연구사업을 구성하였다.
 - 넷째, ASEM 회원국 간 노인인권 협력네트워크 구축은 세 번째 목적인 ASEM 회원국의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을 성취하기 위한 지원 및 보완체계 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ASEM 노인인권 정상회의를 운영하고, 전문가 및 실무그룹 조직·운영, 노인인권세미나 개최, 회원국 간 노인인권 유관단체 연계, 노인인권보호 기반 정책 운영을 위한 개별 국가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도록 구성하였다.
 - 마지막으로 ASEM 차원에서 노인인권 증진을 도모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권문제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인 만큼 ‘ASEM 노인인권 대응력 향상’을 위해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가 예방·보호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노인인권 취약 상황 견제 및 대응, 노인폭력 및 학대보호 법제 제정 촉구, 노인사법권 관련 특별 보호, 노인인권침해를 예방사업을 구성하였다.
- 본 연구진이 제시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목적과 사업 1차 개발안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15 참조).

〈표 15〉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목적 및 주요사업 1차 개발(안)

운영 목적	주요 사업
ASEM 회원국 노인인권의식 고취(계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M 노인인권 교육 자료 개발 - ASEM 노인인권교육 - 노인당사자 인권역량강화사업 지원 - ASEM 회원국 노인인권증진 캠페인 - ASEM 노인인권정보포털 구축
ASEM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DB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M 노인인권지표 개발 - ASEM 노인인권상황 실태 패널 조사 - ASEM 노인인권 브리프 및 백서 발간 - ASEM 노인인권상황 정례 평가 - DB기반 ASEM 회원국 노인인권실태 연구
ASEM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우수 사례 발굴·상시 학습 - 회원국 노인인권보장체계 비교 연구 - ASEM 노인인권보호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ASEM 노인인권 증점연구과제 개발 및 추진 - 노인인권 정책품질관리체계 개발 - 노인인권 국제협약 제정
ASEM 회원국 노인인권 협력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M 노인인권 정상회의 운영 - 전문가 및 실무그룹 조직·운영 - ASEM 노인인권세미나 개최 - 회원국 노인인권 유관단체 연계 - 회원국 노인인권 정책개발 컨설팅
ASEM 회원국 노인인권 대응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 노인인권 취약 상황 견제·대응 - 회원국 노인폭력·학대 보호법제 제정 촉구 - 노인사법권 관련 특별 보호 - 노인인권침해 예방

3.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목적 및 주요사업 관련 델파이 조사

1) 델파이 조사 개요

-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제시된 노인인권 아젠다 및 의제를 기반으로 하여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목적과 주요 사업에 대한 1차안을 개발하였고, 내용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2회에 걸쳐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 1차 델파이 조사도구는 연구진이 제시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목적 타당성 및 중요도(2개 문항), 각 목적별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 관련

중요도에 관한 문항(10문항),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가 지향해야 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개방형 질문(1문항)으로 구성(총 13문항)하여 진행하였다.¹²⁹⁾

- 1차 조사에서는 각 영역의 전문가가 본 연구진이 제시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목적이 타당한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목적의 중요도와 제시된 각각의 목적별 사업의 중요도는 비율로 제시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 2차 델파이 조사¹³⁰⁾는 각 설문 문항에 대해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취합된 각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제시하여 전문가들이 1차 조사에서 제시한 의견을 확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는 2차 조사값이 1차 조사값보다 더 유효한 정보이다.
 - 2차 조사에서 활용한 조사문항은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목적이 타당한지와 어떤 목적이 중요한지, 각 사업별로 제시된 사업이 타당한지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2) 델파이조사 결과

(1) 조사 결과 개요

-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노인 및 인권 관련 전문가 19명(학계, 연구자, 인권관련 기관 관계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6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 2차 델파이조사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전자메일을 통해 진행되었다.
 - 1차 조사에서는 19명의 조사 대상 중 기간 내에 18명이 응답한 바, 회신된 응답지를 1차 조사 결과 집계에 적용하였다.

129) 부록. 1차 델파이조사 설문지 참고.

130) 부록. 2차 델파이조사 설문지 참고.

〈표 16〉 1차 조사 응답자 개요

구분		응답자 수	계
성별	남성	8	18
	여성	10	
소속	학계	10	18
	인권 관련 기관	5	
	연구자	3	

* 기간 외 회신한 1명의 인권관련 기관 관계자(남)의 응답지는 포함하지 않음.

- 2차 조사에서는 19명의 조사 대상 중 학계 무응답 1명의 전문가의 설문지를 제외한 18명의 전문가의 설문지를 조사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7〉 2차 조사 응답자 개요

구분		응답자 수	계
성별	남성	8	18
	여성	10	
소속	학계	10	18
	인권 관련 기관	5	
	연구자	3	

* 2차 조사에서는 학계 1인(남)의 전문가가 무응답으로 조사 분석에서 제외됨.

(2)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목적(안)에 대한 타당성 및 중요도 1차 조사 결과

- 본 연구진이 제시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목적(안)에 대해서는 5개의 사업의 타당도에 대한 평균이 4.2이상으로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가 추진해야 하는 목적 중에서도 ‘ASEM 회원국의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 과 ‘ASEM 회원국 노인인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 가장 타당하다고 제시되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ASEM 회원국 노인인권의 식 고취(계몽)’, ‘ASEM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DB구축’, ‘ASEM 회원국 노인



인권 대응력 향상’ 순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목적으로 제시한 항목 각각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는 ‘ASEM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 이 22.6%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되었고, ‘ASEM 회원국 노인인권의식 고취(계몽)’, ‘ASEM 회원국 노인인권 협력네트워크 구축’, ‘ASEM 회원국 노인인권 협력네트워크 구축’, ‘ASEM 회원국 노인인권 대응력 향상’ 순으로 중요도가 제시되었다.

〈표 18〉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목적에 대한 타당성과 중요도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목적(방향성)	타당성 평균	중요도 비율
ASEM 회원국 노인인권의식 고취(계몽)	4.4	21.7
ASEM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DB구축	4.4	18.0
ASEM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	4.7	22.6
ASEM 회원국 노인인권 협력네트워크 구축	4.7	20.0
ASEM 회원국 노인인권 대응력 향상	4.2	17.8

(3) 목적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중요도 1차 조사 결과

- 첫 번째 목적인 ‘ASEM 회원국 노인인권의식 고취(계몽)’ 를 위한 5개 사업 중 ‘ASEM 노인인권교육’ 이 평균 4.6점으로 가장 타당성이 높다고 제시되었고, ‘ASEM 노인인권 교육 자료 개발’, ‘노인당사자 인권역량강화사업 지원’, ‘ASEM 회원국 노인인권증진 캠페인’, ‘ASEM 노인인권정보 포털 구축’ 순으로 타당성이 제시되었다.
- 또한, 각 사업에 대한 중요도는 ‘ASEM 노인인권교육’ 이 20.8%로 가장 중요하다고 제시되었고, 각각의 사업에 대한 중요도 역시 타당성과 같은 순위로 나타났다.

〈표 19〉 ASEM 회원국 노인인권의식 고취(계몽)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중요도 1차 조사 결과

사 업	타당성 평균	중요도 비율
ASEM 노인인권 교육 자료 개발	4.4	20.6
ASEM 노인인권교육	4.6	20.8
노인당사자 인권역량강화사업 지원	4.3	20.3
ASEM 회원국 노인인권증진 캠페인	4.3	19.4
ASEM 노인인권정보포털 구축	4.1	18.3

- 두 번째 목적인 ‘ASEM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DB구축’ 에서 제시한 각각의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제시한 5개 사업 모두 평균 4.2점 이상으로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응답되었고, 제시된 5개 사업 중 ‘ASEM 노인인권지표 개발 사업’ 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노인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 패널 조사’ 및 ‘회원국에 대한 노인인권 실태연구’ 가 중요하다고 도출되었다.

〈표 20〉 ASEM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DB구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중요도 1차 조사 결과

사 업	타당성 평균	중요도 비율
ASEM 노인인권지표 개발	4.7	23.7
ASEM 노인인권상황 실태 패널 조사	4.2	20.3
ASEM 노인인권 브리프 및 백서 발간	4.4	18.1
ASEM 노인인권상황 정례 평가	4.3	18.7
DB기반 ASEM 회원국 노인인권 실태연구	4.4	19.2

- 세 번째 목적인 ‘ASEM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 사업’ 에서 제시한 6개의 각각의 사업들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노인인권보장체계 비교연구’ , ‘노인인권 국제협약 제정’ , ‘노인인권 중점 연구과제 개발 및 추진사업’ 의 순위로 타당하다고 제시되었다.
 - 한편 ‘ASEM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 사업’ 중에서는 ‘회원국의 노인인권



보장체계 비교연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시되었고, '노인인권 국제협약 제정', '노인인권 중점 연구과제 개발 및 추진사업', '노인인권보호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사업' 순으로 제시되었다.

〈표 21〉 ASEM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중요도 1차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평균	중요도 비율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우수 사례 발굴 및 상시 학습	3.8	15.0
회원국 노인인권보장체계 비교 연구	4.4	19.3
ASEM 노인인권보호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4.0	16.4
ASEM 노인인권 중점 연구과제 개발 및 추진	4.2	17.9
노인인권 정책품질관리체계 개발	3.8	12.5
노인인권 국제협약 제정	4.3	18.9

- 네 번째로 제시한 목적인 'ASEM 회원국 노인인권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제시한 5개의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ASEM 노인인권 정상회의 운영'과 '전문가 및 실무그룹 조직 및 운영', '회원국 노인인권 유관단체 연계사업'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 또한, 제시된 각 사업의 중요도는 사업의 타당도와 같은 사업 순위로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 22〉 ASEM 회원국 노인인권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중요도 1차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평균	중요도 비율
ASEM 노인인권 정상회의 운영	4.6	24.9
전문가 및 실무그룹 조직.운영	4.6	23.4
ASEM 노인인권세미나 개최	4.2	16.1
회원국 노인인권 유관단체 연계	4.3	20.6
회원국 노인인권 정책개발 컨설팅	4.1	15.0

- 다섯 번째로 제시된 목적인 ‘ASEM 회원국 노인인권 대응력 향상’ 을 위한 4개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노인폭력 및 학대 보호를 위한 법제 제정 촉구사업’ 의 평균이 가장 높아 해당 사업으로 가장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회원국의 노인인권 취약 상황을 견제하고 대응하는 사업’, ‘노인인권침해 예방사업’, ‘노인사법권 관련 특별 보호사업’ 순으로 타당성이 평가되었다.
 - 한편, 제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각의 사업에 대한 중요도는 타당성의 평균이 높은 순으로 중요도가 제시되었다.

〈표 23〉 ASEM 회원국 노인인권 대응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중요도 1차 조사 결과

사 업	타당성 평균	중요도 비율
회원국 노인인권 취약 상황 견제·대응	4.4	26.4
회원국 노인폭력·학대 보호 법제 제정 촉구	4.7	28.6
노인사법권 관련 특별 보호	4.0	21.8
노인인권침해 예방	4.3	23.2

-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목적별 사업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일부의 전문가들은 노인인권정책센터가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회원국 내 소수이주민족 고령자에 대한 연구사업 지원’, ‘노후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문제’ 가 구체적 사업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ASEM 회원국 외의 세계의 노인인권을 위한 사업’, ‘문화적 감수성에 관련된 사업’ 및 ‘세대 간 이해 혹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교육사업’, ‘노인인권 우수도시 인증사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목적에 대한 타당성 및 중요도 2차 조사 결과

- 본 연구진이 제시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목적과 사업(안)이 타당한지에 대한 2차 조사에서도 조사에 응답한 18명은 ‘ASEM 회원국의 노인인권보

장 정책 개발’ 과 ‘ASEM 회원국 노인인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 ASEM 노인 인권정책센터의 사업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제시하였다.

- 그리고 2차 조사에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목적(안)의 중요도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ASEM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 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다음 순위의 중요도는 1차 결과와는 다르게 ‘ASEM 회원국 노인인권 협력네트워크 구축’ , ‘ASEM 회원국 노인인권의식 고취(계몽)’ , ‘ASEM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DB구축’ , ‘ASEM 회원국 노인인권 대응력 향상 사업’ 순으로 도출되었다.

〈표 24〉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목적에 대한 타당성과 중요도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목적(방향성)	타당성 평균	중요도 비율
ASEM 회원국 노인인권의식 고취(계몽)	4.3	20.1
ASEM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DB구축	4.4	19.5
ASEM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	4.8	24.1
ASEM 회원국 노인인권 협력네트워크 구축	4.8	21.7
ASEM 회원국 노인인권 대응력 향상	4.0	15.2

(5)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목적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중요도 2차 조사 결과

- 첫 번째로 제시한 목적인 ‘ASEM 회원국 노인인권의식 고취(계몽)를 위한 사업(안)’ 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타당하다고 응답되었고, 5개 사업 중 ‘ASEM 노인인권교육’ 이 평균 46점으로 가장 타당도가 높게 제시되었고, 다음으로 ‘ASEM 노인인권 교육 자료 개발사업’ , ‘노인당사자 인권역량강화사업’ 순으로 타당도가 높게 제시되었다.
- 한편, 사업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1차 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ASEM 노인인권 교육자료 개발사업’ 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ASEM 노인인권교육’ , ‘노인당사자 인권역량강화사업 지원’ , ‘ASEM 회원국 노인인권 증진 캠페인’ , ‘ASEM 노인인권정보포털 구축’ 순으로 도출되었다.

〈표 25〉 ASEM 회원국 노인인권교육 고취(계몽)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중요도 2차 조사 결과

사 업	타당성 평균	중요도 비율
ASEM 노인인권 교육 자료 개발	4.4	23.1
ASEM 노인인권교육	4.6	21.6
노인당사자 인권역량강화사업 지원	4.3	20.7
ASEM 회원국 노인인권증진 캠페인	4.2	19.2
ASEM 노인인권정보포털 구축	3.8	14.9

○ 두 번째로 제시한 목적인 ‘ASEM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DB구축’ 을 위해 제시한 각각의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진이 제시한 5개 사업 모두 평균 4.1이상으로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응답되었고, ‘ASEM 노인인권 브리프 및 백서 발간사업’ 이 평균 4.5점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응답되었다. 그리고 ‘ASEM 노인인권상황 정례 평가’ , ‘ASEM 노인인권지표 개발’ 이 평균 4.4점으로 나타났다.

- 한편, 각 사업의 중요도는 ‘ASEM 노인인권지표 개발사업’ 이 1, 2차 조사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차 조사 결과와는 달리 ‘ASEM 노인인권상황 정례 평가사업’ , ‘ASEM 노인인권 브리프 및 백서 발간’ , ‘DB기반 ASEM 회원국 노인인권 실태 연구’ , ‘ASEM 노인인권상황 실태 패널 조사’ 순으로 제시되었다.

〈표 26〉 ASEM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DB구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중요도 2차 조사 결과

사 업	타당성 평균	중요도 비율
ASEM 노인인권지표 개발	4.4	21.8
ASEM 노인인권상황 실태 패널 조사	4.2	18.2
ASEM 노인인권 브리프 및 백서 발간	4.5	19.8
ASEM 노인인권상황 정례 평가	4.4	21.3
DB기반 ASEM 회원국 노인인권 실태연구	4.1	19.2

- 세 번째로 제시된 목적인 ‘ASEM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 사업’ 에서 제시한 6개의 각각의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노인인권 국제협약 제정’ 이 평균 4.6점으로 가장 높게 제시되었고, ‘회원국의 노인인권 중점 연구과제 개발 및 추진사업’ 과 ‘회원국 노인인권보장체계 비교 연구사업’ 순으로 제시되었다.
 - 한편, ‘ASEM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 사업’ 에서 제시한 6개의 각각의 사업의 중요도는 1차 조사결과와 다르게 ‘노인인권 국제협약 제정사업’ 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시되었고, ‘회원국 노인인권보장체계 비교 연구사업’ , ‘ASEM 노인인권 중점 연구과제 개발 및 추진사업’ 순으로 제시되었다.

〈표 27〉 ASEM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중요도 2차 조사 결과

사 업	타당성 평균	중요도 비율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우수 사례 발굴 및 상시 학습	3.6	14.8
회원국 노인인권보장체계 비교 연구	4.4	19.4
ASEM 노인인권보호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4.0	15.3
ASEM 노인인권 중점 연구과제 개발 및 추진	4.4	17.7
노인인권 정책품질관리체계 개발	3.5	9.8
노인인권 국제협약 제정	4.6	22.9

- 네 번째로 제시한 목적인 ‘ASEM 회원국 노인인권 협력네트워크 구축’ 을 위해 제시한 5개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1, 2차 모두 ‘ASEM 노인인권 정상회의 운영’ 과 ‘전문가 및 실무그룹 조직 및 운영’ , ‘회원국 노인인권 유관단체 연계사업’ 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사업의 중요도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전문가 및 실무그룹 조직 및 운영’ 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제시되었으며, ‘ASEM 노인인권 정상회의 운영’ , ‘회원국 노인인권 유관단체 연계사업’ 순으로 도출되었다.

〈표 28〉 ASEM 회원국 노인인권 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중요도 2차 조사 결과

사 업	타당성 평균	중요도 비율
ASEM 노인인권 정상회의 운영	4.6	23.7
전문가 및 실무그룹 조직·운영	4.7	24.8
ASEM 노인인권세미나 개최	4.0	16.9
회원국 노인인권 유관단체 연계	4.3	21.2
회원국 노인인권 정책개발 컨설팅	3.7	13.5

- 다섯 번째로 제시한 목적인 ‘ASEM 회원국 노인인권 대응력 향상’ 을 위한 4개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노인폭력 및 학대 보호를 위한 법제 제정 촉구사업, 회원국의 노인인권 취약 상황을 견제하고 대응하는 사업의 평균 순으로 제시되었다.
 - 한편, 각각의 사업들의 중요도는 1차 결과와 마찬가지로, ‘회원국의 노인폭력 및 학대 보호를 위한 법제 제정 촉구사업’ 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고, ‘회원국의 노인인권 취약 상황을 견제하고 대응하는 사업’, ‘노인인권 침해 예방 사업’, ‘노인사법권 관련 특별 보호 사업’ 순으로 제시되었다.

〈표 29〉 ASEM 회원국 노인인권 대응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중요도 2차 조사 결과

사 업	타당성 평균	중요도 비율
회원국 노인인권 취약 상황 견제·대응	4.5	25.1
회원국 노인폭력·학대 보호 법제 제정 촉구	4.7	27.8
노인사법권 관련 특별 보호	3.8	18.8
노인인권침해 예방	4.4	22.7

4.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목적 및 주요사업 최종(안)

-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목적 및 주요사업 최종(안)
 - 연구진이 개발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목적 및 사업(안) 초안에 대한 1,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전문가들은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목적과 목적별 사업이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델파이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사업 최종(안)을 1차 개발(안)을 수정하여 목적 및 사업의 중요도 순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진의 1차 개발(안)에서는 운영목적의 중요도를 ‘ASEM 회원국 노인인권의식 고취(계몽), ASEM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DB구축, ASEM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 ASEM 회원국 노인인권 협력네트워크 구축, ASEM 회원국 노인인권 대응력 향상’ 순으로 보았다. 그러나 2차 델파이조사의 분석 결과에서 ‘ASEM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 ASEM 회원국 노인인권 협력네트워크 구축, ASEM 회원국 노인인권의식 고취(계몽), ASEM 회원국 노인인권보장DB구축, ASEM 회원국 노인인권 대응력 향상’ 순으로 중요도가 평가됨에 따라 해당 순서로 변경하였다.
 -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주요사업에 대한 최종(안)은 다음과 같다(표 30 참조).

〈표 30〉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목적 및 주요사업 최종(안)

운영 목적	주요 사업
ASEM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	노인인권 국제협약 제정 관련 연구 회원국 노인인권보장체계 비교 연구 ASEM 노인인권 중점연구과제 개발 및 추진 ASEM 노인인권보호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우수 사례 발굴·상시 학습 노인인권 정책품질관리체계 개발
ASEM 회원국 노인인권 협력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및 실무그룹 조직·운영 ASEM 노인인권 정상회의 운영 회원국 노인인권 유관단체 연계 ASEM 노인인권세미나 개최 회원국 노인인권 정책개발 컨설팅

운영 목적	주요 사업
ASEM 회원국 노인인권의식 고취(계몽)	ASEM 노인인권 교육 자료 개발 ASEM 노인인권교육 노인당사자 인권역량강화사업 지원 ASEM 회원국 노인인권증진 캠페인 ASEM 노인인권정보포털 구축
ASEM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DB구축	ASEM 노인인권이표 개발 ASEM 노인인권상황 정례 평가 ASEM 노인인권 브리프 및 백서 발간 DB기반 ASEM 회원국 노인인권실태 연구 ASEM 노인인권상황 실태 패널 조사
ASEM 회원국 노인인권 대응력 향상	회원국 노인폭력·학대 보호법제 제정 촉구 회원국 노인인권 취약 상황 견제·대응 노인인권침해 예방 노인사법권 관련 특별 보호

* 표 15에서 제시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사업 1차 개발(안)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중요도 순위를 반영하여 작성함.

5.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기능 및 역할

-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사업 수행을 통한 목적 성취를 위해서는 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도출한 25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구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5개의 사업을 기능 중심으로 범주화한 바, ‘정책개발·사업추진 기능’, ‘네트워크·협력 기능’, ‘노인인권교육·증진 기능’, ‘연구·평가 기능’의 4대 기능이 도출되었다(표 31 참조).

〈표 31〉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기능에 따른 주요사업내용(안)

기능 구분	사업내용
정책개발·사업추진 기능	노인인권 정책품질관리체계 개발 회원국 노인인권 정책개발 컨설팅 ASEM 노인인권보호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우수 사례 발굴·상시 학습 노인인권 국제협약 제정 관련 연구 노인인권침해 예방 ASEM 노인인권 중점연구과제 개발 및 추진
네트워크·협력 기능	ASEM 노인인권 정상회의 운영 전문가 및 실무그룹 조직·운영 회원국 노인인권 유관단체 연계 ASEM 노인인권세미나 개최 ASEM 노인인권정보포털 구축
노인인권교육·증진 기능	ASEM 노인인권 교육 자료 개발 ASEM 노인인권교육 노인당사자 인권역량강화사업 지원 ASEM 회원국 노인인권증진 캠페인 회원국 노인폭력·학대 보호법제 제정 촉구 회원국 노인인권 취약 상황 견제·대응 노인사법권 관련 특별보호
연구·평가 기능	ASEM 노인인권지표 개발 ASEM 노인인권상황 정례 평가 ASEM 노인인권 브리프 및 백서 발간 DB기반 ASEM 회원국 노인인권실태 연구 ASEM 노인인권상황 실태 패널 조사 회원국 노인인권보장체계 비교 연구

1) 정책개발·지원 기능

- 노인인권 정책품질관리체계 개발
 - 노인인권 문제들이 국가별로 여러 분야에 걸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다학제적 융·복합연구를 통한 종합 진단 및 대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정책개발 및 관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타나는 상황이다.
 - 비록 회원국가간 지정학적 상황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노인인권보장’은 국가의 의무에 해당하는 과업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경제 등의 영역에서 각기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술한 것과 같이 ASEM 회원국에서의 노인인권이슈는 공통분모가 공유되고 있다.

- 이에 ‘노인인권 정책품질관리 체계 개발’ 사업은 ASEM 회원국가의 노인인권정책의 기준선(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국 노인인권정책의 질적 성장과 국가간 노인인권 수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개발된 기준선은 회원국에게 배포되어 자국의 노인인권 정책품질에 대한 객관적 질(質) 관리 방법에 응용될 수 있다.
- 이를 위해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는 먼저 ASEM 회원국별로 자국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독려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에 필요한 연구자료, 정보 등을 자문하거나 제공하도록 한다. 두 번째 회원국가별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수집·분석한 후 ASEM 회원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노인인권정책 기준선(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기준선이 회원국의 노인인권 정책의 품질을 가늠하고 진단하는데 직접 활용될 수 있게끔 장려하는 한편, ASEM 회원국 노인인권정책 품질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회원국 노인인권 정책개발 컨설팅
 - 회원국 노인인권정책개발 컨설팅 사업은 ASEM 회원국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정책 개발 전문 컨설턴트를 파견하여 맞춤형 개선지도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인권관련 정책 개발 역량이 부족한 국가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아젠다 발굴과 정책연계방안 등에 대해 컨설팅하도록 한다.
 - 개별 국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노인인권 관점에서의 정책상황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인권 정책의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ASEM 노인인권보호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전술한 것과 같이 ASEM은 상호존중, 합의, 비공식주의를 바탕으로 회원국간 동등한 동반자관계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그런 만큼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역시 ASEM의 설립취지와 운영방식에 부합하는 기능과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 ‘노인인권보호’의 주제 하에 국가(지역)간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여타의 협의체와 차별화된 ASEM의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ASEM은 이른바 최빈국에서 시작하여 중진국을 거쳐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의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국가들의 상황은 다른 국가들이 경험했거나 혹은 경험하게 될 과거-현재-미래의 상황으로 적용되어진다. 노인인권과 연결된 쟁점 역시 이와 유사한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인권증진을 위한 ASEM 국가간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개별 국가가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인 바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가 중심이 되어 주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우수 사례 발굴 및 상시학습
 -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는 ‘노인인권’ 과 관련된 회원국의 지식정보자원의 허브 역할을 하여야 한다. 각 국의 노인인권정책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국가, 노인인권정책 전문가, 관련 연구자 및 NGO 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맞춤형 정책·법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내용이다.
 - 구체적인 형태로서 노인인권보장 관련 주요 우수사례를 DB화하여 축적시키는 한편, 센터의 정보망(포털)에 탑재하여 누구나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배포하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 노인인권 국제협약 제정 관련 연구
 - 현재 노인인권 국제협약 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아직 국제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UN의 OEWGA에서 5차에 걸쳐 노인인권보장 관련 논의를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지만, 참여율도 높지 않고 국제노인인권협약 합의도 쉽지 않다.
 - 노인인권국제협약은 비단 UN의 이슈만은 아니다. 오히려 지역성과 협력성이 강조되는 ASEM과 같은 기구를 통해 실질적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때 제정여부를 둘러싼 의견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렴될 수 있다. 그런 만큼 개별국가단위에서 수행하기 어려우며, 회원국 관계 당사자 의견수렴과 합의 및 공동연구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 이런 점을 고려하여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는 UN을 주도로 추진되었던 기존 노인인권국제협약 관련 동향을 기초로 ASEM 차원에서 ‘노인인권 국제협약’ 에 대한 이슈와 필요성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사업은 정책 판단 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 구체적으로 ASEM 차원의 노인인권국제협약 제정과 관련된 논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회원국별 전문가 및 정책결정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집담회

형태의 논의조직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ASEM 노인인권 국제협약 관련 이슈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도록 한다. 또한 본 집담회를 통해 국제협약 제정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수렴되도록 하는 것을 센터의 역할로 삼는다.

○ 노인인권침해 예방

-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는 국가별 노인인권 관련 법제를 인권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법적 흠결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노인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간 법제·정책 특징 비교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국가별 노인인권침해 예방 우수 정책을 소개하고 전파함으로써 국가별 노인인권보장 수준의 균형발전을 꾀하도록 한다.

○ ASEM 노인인권 중점 연구과제 개발 및 추진

-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는 개별 국가단위의 노인인권상황을 초점으로 두기 보다는, 아시아 및 유럽 회원국을 아우르는 노인인권이슈와 연결되는 정책 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개별국가에서 설립·운영 중인 노인인권 관련 연구기관과의 기능적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점이다.
-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는 센터가 중심이 되는 ‘Top-Down’ 유형의 연구과제를 수행함과 동시에 ASEM을 비롯한 회원국 내지 관련 연구자들로부터 제시되는 연구주제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중점 연구과제화 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연단위 연구과제 공모 및 선정과제 연구용역사업, 센터 및 회원국 연구자 융합형 연구과제 개발사업 등이 주요한 형태가 될 것이다.

2) 네트워크·협력 기능

○ ASEM 노인인권 정상회의 운영

- ASEM 회원국의 노인인권 보장과 발전을 위해 ‘노인인권’ 이슈를 중심으로 한 노인인권 정상회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과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ASEM 노인인권정상회의는 각 회원국 내에서 노인인권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식과 필요성을 촉진할 수 있는 매우 주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 ASEM 비공식인권세미나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 주제는 인권 전반을 다루

고 있다. 따라서 노인과 고령화사회에서의 인권관점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ASEM 회원국 간의 협력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업으로서 ‘ASEM 노인인권정상회의’가 정례화 될 필요가 있다. 본 회의는 노인인권 쟁점에 대한 회원국의 공동대응과 노인인권보장을 위한 행동과 협조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다만 그 추진에 있어서 기존 ‘ASEM 정상회의’로 병합시키되, 정상회의의 상설 아젠다로서 ‘노인인권’이 정기적으로 다뤄지도록 하여 부수적인 행정 낭비를 지양하도록 한다. 이때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는 ‘ASEM 노인인권정상회의’에 필요한 실무를 주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전문가 및 실무그룹 조직·운영

- ASEM 노인인권정상회의가 정책총괄자 중심의 노인인권 논의라면 전문가 및 실무그룹 조직·운영과 회원국 노인인권 유관단체 연계 등은 정책전문가 및 실무자 중심 협력이라 할 수 있다.
- 전문가 및 실무그룹 활동은 노인인권 관련 국가별·지역별 이슈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한편, ASEM 회원국의 노인인권정책 발전을 위한 각계 전문가 의견 교류 및 수렴의 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에서 관련 실무자와 기구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ASEM 노인인권 유관단체 연계 및 노인인권세미나 개최

-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는 노인인권 관련 정기 세미나를 통해 ASEM과 ASEM 회원국의 노인인권 관련 활동 등을 학술적 차원에서 재평가하고, ASEM 회원국 외의 타 국가 및 기구 등과 정보를 공유할 장을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ASEM 노인인권세미나, 노인인권 단체 연계사업 등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다.
- 노인 분야 학술회의 또는 인권세미나에서 ‘노인인권’이 상설 주제로 다뤄지지 못했던 점을 볼 때,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가 주된 역할을 하는 ASEM 노인인권세미나는 노인인권 논의와 연구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정책·연구 관련 소통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 ASEM 노인인권정보포털 구축

-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를 중심으로 수행된 다양한 사업과 정보, 그리고

노인인권 관련 자료 등은 온라인 포털을 구축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는 노인인권 관련 포털을 구축하여 회원국과 상호소통의 장을 보장할 뿐 아니라, 노인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우 포털을 통해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온라인 노인인권의 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본 포털 구축사업은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로부터 생산되는 자료의 배포 및 보급과 연결되며, 회원국간 정보교류의 수단으로서도 활용될 것인 바 노인인권정보 허브기구로서의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3) 노인인권교육·증진 기능

- ASEM 노인인권 교육 자료 개발
 - ASEM 노인인권 교육 자료 개발은 ASEM에서 지향하는 노인인권의 방향과 내용 및 구체적 지침을 담은 교육 자료를 개별국가에 배포하고 활용하여 ASEM 회원 개별 국가의 사회적 노인인권 의식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이를 수행하는 인력구조는 센터의 연구팀의 일부가 담당하되, 구성된 교육 자료는 각국의 전문가 및 실무그룹의 자문과 협조를 통해 기본 자료를 발간하는 형태를 갖는 것으로 한다.
 - 노인인권 교육 자료는 크게 브로셔 형태의 홍보용과 노인인권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교재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본 내용은 노인인권의 개념, 영역, 구체적 실천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 교육 자료는 우선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본 책자를 개발하여 보급한 후, 회원 개별국가별로 각 나라의 현황을 접목한 노인인권 교육자료를 개발하도록 촉진하여 다양한 국가별 노인인권 교육 자료를 수집하여 상호 열람 및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ASEM 노인인권교육
 - 노인인권정책센터는 노인인권 교육과 관련하여 ASEM 차원에서 노인인권 교육 자료 개발 뿐 아니라 이를 각국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노인인권 교육의 활성화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는 노인인권 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훈련하며 실제 노인인권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노인인권 이 열약한 개별 국가의 노인인권 실무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구체적으로 ASEM 노인인권 강사 양성 과정은 인권의 이해, 노인인권의 발달과정 및 현안의 이해, 노인인권 감수성 훈련, 노인인권 우수국가 사례 공유 등의 인권 관련 내용 뿐 아니라, 인권 교육의 원칙과 방법, 노인인권 자료 개발 및 활용 방법, 교육계획 및 실행 등의 실습도 겸비하는 수료과정을 실시한다.
- 초기에는 노인인권정책센터에서 선별한 국가의 노인인권 실무자를 중심으로 재정적 지원을 통해 노인인권 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수료 후에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국가별로 노인인권 강사 양성과정 및 노인교육 등의 활동을 공개하고 의견을 공유하며, 자발적인 노인교육 콘텐츠를 다양하게 발전시키도록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노인당사자 인권역량강화사업 지원

- 이 사업은 노인인권 당사인 노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지원을 말한다. 즉, 노인인권 교육을 통해 의식화라는 인지과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노인 당사자의 노인인권을 구체적으로 실천까지 이끌어 내는데 목적이 있다.
- 사업의 수행은 노인을 돕는 노인인권 관련 단체 및 기관이 될 수도 있지만, 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인권을 강화하려는 구체적인 활동 등도 포함할 수 있다.
- 사업 선정은 ASEM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과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하며, 평가기준은 사업의 지속성, 자립성, 타국의 적용 가능성을 사정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사업 수행 과정과 수행 후 보고서 등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 가능하다.
- 사업의 지원은 1년 단위로 하되,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3년 지원도 가능할 수 있으며, 노인인권 추이에 따라 노인 당사자의 인권 역량강화 사업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다.

○ ASEM 회원국 노인인권증진 캠페인

- 이 사업은 노인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노인인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ASEM 차원에서 기획하여 각 회원국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이 주

된 내용이다.

- 구체적으로 보면 노인인권 캠페인 날짜 및 기간을 제정하여 매년 같은 날 ASEM 회원국가 모두가 참여하여 각 나라에서 캠페인을 개최하는 형태 또는 릴레이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는 일명 ‘영향력 있는 노인인권 캠페인 TFT’ 를 구성하여 이 팀에서 캠페인의 주제와 실천전략을 기획하며, 구체적 실천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국의 협조와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회원국 노인폭력·학대 보호법제 제정 촉구
 -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는 노인인권 교육, 노인인권 증진 관련 여러 사업 수행과 더불어 노인에게 가해지는 노인폭력·학대에 회원국가별로 적극 개입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 노인인권의 가장 취약한 상태라 할 수 있는 노인폭력 및 학대 문제 관련하여 ASEM 회원국가가 정책적으로 피해노인을 보호하고 학대 가해자를 관리·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제정하거나, 유사한 사회적 대응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며 감독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는 회원국의 노인폭력·학대 보호법제 제정 상태 또는 대응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직접 제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노인폭력 및 학대 사례에 대해 ASEM 회원국가별 대응 방식을 연구사업과 연계하여 조사하고 이를 발표하며, 각국의 우수사례 등을 게시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 회원국 노인인권 취약 상황 견제·대응
 -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는 노인폭력 및 학대 문제와 더불어 노인인권 취약 상황 등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인권이 취약한 회원국은 ASEM 차원에서 견제하고 문제 해결을 국가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행동을 적극 취할 필요가 있다.
 - 이는 ASEM 회원국가의 공동 대응 형태로 수행되어야 하는 바, 주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노인인권 상임위원회 등의 기구 등을 설치하여 각국의 노인인권 정책 담당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 전략과 대응이 요구된다. 필요한 경우 ASEM 차원을 넘어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거나 국제앰네스티 등 관련 기구와 협력하는 등 공동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다.

○ 노인사법권 관련 특별보호

- 노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사법 절차 과정에서도 공정한 재판과 무료법률 지원 및 법적 도움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즉, 사법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 그리고 연령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노인이 구금 등의 조치에서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하고, 더 나아가 노인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상태에 따른 복역기간 및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아직까지 개별국가에서 사법법과 관련하여 노인이 가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인권 보호는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불이익과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에서 노인의 사법권 관련 특별 보호의 필요성과 구체적 연구 및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 이는 ‘회원국 노인인권 취약 상황 견제·대응’ 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인다. ASEM 주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노인인권 상임위원회 등의 기구가 주체가 되어 노인사법권 관련 특별보호 규정 및 적절한 조치방안을 모델로 제시하고, 관련한 각국의 규정 및 사례를 공유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차별로 인한 인권 유린 대상자 및 사례를 발견하거나 발굴하여 ASEM 차원에서 이들을 옹호하고 관련 국가 및 단체를 견제하는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

4) 연구·평가 기능

○ ASEM 노인인권지표 개발

- 현재 ASEM 회원국의 인권상황은 매우 편차가 크며, 또한 회원국의 노인 인권상황을 공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개발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회원국의 노인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 노인인권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모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 마련을 위해서도 센터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중 하나이다. 단, 센터에서 개발하는 노인인권지표는 단순히 회원국의 현재의 노인인권상황을 평가하기 목적만이 아니라 개별 회원국의 노인인권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인권지표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회원국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관련 지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ASEM 노인인권지표 개발을 위해서는 노인인권정책센터에서 각국의 노인인권상황 정보 파악 및 노인인권보호활동에 대한 노력을 공유하고, 회원국의 주요 연구기관과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회원국 간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의 발굴 및 네트워킹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들이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의 연구 환경 조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 이러한 노인인권지표 개발은 회원국 간 노인인권 실태 파악을 위한 공통 지표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회원국별 노인인권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회원국의 인권 상황 파악을 위한 기본 지표 개발, 현재의 노인인권 상황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표 탐색 및 개발, 회원국의 노인인권 향상을 위한 공동의 인권지표 개발 등의 세부 전략을 통해 실행될 수 있다.

○ ASEM 노인인권상황 정례 평가

-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에서는 회원국의 노인인권상황에 대한 평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회원국의 노인인권상황에 대한 정례 평가는 앞서 센터에서 개발한 ASEM 노인인권지표를 적용한 평가도 적용할 수 있으며,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DB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을 센터 내에 구축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다.
- 회원국에 대한 노인인권상황에 대한 정례 평가 결과는 노인인권정책센터 내에 구축된 온라인플랫폼에 게시 혹은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는 등의 회원국이 공유하고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ASEM 노인인권 브리프 및 백서 발간

- 노인인권정책센터의 주요한 사업의 하나로 ASEM 회원국의 노인인권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노인인권과 관련된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회원국의 노인인권 이슈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는 노인인권 브리프를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 또한, 국내외의 다양한 백서와 같은 ASEM 회원국 간 노인인권보호에 관한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그 내용을 회원국들에게 알리는 형태의 보고서인 백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DB기반 ASEM 회원국 노인인권실태 연구

-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수집된 회원국의 노인인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회원국의 다양한 연구자들이 개별 혹은 공동으로 회원국의 노인인권 주요 이슈 및 노인인권 실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 노인인권정책센터가 중심이 되어 회원국 간에 필요한 인권이슈를 발굴하여 다양한 회원국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네트워크형 연구를 추진하거나 혹은 회원국의 지역별로 공동 이슈를 가진 회원국의 연구자들이 함께 공동연구를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ASEM 노인인권상황 실태 패널 조사

- 노인인권정책센터에서는 회원국의 노인인권 상황 실태에 대한 연구를 시계열로 일정한 주기마다 실시하는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추진하여 회원국의 노인인권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현재 국가별로 실시되는 노인인권 실태조사들은 그 내용이 빈약하거나 간헐적 조사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인권정책센터가 수행하게 되는 정기 패널 조사는 회원국의 노인인권 정책 수립 및 실행, 평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정책개발의 근거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회원국 노인인권보장체계 비교 연구

- 노인인권정책센터에서는 회원국의 노인인권보장체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된 국제비교연구 추진을 위한 틀을 구성하여 지역 간, 혹은 노인인권보호에 선도적인 국가들과 취약한 국가들 간의 노인인권보장체계에 관한 비교연구를 추진하도록 한다.
- 이러한 연구 결과를 회원국 간 공유하여 ASEM 회원국 간 개별 국가의 노인인권보장체계 구축에 필요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원국 간 노인인권보호에 대응하는 선진적 정책 마련과 관련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가 추진하는 노인인권에

관한 연구 및 평가 기능은 ASEM 회원국의 노인인권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가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용시켜 가는 순환적 추진체제로 기능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 요컨대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는 ASEM 노인인권 아젠다인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아시아와 유럽의 연대와 협력” 을 지향하는 바 이를 위한 센터 운영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주요사업을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목적, 기능 및 주요 사업 구조

- 본 연구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ASEM은 아시아와 유럽의 양 지역이 과거의 비대칭적이고 불평등한 관계에서 벗어나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의존과 지역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특징을 가지는 만큼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시아와 유럽 양 지역의 보충성의 원칙을 통해 상호 보완적이고 촉진적인 시너지 효과를 지향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개해야 하며, 추진하는 협력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개방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¹³¹⁾
 - 또한, 전문가 조사에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UN과 같은 국제기구들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이념이나 조항들이 주요 사업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타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정부 간 협의의 뿐 아니라 민간 영역의 참여와 연대를 통한 사업이 전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무엇보다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과 기준이 회원국 간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센터의 사업들이 각 회원국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지위와 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ASEM 차원의 재정 및 인력 지원은 센터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기제이다.

131) 이상균(1999). '아시아·유럽 간 지역협력의 동인과 가능성: ASEM의 국제 정치경제적 함의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8(2). pp. 34-51.

VII

결론

- 인구 고령화는 국가 단위의 개별적 노력과 함께 국제적 차원의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 특히 ASEM 회원국은 정치·경제·문화적 여건, 정책 상황은 차이가 있으나 동등한 동반자적 관계에 입각한 상호존중에 중점을 두고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 만큼 ASEM의 협력사업 중 하나로 노인 인권보장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 기구의 설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이에 우리나라가 제 10차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은 ASEM 노인인권 증진의 실효적 수단이 될 것이기에 그 선결조건으로 본 연구에서는 ASEM 회원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노인인권 아젠다 및 의제를 구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ASEM 노인인권 공동선언(안) 및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기본 계획(안)을 마련, 제시하였다.
 - 5장과 6장에서 제시한 ASEM 노인인권 아젠다 및 의제, ASEM 노인인권 공동 선언(안) 및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기본 계획(안)은 가깝게는 ‘2015 ASEM 노인인권 컨퍼런스’의 주요 주제와 내용을 구성하는데 활용될 것이고, 나아가 ASEM 정상회의를 통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합의, 중장기적으로 ASEM 회원국 노인인권정책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실천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기대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ASEM 회원국의 노인인권 공동 대응에 대한 관심과 참여 증진

- ASEM 국가별 노인인권 이슈 및 주요 정책 현황, 노인인권 관련 주요 기구 동향 및 노인인권 관련 주요 국제 학계 동향 분석을 통해 개발된 아젠다는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아시아와 유럽의 연대와 협력”이었다. 아젠다에 의한 주요 의제는 ‘노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의무 강화’, ‘노인의 적절한 생활 환경 보장’, ‘노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과 참여의 보장’,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노인인권 아젠다 및 의제는 노인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여 실제 ASEM 회원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데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SEM 회원국 간의 국력, 경제수준 및 정치적 이해가 비록 다르지만

(초)고령사회로 이행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하는 만큼, 개발된 아젠다와 의제들은 노인인권의 중요성과 노인인권의 개념, 기본 내용 등에 대해 아셈국가 및 세계의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2) ‘2015 ASEM 노인인권 컨퍼런스’ 및 ASEM 노인 인권선언 기초 자료 활용

-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노인인권의제는 ‘2015 ASEM 노인인권 컨퍼런스’에서 주요 주제와 이슈로도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컨퍼런스에서 ASEM 회원국이 함께 모여 각국의 노인인권 관련 정책과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국제적 차원의 방향 제시와 각국의 상호 공조를 합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마련된 노인인권 공동 선언(안)은 ASEM 회원국의 합의와 협력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이끌어 내는데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최초로 선언되는 ASEM 노인인권 공동 선언은 자체만으로도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 서울에서 발표되는 노인인권 공동 선언(안)은 한국의 인권 위상을 제고할 기회가 될 것이다.

3)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승인 과정의 기여

- 본 연구에서는 ASEM 노인인권 아젠다 및 의제 및 공동 선언(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가 지녀야 할 목적과 기능, 그리고 사업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는 노인인권의 구체적인 전략을 집결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ASEM뿐 아니라, 세계가 확인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원국 모두가 고령사회로 전환을 맞이하여 노인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데 있기에 센터 사업(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사업(안)은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 특히 ASEM 정상회의에서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및 사업을 승인받게 되면,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국가도 선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주도국으로

선정된다면 ASEM에서 노인인권 보장 선도 국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의미가 크다 할지라도 이를 실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예산 할당과 각국의 지속적 지원 및 공동적 활동이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 모델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4) ASEM 노인인권 공동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의 활성화

- 본 연구에서 제시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주요목적은 회원국의 노인인권의식을 고취하고, 노인인권보장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아셈 회원국의 노인인권보장 정책을 개발하고, 회원국 간 노인인권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며, ASEM 회원국 노인인권 대응력을 향상하는데 있다.
-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를 통한 공동사업들을 기획하고 실행, 평가하는 실천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노인인권 및 고령화를 비교할 수 있는 공통의 DB 구축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들을 통해 각 나라 또는 지역별 비교 뿐 아니라, 정기적인 평가와 조사·연구 등으로 ASEM 국가와 지역 간 또는 시계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노인인권 지표가 개발될 수 있다. 이를 통해 ASEM 노인인권의 방향성 제고 등, 활발한 사업과 연구가 공동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 나아가 ‘2015 ASEM 노인인권 컨퍼런스’ 개최, ‘서울 2015 ASEM 노인인권 공동선언’,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및 운영의 주도국 등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 등은 사회·문화·교육 부문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성호·류건식(2014). ‘노후 난민화 가능성 검토와 향후 과제’, 「KIRI Weekly」 Vol. 328.
- 권금주(2007). 「며느리에 의한 노인학대 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권혁남(2014). ‘노인 고독사 연구 및 접근의 관점: 인권’, 「생명윤리」 15(1).
- 김경아(2012). ‘노인빈곤과 노인소득불평등의 실태: 국제비교와 시사점’, 한국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발표 자료집.
- 김주현 외(2011). ‘국제법상에 나타난 보편적 인권규정과 노인인권’, 「법과사회」 40.
- 나영선 외(2010). 「고령자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실태조사 및 향후 개편방안」 고용노동부 수탁연구용역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노동부(2002). 「ILO주요협약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 ‘제10차 ASEM 정상회의의 의미와 평가’. 「지역경제포커스」, Vol. 8.
- 박수천(2005). 노인 인권 보호의 세계 동향과 성년후견인제 도입방안, 한국노인복지학회, 2005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박영란(2013). ‘초고령사회 대비 EU의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정책 패러다임, 「유럽연구」 제31권 1호.
- 박찬운(2011). 「인권법연구」. 한울.
- 백석인(2006). ‘스웨덴의 노인복지제도와 정책’, 「스칸디나비아연구」 Vol. 7.
- 선우덕·김세진·모선희(2012),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국가의 활기찬 노후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영전·김보경(2013). ‘인권의 관점에서 본 한국 고령화 정책 계획: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2 0(1).
- 신준식(2004). ‘호주 고령자고용정책에 대한 입장과 전망’, 「국제노동브리프」pp.21-25.
- 안진(2007). ‘노인인권의 발달과 현황에 관한 소고’, 「인권법평론」.
- 외교부(2014). 「ASEM개황」.
- 우국희(2010). ‘인권관점에서 바라본 노인학대와 사회적 책임’, 「노인인권논문집」국가인권위원회.
- 이상균(1999). ‘아시아·유럽 간 지역협력의 동인과 가능성 - ASEM의 국제정치·경제적

- 합의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8(2).
- 장복희(2003). ‘고령사회와 관련한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와 실천과제’, 「가톨릭법학」 제1호.
- 조영환(2005). ‘고령화 대응전략으로서의 노인인권 정책방향’. 「한국노인복지학회 2005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주핀란드대한민국대사관(2014). 「핀란드복지제도 종합보고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 유럽의 활기찬 노후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3). 「글로벌보건산업동향」. Vol. 77.
- 한동희(2014). ‘고령사회와액티브에이징고찰연구’, 「노인복지연구」vol. 64.

-국외문헌-

- Barrintos, armando, M. Gorman, and A. Helsop(2003). “Old Age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contributions and dependence in later life”, World Development, vol. 31, No.3, pp. 555-575
- Brennan, F., Carr, D. B., & Cousins, M.(2007). Pain management: A fundamental human right. Anesthesia and Analgesia, 105(1), 205-221.
doi:10.1213/01.ane.0000268145.52345.55.
- Castle, N., & Beach, S.(2013). Elder abuse in assisted living.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2(2), 248-267. doi:10.1177/0733464811418094.
- Council of Europe(2014). ‘Recommendation CM/Rec(2014)2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 Doron, I. & Apter, I.(2010b). The Debate Around the Need for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Older Persons. The Gerontologist, 50(5), 586-593.
- Doron, I. & Werner, P.(2008). Facts on Law and Ageing Quiz: older people’s knowledge of their legal rights. Ageing and Society, 28, 1159-1174.
- European Commission(2012). The EU contribution to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

-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2006). First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Social Dimensions of Housing.
- Eurostat,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 A Statistical Portrait of the European Union 2012.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11), p. 7.; KoreaNationalStatisticalOffice, KOSISDB. <http://www.kosis.kr>
- GENERAL COMMENT NO. 6 (1995).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older persons.
- Ghazy Mujahid, Joseph Pannirselvam, Brooks Doge(2008). The Impact of Social Pensions: Perceptions of Asian Older Persons. UNFPA. p. 7.
- Giordano, S.(2005). Respect for Equality and the Treatment of the Elderly: Declarations of Human Rights and Age-Based Rationing. Cambridge Quarterly of Healthcare Ethics, 14(1), 83-92.
- Hamm, D., English, V., Harrison, C., Mussell, R., Sheather, J., & Sommerville, A. (2007). The human rights of older people in healthcare. Journal of Medical Ethics, 33(12), 743-744.
- HelpAge International. 「Global AgeWatch Index 2014 Insight report」, 2014.
- Firbank(2001). ‘Human rights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protection of older workers against discrimination: The case of the quebec human rights commission’ .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12(3), 65-85.
doi:10.1300/J031v12n03_04.
- Jyotsna M. Kalavar, Duvvuru Jamuna & Farida Kassim Ejaz. 2013. Elder Abuse in India: Extrapolating From the Experiences of Seniors in India’s “Pay And Stay” Homes. Journal: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5(1),
- Kanter, A. S.(2009).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Rights of Elderly People Under International Law. Georgia State University Law Review, 25(3), 527-573.
- Kalache, A. (2012). Human rights in older age. Global population ageing peril or promise?. the Harvard Initiatives for Global Health.
- Kelly, F., & Innes, A. (2013). Human rights, citizenship and dementia care nursing. International Journal of Older People Nursing, 8(1), 61-70.
doi:10.1111/j.1748-3743.2011.00308.x.
- Lloyd-Sherlock, P.(2002). Formal Social Protection for Older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Three Different Approaches. Journal of Social Policy, 31(4), 695-713.

- Mé gret, F. (2011).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A growing challenge. *Human Rights Law Review*, 11(1), 37-66. doi:10.1093/hrlr/ngq050.
- Morgan, R. E. & David, S.(2002). Human rights: a new language for aging advocacy. *The Gerontologist*, 42(4), pp.436-442.
- OECD(1998), 'Maintaining Prosperity In An Ageing Society' . 'Policy Brief』 June.
- Phelan, A. (2008). Elder abuse, ageism, human rights and citizenship: Implications for nursing discourse. *Nursing Inquiry*, 15(4), 320-329. doi:10.1111/j.1440-1800.2008.00423.x.
- Report of the Asia-Pacific intergovernmental meeting on the second review and appraisal of the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2012).
- Report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A/AC.278/2011/4),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First working session, New York, April 2011.
- Report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A/AC.278/2011/5),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Second working session, New York, August 2011.
- Report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A/AC.278/2012/1),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Third working session, New York, 21-24 August 2012.
- Report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A/AC.278/2013/2),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Fourth working session, New York, August 2013.
- Report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A/AC.278/2014/2), 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Fifth working session, New York, July 2014.
- Report Vietnamese 10 Years of Implementation of the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IPAA, 2002-2012).
- Rodriguez-Pinzon, D. & Martin, C.(2003).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tus of elderly persons.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18, 915-1008.
- Sidorenko, A. & Walker, A. (2004). The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From Conception to Implementation. *Ageing and society*. 24(2), 147-165.
- Sleap, B. (2009). Using human rights accountability mechanisms to promote and protect older women's rights. *Gender & Development*, 17(3), 427-439. doi:10.1080/13552070903298436.

- Srinivasan Chokkanathan, Alex E. Y. Lee. 2005. Elder Mistreatment in Urban India: A Community Based Study,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7(2).
- Summary of the Report on the Ten-year's Review of China's Implementation of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2012).
- The Second Review and Appraisal of the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Japan's report(2012).
- United Nations Centre for Human Settlements (1993)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and Disabled People in Human Settlements—Volume I: A Resource Book of Policy and Programmes from around the World
- UN(2002). Political Declaration and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 UN(2011). Current Status of the Social Situation, Well-Being, Participation in Development and Rights of Older Persons Worldwide.
-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E/2012/51), 2012.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RES/46/91 74th plenary meeting 16 December 1991, <http://www.un.org/documents/ga/res/46/a46r091.htm>.
-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and HelpAge International. 2012. "Ageing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Celebration and A Challenge"
- UN(2012). 'Synthesis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in the UNECE region' .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WHO Press.
- XinQi Dong, Melissa A. Simon & Martin Gorbien. 2007. Elder Abuse and Neglect in an urban Chinese population.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9(3/4)
- Yates-Bolton, N. (2010). Human rights-based care for older people. *Nursing Management* (Harrow, London, England : 1994), 17(4), 26-27.

-웹자료-

- http://iagg.info/xs/iagg_archives/731
- <http://iaggchiangmai2015.com/overview/iagg-asia-oceania-2015/>
- <http://social.un.org/ageing-working-group/index.shtml>
- <http://www.iagg.info/data/IAGG%20대회논문분석및정책제안보고서.pdf>



http://www.iagg.info/sub02_04_Past_World_Congresses.php

<http://www.iaggdublin2015.org/>

http://www.un.org/en/events/pastevents/pdfs/Madrid_plan.pdf.

<http://www.unescap.org/>

http://www.mofa.go.kr/countries/regional/asem/asef/index.jsp?menu=m_40_70_70&tabmenu=t_2

<http://social.un.org/ageing-working-group/documents/fourth/US.pdf>



부 록

부록 1. 2015 ASEM 노인인권 증진 컨퍼런스 공동 선언(안)	141
부록 2. ASEM 노인인권 아젠다·주요의제, 공동선언문 관련 전문가 조사지(의견서양식포함)	147
부록 3. 1차 델파이 조사지	149
부록 4. 2차 델파이 조사지	156

부록 1. 2015 ASEM 노인인권 증진 컨퍼런스 공동 선언(안)

2015 ASEM 노인인권 증진 컨퍼런스 공동 선언(안)

서울, 대한민국

2015. 10. 8.

초고령사회 노인인권의 강화 :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

1. 우리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원국들은 “초고령사회 노인인권의 강화 :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이라는 주제 하에 2015. 10. 6~2015. 10. 8.동안,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2015 ASEM 노인인권 증진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다.
2. ASEM 회원국들은 밀레니엄을 지나오는 동안 여러 가지 도전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해 왔고, 다가오는 미래에도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성장과 번영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 전략을 개발·공유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다자간 협력과 권리 기반 인권국가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을 확인하여 이제는 회원국의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 지구적 고령화(global ageing)는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로서 등장하고 있다. 노인인권상황은 여전히 취약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의 마땅한 의무로서 이행되어야 할 노인에 대한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 장치 조차 이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4. 이러한 현실 아래 우리는 2015 ASEM노인인권증진컨퍼런스를 통해 유엔 헌장과 세계인권선언, 국제 인권 기준 및 법률 문서에 따른 노인인권 증진과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나아가 국가간 모범 사례와 경험 공유 등을 기초로 ASEM내 노인인권분야 협력 증진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
5.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노인인권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바, 이를 위한 긴밀한 협력과 공동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노인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 노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생활환경구축, 연령차별철폐와 참여보장, 폭력 및 학대예방과 자기결정권의 보장 차원에서의 노인인권

- 강화 정책을 실행하여 공동 번영 증진과 인권수준 향상에 힘쓸 것이다.
6. 경제 상황, 사회·문화적 가치 패러다임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노인인권정책을 통해, 국가 간 노인인권보장 수준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고, 인권기반국가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7. 우리는 노인인권 강화과정에서 지도력과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아셈노인인권 정책센터’를 구축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지구촌 모든 국가를 아울러 각 분야 선도적인 정책 수행과 발전을 이끌고 있는 리더로서 아시아·유럽지역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리는 미래를 위한 노인인권 강화방안을 수행해 갈 것이다. 또한 ASEM은 인권상황 개선과 노인인권 증진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보다 실질적인 노인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공동대응방안 강구에 따른 정책대화를 이어갈 것이다.
 8. 우리는 이러한 약속이 번영과 발전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인인권증진 방안을 채택한다.

노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의무 강화

9. 고령화사회의 과제는 ‘노인인권의 완전한 보장’을 실현하는 것인 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에 기반하여 고령화대책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10. 아시아 국가에서 나타나는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과 유럽 국가에서 대두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노인정책 개발에 대한 시급한 요구는 우리 모두의 당면 과업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국가 노력이 촉구되어야 함을 지지한다.
11. 또한 개별화된 권리주체로서 노인을 인식하고 형평의 원칙과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각각의 능력에 따라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최소핵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12. 이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이행하기로 한다.
 - a. 회원국의 고령화 수준과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노인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가최소핵심 의무 강화 및 이행 기반 확보
 - b. 인권의 특성인 보편성을 수용한 사회보장체계 구축방안 마련

- c. 공공 및 민간 부문간 공조, 회원국간 협력을 통한 국가별 노인절대빈곤 완화 및 예방시스템 강화 노력 경주
- d. 노인 주거·보건의료 보장체계 재편과 선도사례 전파·공유

노인의 적절한 생활환경 보장

13. 우리는 노인이 적절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실현가능한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에 노인의 주거권과 건강권의 개선 및 보장을 위한 조치를 회원국가와 공유해야 함을 인식하였다.
14. 노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이행하기로 한다.
 - a. 노인의 강제 퇴거, 괴롭힘, 기타 위협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 b. 최소주거비용 조달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주거정책 마련
 - c. 노인 주거생활의 위해요소로부터의 보호 조치 이행
15. 우리는 노인이 가능한 한 자신의 집, 거주하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약속한다.
16. 노인이 지역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의 주거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확인한 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기로 한다.
17. 노인 개인의 사생활, 가정, 주거, 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이 아시아-유럽 국가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 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국가별로 마련하기로 한다.
18. 노인의 다양한 욕구, 생활양식에 따른 적절한 주거 선택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노인들이 심신의 제약으로 요양시설과 같은 주거대안을 선택할 때에는 노인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한다.
19. 우리는 주거권 보장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차별로부터도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20. 우리는 아시아-유럽 국가간 노인의료보장체계의 공통점과 차별성을 확인하였고, 지역 특성이 반영된 노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21. 초고령화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만성질환 노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별 대책 수립을 위해 다음의 조치를 이행하기로 한다.
 - a. 노인의 특성에 맞는 검진체계 구축
 - b. 만성질환 노인 치료권 보장에 근거한 보건의료 보장체계 개편
 - c. 의료서비스 접근 취약 계층 노인 지원방안 마련
22.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환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및 유럽 국가간 정책 공조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회원국가간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23. 우리는 보편적이고 평등한 노인 보건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해 연령, 성별, 언어적 불리 요인을 해소하여 건강권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노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과 참여의 보장

24. 우리는 노인을 연령상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며 이들의 참여, 활동, 이동,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25. 노인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적절한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이동과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26. 노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27. 노인이 사회의 교육, 문화, 다양한 자원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국 노인이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한다.
28. 고령 근로자가 직업을 구하고 유지하는 데에 겪게 될 어려움이 심각하게 대두된 바, 연령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필요성이 논의된 점을 토대로 이를 위한 법적 지원을 실시하도록 한다.
29. 고령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을 배제하여 고령근로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근로자가 새로운 기술을 습

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한다.

30. 우리는 노인의 근로의 권리의 향유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도록 노력하며 제3자가 노인의 근로권의 향유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데 동의하였다. 근로의향이 있는 노인에게 근로의 기회 제공 및 촉진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이행하기로 한다.
 - a. 노인의 직업과 훈련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률 채택
 - b. 노인근로자의 근로권 향유에 유리한 여건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민간부문의 파트너십의 구축 방안 마련
 - c. 국제적 차원의 노인 근로 권리를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국제적 협력

자기결정권과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1. 우리는 노인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에 기반 하여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에 스스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타인 및 외부로부터 통제가 가해지는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32. 우리는 노화과정에 있는 노인의 고유한 상황, 노인의 경험과 현재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 등 노인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노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그들의 욕구와 의사를 인식하여 노인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노인권의 활동을 장려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33. 여성노인의 인권상황이 일부 아시아 및 유럽 국가에서 매우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노인의 자기결정권은 양성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인식하여 이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구축하는데 합의하였다.
34. 우리는 공권력 뿐 아니라, 타인의 간섭 없이 노인 당사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결정에 필요한 고지 받을 권리와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그것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합의 한다.
35. 우리는 인지장애 등 자기결정이 어려운 노인의 경우 자신의 의사결정과 법적 지위를 행사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적절한 노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자기결정권 행사를 지지해줄 수

있는 주요한 정책과 관련법을 마련해야 한다.

36. 만성질환 및 불치병 등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노인의 자기결정은 오직 자신의 자유와 고지된 동의 아래 언제든 동의 혹은 철회 할 수 있음에 대해 재인식하였고, 생명연장 조치를 포함한 의료적 개입에 관한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다.
37. 우리는 노인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형태로 가해지는 것뿐 아니라, 의도적 방임 또는 비의도적 방임 및 자기방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국가는 폭력·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보호라는 이름으로 노인에게 제공되는 제약들을 포함한 폭력 및 학대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38. 폭력, 학대, 그리고 방임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과 조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를 위해 다음 조치를 이행한다.
 - a. 노인 폭력 및 학대 원인 및 결과 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 b. 노인학대 의심사례 신고전용 핫라인 설치 및 학대피해 조사, 피해노인 보호 조치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설립·운영
 - c. 노인학대 예방 및 모니터링 수행을 위한 게이트키퍼 확대
 - d. 학대피해노인 보호서비스, 학대 가해자의 처벌 및 재활 관련법 제정

부록 2. ASEM 노인인권 아젠다·주요의제, 공동선언문 관련 전문가 조사지(의견서양식포함)

ASEM 노인인권 아젠다·주요의제, 공동선언문 관련 전문가 조사

대 상 : 전문가 패널

주관연구팀 : 서울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

(박태정 교수, 권금주 교수, 이서영 교수)

연 락 처 : 책임연구원 박태정 (02-944-5019 / 010-2815-5725)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모델 (안) 및 주요기능 연구” 를 수탁 받아 진행 중입니다.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인권보장은 ASEM(Asia-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회원국 모두가 당면한 과제이자 범세계적 관심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그런 만큼 노인인권에 대한 회원국의 구체적인 개별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노인인권정책의 방향과 고령사회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공동의 협력 방안을 연구·발전시킬 지역간 연결성(connectivity)의 실체적 내용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정부는 2014년 ASEM 10차 정상회의에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ASEM 아셈노인인권 아젠다 및 주요의제와, 2015 ASEM 노인인권 증진 컨퍼런스 공동선언문(안)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발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귀한 시간 할애하여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 별도의 내용은 연구진이 작성한 ASEM 노인인권 아젠다 및 주요 의제, 2015 ASEM 노인인권 증진 컨퍼런스 공동선언문(안)입니다.



- 검토의견서 -

다음 4가지 항목을 참고하여 검토하시고 의견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아젠다 및 주요의제의 적절성
- 공동선언문에서 아젠다 및 주요의제의 반영여부
- 공동선언문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
- 추가되어야 할 의제에 관한 의견

부록 3. 1차 델파이 조사지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관련 델파이 조사

기간 : 2015년 6월 9일~2015년 6월 18일

대상 : 전문가 패널

주관연구팀 : 서울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 (박태정 교수, 권금주 교수, 이서영 교수)

연락처 : 책임연구원 박태정 (02-944-5019 / 010-2815-5725)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모델(안) 및 주요기능 연구”를 수탁 받아 진행 중입니다.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인권보장은 ASEM(Asia - 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회원국 모두가 당면한 과제이자 범세계적 관심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그런 만큼 노인인권에 대한 회원국의 구체적인 개별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노인인권정책의 방향과 고령사회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공동의 협력 방안을 연구·발전시킬 지역간 연결성(connectivity)의 실체적 내용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정부는 2014년 ASEM 10차 정상회의에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아시아·유럽 지역 국가의 노인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도출하는 한편, 노인인권정책 국제 기구로서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운영 방향과 기능에 대해 2회에 걸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귀한 시간 할애하여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 작성 후 저장하신 뒤 조사참여사례비 지급 관련 서류(통장사본, 신분증사본)와 함께 발송된 메일 주소로 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본 연구팀은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목적과 주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 목적 및 사업(안) >

운영 목적	주요 사업
ASEM 회원국 노인인권인식 고취(계몽)	ASEM 노인인권 교육 자료 개발 ASEM 노인인권교육 노인당사자 인권역량강화사업 지원 ASEM 회원국 노인인권증진 캠페인 ASEM 노인인권정보포털 구축
ASEM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DB구축	ASEM 노인인권지표 개발 ASEM 노인인권상황 실태 패널 조사 ASEM 노인인권 브리프 및 백서 발간 ASEM 노인인권상황 정례 평가 DB기반 ASEM 회원국 노인인권실태 연구
ASEM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우수 사례 발굴·상시 학습 회원국 노인인권보장체계 비교 연구 ASEM 노인인권보호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ASEM 노인인권 중점연구과제 개발 및 추진 노인인권 정책품질관례체계 개발 노인인권 국제협약 제정
ASEM 회원국 노인인권 협력네트워크 구축	ASEM 노인인권 정상회의 운영 전문가 및 실무그룹 조직·운영 ASEM 노인인권세미나 개최 회원국 노인인권 유관단체 연계 회원국 노인인권 정책개발 컨설팅
ASEM 회원국 노인인권 대응력 향상	회원국 노인인권 취약 상황 견제·대응 회원국 노인폭력·학대 보호법제 제정 촉구 노인사법권 관련 특별 보호 노인인권침해 예방

○ 다음은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목적(방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목적(방향성)이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적(방향성)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 부적합
1	ASEM 회원국 노인인권 의식 고취(계몽)					
2	ASEM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DB구축					
3	ASEM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					
4	ASEM 회원국 노인인권 협력네트워크 구축					
5	ASEM 회원국 노인인권 대응력 향상					

2. 목적별 중요도 비중은 어떠합니까? 중요도 비율의 총합이 100%가 되도록 기입해 주십시오.

목적(방향성)		중요도에 따른 비율
1	ASEM 회원국 노인인권 의식 고취(계몽)	
2	ASEM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DB구축	
3	ASEM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	
4	ASEM 회원국 노인인권 협력네트워크 구축	
5	ASEM 회원국 노인인권 대응력 향상	
계		100%

○ 다음은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목적별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1.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첫 번째 목적인 “ASEM 회원국 노인인권 의식 고취(계몽)”에 대한 타당성과 중요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노인인권 의식 고취(계몽)”에 따른 사업이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 업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 부적합
1	ASEM 노인인권 교육 자료 개발					
2	ASEM 노인인권교육					
3	노인당사자 인권역량강화사업 지원					
4	ASEM 회원국 노인인권증진 캠페인					
5	ASEM 노인인권정보포털 구축					



2) “노인인권의식 고취(계몽)”사업의 중요도 비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비율 총합이 100%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사 업		중요도에 따른 비율
1	ASEM 노인인권 교육 자료 개발	
2	ASEM 노인인권교육	
3	노인당사자 인권역량강화사업 지원	
4	ASEM 회원국 노인인권증진 캠페인	
5	ASEM 노인인권정보포털 구축	
계		100%

2.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두 번째 목적인 “ASEM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DB구축”에 대한 타당성과 중요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노인인권보장 DB구축”에 따른 사업이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 업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 부적합
1	ASEM 노인인권지표 개발					
2	ASEM 노인인권상황 실태 패널 조사					
3	ASEM 노인인권 브리프 및 백서 발간					
4	ASEM 노인인권상황 정례 평가					
5	DB기반 ASEM 회원국 노인인권 실태연구					

2) “노인인권보장 DB구축”사업의 중요도 비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비율 총합이 100%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사 업		중요도에 따른 비율
1	ASEM 노인인권지표 개발	
2	ASEM 노인인권상황 실태 패널 조사	
3	ASEM 노인인권 브리프 및 백서 발간	
4	ASEM 노인인권상황 정례 평가	
5	DB기반 ASEM 회원국 노인인권 실태연구	
계		100%

3.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세 번째 목적인 “ASEM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에 대한 타당성과 중요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에 따른 사업이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 업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 부적합
1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우수 사례 발굴 및 상시 학습					
2	회원국 노인인권보장체계 비교 연구					
3	ASEM 노인인권보호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4	ASEM 노인인권 중점 연구과제 개발 및 추진					
5	노인인권 정책품질관리체계 개발					
6	노인인권 국제협약 제정					

2)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사업의 중요도 비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비율 총합이 100%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사 업		중요도에 따른 비율
1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우수 사례 발굴 및 상시 학습	
2	회원국 노인인권보장체계 비교 연구	
3	ASEM 노인인권보호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4	ASEM 노인인권 중점 연구과제 개발 및 추진	
5	노인인권 정책품질관리체계 개발	
6	노인인권 국제협약 제정	
계		100%

4.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네 번째 목적인 “ASEM 회원국 노인인권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타당성과 중요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회원국 노인인권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사업이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 업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 부적합
1	ASEM 노인인권 정상회의 운영					
2	전문가 및 실무그룹 조직.운영					
3	ASEM 노인인권세미나 개최					
4	회원국 노인인권 유관단체 연계					
5	회원국 노인인권 정책개발 컨설팅					



2) 목적(방향성)4의 “회원국 노인인권 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중요도 비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비율 총합이 100%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사 업		중요도에 따른 비율
1	ASEM 노인인권 정상회의 운영	
2	전문가 및 실무그룹 조직.운영	
3	ASEM 노인인권세미나 개최	
4	회원국 노인인권 유관단체 연계	
5	회원국 노인인권 정책개발 컨설팅	
계		100%

5.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다섯번째 목적(방향성)인 “ASEM 회원국 노인인권 대응력 향상”에 대한 타당성과 중요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노인인권 대응력 향상”에 따른 사업이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 업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 부적합
1	회원국 노인인권 취약 상황 견제·대응					
2	회원국 노인폭력·학대 보호 법제 제정 촉구					
3	노인사법권 관련 특별 보호					
4	노인인권침해 예방					

2) “노인인권 대응력 향상” 사업의 중요도 비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비율 총합이 100%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사 업		중요도에 따른 비율
1	회원국 노인인권 취약 상황 견제·대응	
2	회원국 노인폭력·학대 보호 법제 제정 촉구	
3	노인사법권 관련 특별 보호	
4	노인인권침해 예방	
계		100%

※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목적(방향성) 및 사업에 대한 고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 성심성의껏 작성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 관련 통계처리를 위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1. 소속 : _____ 직위: _____

2. 성 함:

3. 성별: 남 (), 여()



부록 4. 2차 델파이 조사지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관련 델파이 2차 조사

기간 : 2015년 6월 29일~2015년 7월 3일

대상 : 전문가 패널 2차 조사

주관연구팀 : 서울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 (박태정 교수, 권금주 교수, 이서영 교수)

연락처 : 책임연구원 박태정 (02-944-5019 / 010-2815-5725)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본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모델(안) 및 주요기능 연구” 델파이 1차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마지막인 2차 조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구진은 1차 조사에서 응답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동일항목에 대해 타당도 검증 및 항목별 중요도 재평가를 위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진행하셨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문은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조사 결과의 전반적 흐름을 살펴보실 수 있도록 각 문항별로 평균값을 제시하였습니다. 설문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 타당도와 중요도에 대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답변 관련 통계처리를 위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1. 소속 : _____ 직위: _____

2. 성 함:

3. 성별: 남 (), 여()

※ 참고용: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목적과 주요 사업(안)>

<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 목적 및 사업(안) >

운영 목적	주요 사업
ASEM 회원국 노인인권의식 고취(계몽)	ASEM 노인인권 교육 자료 개발 ASEM 노인인권교육 노인당사자 인권역량강화사업 지원 ASEM 회원국 노인인권증진 캠페인 ASEM 노인인권정보포털 구축
ASEM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DB구축	ASEM 노인인권지표 개발 ASEM 노인인권상황 실태 패널 조사 ASEM 노인인권 브리프 및 백서 발간 ASEM 노인인권상황 정례 평가 DB기반 ASEM 회원국 노인인권실태 연구
ASEM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우수 사례 발굴·상시 학습 회원국 노인인권보장체계 비교 연구 ASEM 노인인권보호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ASEM 노인인권 중점연구과제 개발 및 추진 노인인권 정책품질관례체계 개발 노인인권 국제협약 제정
ASEM 회원국 노인인권 협력네트워크 구축	ASEM 노인인권 정상회의 운영 전문가 및 실무그룹 조직·운영 ASEM 노인인권세미나 개최 회원국 노인인권 유관단체 연계 회원국 노인인권 정책개발 컨설팅
ASEM 회원국 노인인권 대응력 향상	회원국 노인인권 취약 상황 견제·대응 회원국 노인폭력·학대 보호법제 제정 촉구 노인사법권 관련 특별 보호 노인인권침해 예방



○ 다음은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목적(방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목적(방향성)이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값을 참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목적(방향성)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 부적합	평균
1	ASEM 회원국 노인인권의식 고취(계몽)						4.4
2	ASEM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DB구축						4.4
3	ASEM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						4.7
4	ASEM 회원국 노인인권 협력네트워크 구축						4.7
5	ASEM 회원국 노인인권 대응력 향상						4.2

2. 목적별 중요도 비중을 평균값을 참조하여 총합이 100%가 되도록 기입해 주십시오.

	목적(방향성)	중요도에 따른 비율	평균
1	ASEM 회원국 노인인권의식 고취(계몽)		21.7
2	ASEM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DB구축		18.0
3	ASEM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		22.6
4	ASEM 회원국 노인인권 협력네트워크 구축		20.0
5	ASEM 회원국 노인인권 대응력 향상		17.8
계		100%	

○ 다음은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목적별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첫 번째 목적: "ASEM 회원국 노인인권의식 고취(계몽)" 관련

1) "노인인권의식 고취(계몽)"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을 평균값을 참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사 업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 부적합	평균
1	ASEM 노인인권 교육 자료 개발						4.4
2	ASEM 노인인권교육						4.6
3	노인당사자 인권역량강화사업 지원						4.3
4	ASEM 회원국 노인인권증진 캠페인						4.3
5	ASEM 노인인권정보포털 구축						4.1

2) “노인인권의식 고취(계몽)” 사업에 대한 중요도 비중을 평균값을 참조하여 총합이 100%가 되도록 기입해 주십시오.

사 업		중요도에 따른 비율	평균
1	ASEM 노인인권 교육 자료 개발		20.6
2	ASEM 노인인권교육		20.8
3	노인당사자 인권역량강화사업 지원		20.3
4	ASEM 회원국 노인인권증진 캠페인		19.4
5	ASEM 노인인권정보포털 구축		18.3
계		100%	

2. 두 번째 목적: “ASEM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DB구축” 관련

1) “노인인권보장 DB구축”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을 평균값을 참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사 업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 부적합	평균
1	ASEM 노인인권지표 개발					4.7
2	ASEM 노인인권상황 실태 패널 조사					4.2
3	ASEM 노인인권 브리프 및 백서 발간					4.4
4	ASEM 노인인권상황 정례 평가					4.3
5	DB기반 ASEM 회원국 노인인권 실태연구					4.4

2) “노인인권보장 DB구축” 사업에 대한 중요도 비중을 평균값을 참조하여 총합이 100%가 되도록 기입해 주십시오.

사 업		중요도에 따른 비율	평균
1	ASEM 노인인권지표 개발		23.7
2	ASEM 노인인권상황 실태 패널 조사		20.3
3	ASEM 노인인권 브리프 및 백서 발간		18.1
4	ASEM 노인인권상황 정례 평가		18.7
5	DB기반 ASEM 회원국 노인인권 실태연구		19.2
계		100%	



3. 세 번째 목적: “ASEM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 관련

1)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을 평균값을 참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사 업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 부적합	평균
1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우수 사례 발굴 및 상시 학습						3.8
2 회원국 노인인권보장체계 비교 연구						4.4
3 ASEM 노인인권보호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4.0
4 ASEM 노인인권 중점 연구과제 개발 및 추진						4.2
5 노인인권 정책품질관리체계 개발						3.8
6 노인인권 국제협약 제정						4.3

2) “노인인권보장 정책 개발” 사업에 대한 중요도 비중을 평균값을 참조하여 총합이 100%가 되도록 기입해 주십시오.

사 업	중요도에 따른 비율	평균
1 회원국 노인인권보장 우수 사례 발굴 및 상시 학습		15.0
2 회원국 노인인권보장체계 비교 연구		19.3
3 ASEM 노인인권보호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16.4
4 ASEM 노인인권 중점 연구과제 개발 및 추진		17.9
5 노인인권 정책품질관리체계 개발		12.5
6 노인인권 국제협약 제정		18.9
계	100%	

4. 네 번째 목적: “ASEM 회원국 노인인권 협력네트워크 구축” 관련

1) “회원국 노인인권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을 평균값을 참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사 업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 부적합	평균
1 ASEM 노인인권 정상회의 운영						4.6
2 전문가 및 실무그룹 조직.운영						4.6
3 ASEM 노인인권세미나 개최						4.2
4 회원국 노인인권 유관단체 연계						4.3
5 회원국 노인인권 정책개발 컨설팅						4.1

2) “회원국 노인인권 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한 중요도 비중을 평균값을 참조하여 총합이 100%가 되도록 기입해 주십시오.

사 업		중요도에 따른 비율	평균
1	ASEM 노인인권 정상회의 운영		24.9
2	전문가 및 실무그룹 조직.운영		23.4
3	ASEM 노인인권세미나 개최		16.1
4	회원국 노인인권 유관단체 연계		20.6
5	회원국 노인인권 정책개발 컨설팅		15.0
계		100%	

5. 다섯번째 목적: “ASEM 회원국 노인인권 대응력 향상” 관련

1) “노인인권 대응력 향상”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을 평균값을 참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사 업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 합	매우 부적합	평균
1						4.4
2						4.7
3						4.0
4						4.3

2) “노인인권 대응력 향상” 사업에 대한 중요도 비중을 평균값을 참조하여 총합이 100%가 되도록 기입해 주십시오.

사 업		중요도 에 따른 비율	평균
1	회원국 노인인권 취약 상황 견제·대응		26.4
2	회원국 노인폭력·학대 보호 법제 제정 촉구		28.6
3	노인사법권 관련 특별 보호		21.8
4	노인인권침해 예방		23.2
계		100%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모델(안) 및 주요기능 연구

| 인쇄일 | 2015년 8월 28일
| 발행일 | 2015년 8월 31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 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전 화 | 국제협력팀 02)2125-9886
| F A X | 02)2125-0918
| 제 작 |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 (代)

ISBN: 978-89-6114-433-9 93330 비매품